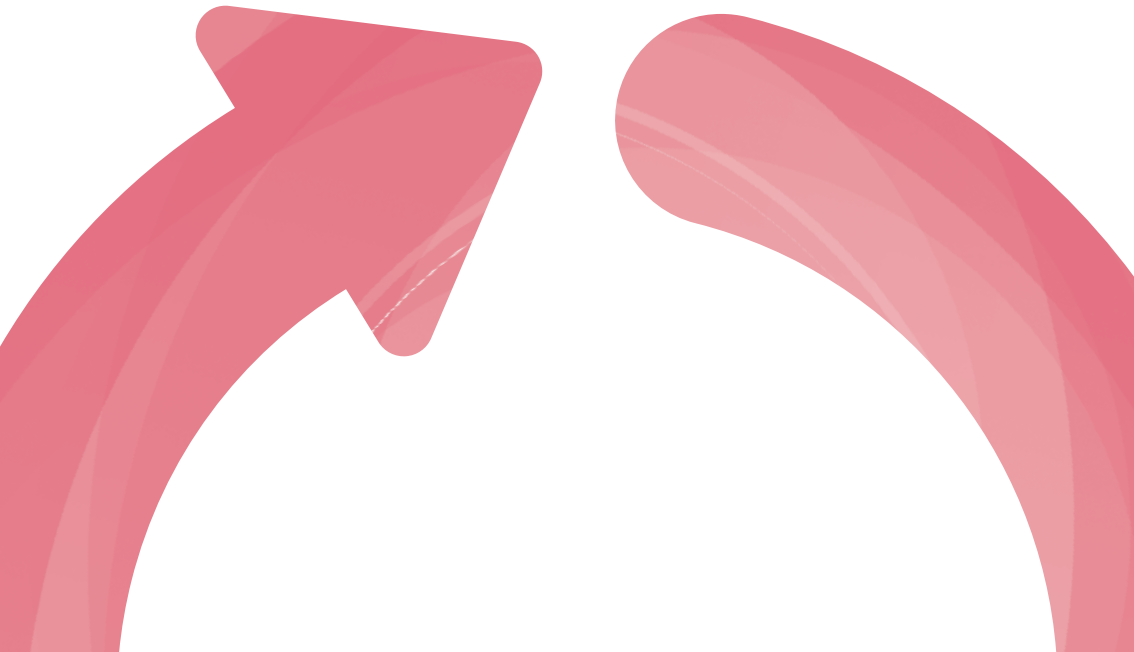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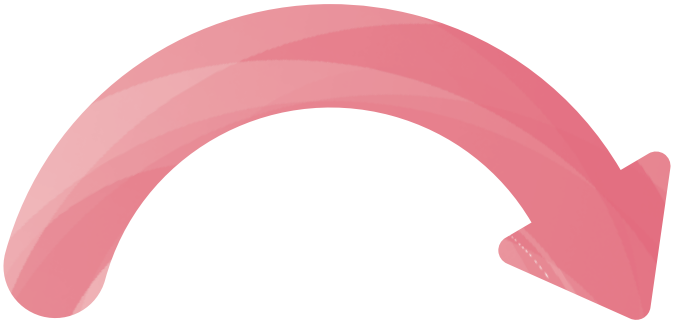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부처별·시기별 주요 제도
핵심사항 인포그래픽
http://whatsnew.moef.go.kr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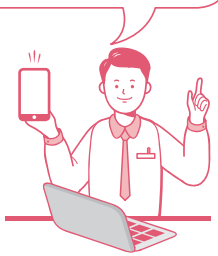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178)

01 금융·재정·조세 (25)

-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신설 (기획재정부) 9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 (기획재정부) 10
-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11
- 수출용원재료의 관세 등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 (기획재정부) 12
- 통고처분 납부방법 개선 (기획재정부) 13
- 비금융기관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이용 허용 (기획재정부) 14
-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 (법무부·금융위원회) 15
- 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인 자 등에 대한 군인연금 제한 (국방부) 16
-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7
-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해양수산부) 18
- 산업위기 지역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50% 감면 (해양수산부) 19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서류 간소화 (중소벤처기업부) 20
- 통관목록물품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제출 (관세청) 21
- 품목분류 사전심사 'HS6단위 소호 회신제도' 신설 (관세청) 22
- 중소기업 등의 특허활용촉진을 위한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 (특허청) 23
-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도입 (금융위원회) 24
-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 (금융위원회) 25
- 카드이동 서비스 (금융위원회) 26
-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시 변호인 참여 허용 (금융위원회) 27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제도 변경 (금융위원회) 28
- 농수산식품 우수기술자에 대한 신용보증(농신보) 한도 확대 (금융위원회) 29
-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한 보험설계사의 정보 조회 (금융위원회) 30
-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금융위원회) 31
- 공영방송 수신료 감면제도 개선 (방송통신위원회) 32
-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의무화 (방송통신위원회) 33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02 교육·보육·가족 (8)

- 올해 3학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교육부) 37
-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38
- 양육비 확보를 위해 부모의 주소와 근무지 조회 가능 (여성가족부) 39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장애부모 범위 확대 및 서비스 신청 편의 제고 (여성가족부) 40
-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문화를 혁신할 수 있는 플랫폼 출범 (여성가족부) 41
-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 임신갈등·위기상담 서비스 추진 (여성가족부) 42
-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 (여성가족부) 43
-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에 상담학 전공 추가 (여성가족부) 44

03 국방·병무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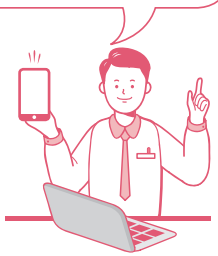
-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이 인정된 경우 '순직결정일'로부터 급여 청구권의 시효 기산 (국방부) 49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신청 기간 연장 (국방부) 50
- 지뢰 사고 피해 위로금 등 신청 기간 연장 (국방부) 51
- 병역판정검사 시 전자 색각검사 시행 (병무청) 52
-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입영일자 조정 범위 확대 (병무청) 53
- '군지원 사유' 연기제도 개선, 편법연기 방지 (병무청) 54
- 동일법인 내 다수 병역지정업체(산업체) 선정 가능 (병무청) 55
-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정 근거 신설 (병무청) 56
-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공개 항목 추가 (병무청) 57
- 방산업체 권리구제를 위한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운영 (방위사업청) 58
- M&S 사업의 개발문서(산출물) 작성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테일러링 가이드 시행 (방위사업청) 59
- 방산 수출 확대 및 촉진을 위한 방산물자 수출 시 기술료 인하 (방위사업청) 60
-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결과 디브리핑 제도 도입 (방위사업청) 61

04 행정·안전·질서 (25)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9
-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의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0
- 점자여권 발급대상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 (외교부) 71
-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 확대 (법무부) 72
- 지방세와 과태료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받아 납부 (행정안전부) 73
- 안전설비 인증제도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74
-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신설 (고용노동부) 75
-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처벌 등 (여성가족부) 76
- 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고 보안검색 및 생체정보로 신원확인 (국토교통부) 77
- 항공종사자 업무 전 음주측정 의무화 (국토교통부) 78
-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79
- 미등록 선박에 대한 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80
- 국립묘지 안장 생전(生前) 심의제 (국가보훈처) 81
-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및 국립괴산호국원 안장서비스 개시 (국가보훈처) 82
-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가혹행위 시 제재 강화 (병무청) 83
- 손실보상의 범위를 기존 재산상 손실에서 생명·신체상 손실까지 확대 (경찰청) 84
-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 (경찰청) 85
-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강화 (소방청) 87
-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대폭 강화 (특허청) 88
-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특허청) 89
- 웹기반 사용자 맞춤형 지진정보서비스 실시 (기상청) 90
- 규모 2.0 미만 미소지진 대국민 공개 서비스 실시 (기상청) 91
- 담합·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92
-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93
-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 94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05 문화·체육·관광 (5)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99
- 관광안내업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10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문화체육관광부) 101
- 문화자원의 실감콘텐츠 체험 및 향유권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102
- 스포츠강좌이용권·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체육활동 참여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103

06 농림·수산·식품 (25)

-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107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08
- 양곡관리사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109
-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 (농림축산식품부) 110
- 수입되는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111
-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112
- 말고기 등급기준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113
-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의 기준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114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시 표시 의무 (농림축산식품부) 115
- 살처분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안전비용 지급기준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116
- 살처분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117
- 살처분 보상금 계약사육농가 지급 (농림축산식품부) 118
-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119
- 닭·오리 농장 및 부화장CCTV 설치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120
- 가공품 원산지 표시기준 개선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구분 (농림축산식품부) 121
- 도매시장 경매사 의무교육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122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도입 등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123
- 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24
- 곤충업 신고제도 합리화 (농림축산식품부) 125
- 해수욕장 입수 제한 완화 및 시설사업 시행자격 확대 (해양수산부) 126
-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새 이름, '해양보호생물' (해양수산부) 127
-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확대 (해양수산부) 128
-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자격요건 완화 (산림청) 129
- 방제계획서·완료서 작성자 완화 및 검인제도 폐지 (산림청) 130
-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 (산림청) 131

07 환경·기상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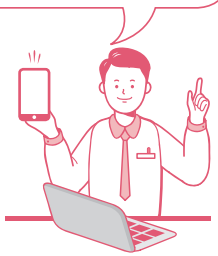
- 정수기 관리 기준 강화 (환경부) 137
- 먹는샘물 주표시면에 품목명(먹는샘물) 표시 (환경부) 138
-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환경부) 139
-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관리 대상 확대 (환경부) 140
- 위·수탁 폐수의 전자 인계·인수 관리 (환경부) 141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본격 운영 (환경부) 142
- 민원 발생 공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에 포함 (환경부) 143
- 외래종 안전관리 강화(유입주의 생물 지정제도) (환경부) 144
-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시행 (환경부) 145
- 국민체감형 여름철 기상정보 제공(태풍정보 개선) (기상청) 146
- 천리안위성 2A호 정규서비스 실시 (기상청) 147
- 사용자 위치기반 위험기상 사전알림 서비스 실시 (기상청) 148
- 사용자 중심으로 날씨 홈페이지 통합 새단장 (기상청) 149
- 해양기상 맞춤형 정보 모바일 웹 서비스 실시 (기상청) 150
- '기상자료개방포털' 사용자 중심 서비스로 전환 (기상청) 151

08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제도 규제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5
- 국제단위(SI)기본단위가 완전체로 재탄생 (산업통상자원부) 156
- 국가·자자체 등이 발주한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기업 참여 제한 (산업통상자원부) 157
-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상권영향 평가 내실화 (산업통상자원부) 158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관련 자료 공유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산업통상자원부) 159
- 4차산업 연관 신기술 등 엔지니어링기술 범위 유연화 (산업통상자원부) 160
- 드론실증도시 기반 드론 활용 실증 및 상용화 추진 (국토교통부) 161
-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162
-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 시범운영 개시 (국토교통부) 163
- 엑셀러레이터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방식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164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사무권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165
-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166
- 혁신조달플랫폼 구축 (조달청) 167
-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 우선심사 대상 확대 (특허청) 169
- 임금·자재비 체불 업체에 하도급 대금 직불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170
- 국내 최대규모 창업지원공간 '마포혁신타운' 개소 (금융위원회) 171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09 보건·복지·고용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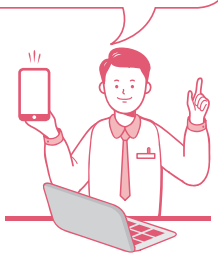
-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등록금 전액+장려금200만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83
-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184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보건복지부) 185
-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186
- 전립선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187
- 복부·흉부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188
-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189
-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보건복지부) 190
-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191
-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보건복지부) 192
-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 제공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 194
-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확대 (보건복지부) 195
- 임신부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196
- 국가폐암검진 실시 (보건복지부) 197
- '자궁외 임신'도 임신·출산 진료비지급 대상에 포함 (보건복지부) 198
- 몰래카메라 설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보건복지부) 199
- 목욕탕·찜질방 레지오넬라 안심! 수질기준 강화 (보건복지부) 200
- 자살유발정보 유통이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 201
-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도입 (보건복지부) 202
- 보호종료아동주거지원통합서비스 추진 (보건복지부) 203
- 성인 예방접종력 관리 강화를 위한 군의료정보시스템 연계 (보건복지부) 204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지정변경 (보건복지부) 205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시 (고용노동부) 206
- 7월 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고용노동부) 207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 개선 (고용노동부) 208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210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업일과 관계없이 가입 가능 (고용노동부) 21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신설 (고용노동부) 213
- 장애인 취업지원 원스톱(One-Stop) 전달체계 구축 (고용노동부) 215
- 일정소득 이하 대규모기업 노동자 훈련비 지원 (고용노동부) 216
- 근로기준법 상 부속 기숙사 설치·운영 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217
-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고용노동부) 218
- 강원도 춘천에 강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개소합니다 (국가보훈처) 219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제도 본격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220
-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 국가공인시험 첫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222

10 국토·교통 (11)

-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확대 개편 (국토교통부) 229
-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 230
- 주요공항 여객터미널·주차장 등 이용편의 향상 (국토교통부) 231
- 중국 항공노선 확대로 항공교통이용자 편의 개선 (국토교통부) 232
- 출·퇴근 편의를 위한 경부선 전철 급행 확대 추진 (국토교통부) 233
-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 절차 의무화 (국토교통부) 234
- 주택도시기금대출 절차 간소화 및 자산심사 기준 도입 (국토교통부) 235
- 숫자 추가 및 디자인 적용된 신규 자동차 번호판 시행 (국토교통부) 236
- 모바일 앱을 통한 전국공항 주차장 간편결제서비스 시행 (국토교통부) 237
- 국립항공박물관 건립 (국토교통부) 238
- 새마을·무궁화 등 일반열차 지연배상금 지급 확대 (국토교통부) 239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178)

기획재정부 (6)

-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신설 9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 10
-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 11
- 수출용원재료의 관세 등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 12
- 통고처분 납부방법 개선 13
- 비금융기관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이용 허용 14

교육부 (1)

- 올해 3학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 개선 69
-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의무 70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제도 규제 개선 155

외교부 (1)

- 점자여권 발급대상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 71

법무부 (2)

-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 15
-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 확대 72

국방부 (4)

- 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인 자 등에 대한 군인연금 제한 16
-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이 인정된 경우 '순직결정일'로부터 급여 청구권의 시효 기산 49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신청 기간 연장 50
- 지뢰 사고 피해 위로금 등 신청 기간 연장 51

행정안전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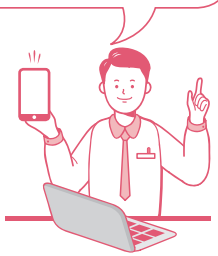
- 지방세와 과태료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받아 납부 73

문화체육관광부 (5)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행 99
- 관광안내업 신설 10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101
- 문화자원의 실감콘텐츠 체험 및 향유권 확대 102
- 스포츠강좌이용권·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체육활동 참여 확대 103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2)

-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등록금 전액+장려금200만원) 지원 183
-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 가능 184
-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17
-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107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108
- 양곡관리사 도입 109
-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 110
- 수입되는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111
-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시행 112
- 말고기 등급기준 시행 113
-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의 기준 강화 114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시 표시 의무 115
- 살처분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안전비용 지급기준 개선 116
- 살처분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 117
- 살처분 보상금 계약사육농가 지급 118
-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119
- 닭·오리 농장 및 부화장CCTV 설치 의무화 120
- 가공품 원산지 표시기준 개선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구분 121
- 도매시장 경매사 의무교육제도 도입 122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도입 등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123
- 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124
- 곤충업 신고제도 합리화 125

산업통상자원부 (6)

- 안전설비 인증제도 도입 74
- 국제단위(SI)기본단위가 완전체로 재탄생 156
- 국가·자자체 등이 발주한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기업 참여 제한 157
-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상권영향 평가 내실화 158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관련 자료 공유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159
- 4차산업 연관 신기술 등 엔지니어링기술 범위 유연화 160

보건복지부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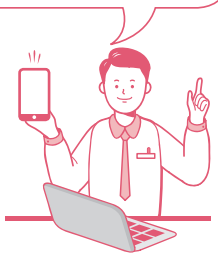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185
-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186
- 전립선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187
- 복부·흉부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188
-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189
-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190
-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191
-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192
-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 제공 근거 마련 194
-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확대 195
- 임신부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196
- 국가폐암검진 실시 197
- '자궁외 임신'도 임시·출산 진료비지급 대상에 포함 198
- 몰래카메라 설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199
- 목욕탕·찜질방 레지오넬라 안심! 수질기준 강화 200
- 자살유발정보 유통이 금지됩니다 201
-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도입 202
- 보호종료아동주거지원통합서비스 추진 203
- 성인 예방접종력 관리 강화를 위한 군의료정보시스템 연계 204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지정변경 205

환경부 (9)

- 정수기 관리 기준 강화 137
- 먹는샘물 주표시면에 품목명(먹는샘물) 표시 138
-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139
-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관리 대상 확대 140
- 위·수탁 폐수의 전자 인계·인수 관리 141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본격 운영 142
- 민원 발생 공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에 포함 143
- 외래종 안전관리 강화(유입주의 생물 지정제도) 144
-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시행 145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12)

-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38
-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신설 75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시 206
- 7월 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207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 개선 208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확대 210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업일과 관계없이 가입 가능 21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신설 213
- 장애인 취업지원 원스톱(One-Stop) 전달체계 구축 215
- 일정소득 이하 대규모기업 노동자 훈련비 지원 216
- 근로기준법 상 부속 기숙사 설치·운영 기준 강화 217
-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218

여성가족부 (7)

- 양육비 확보를 위해 부모의 주소와 근무지 조회 가능 39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장애부모 범위 확대 및 서비스 신청 편의 제고 40
-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문화를 혁신할 수 있는 플랫폼 출범 41
-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 임신갈등·위기상담 서비스 추진 42
-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 43
-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에 상담학 전공 추가 44
-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처벌 등 76

국토교통부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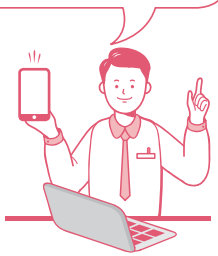
- 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고 보안검색 및 생체정보로 신원확인 77
- 항공종사자 업무 전 음주측정 의무화 78
- 드론실증도시 기반 드론 활용 실증 및 상용화 추진 161
-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 162
-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 시범운영 개시 163
-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확대 개편 229
-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확대 시행 230
- 주요공항 여객터미널·주차장 등 이용편의 향상 231
- 중국 항공노선 확대로 항공교통이용자 편의 개선 232
- 출·퇴근 편의를 위한 경부선 전철 급행 확대 추진 233
-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 절차 의무화 234
- 주택도시기금대출 절차 간소화 및 자산심사 기준 도입 235
- 숫자 추가 및 디자인 적용된 신규 자동차 번호판 시행 236
- 모바일 앱을 통한 전국공항 주차장 간편결제서비스 시행 237
- 국립항공박물관 건립 238
- 새마을·무궁화 등 일반열차 지연배상금 지급 확대 239

해양수산부 (7)

-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18
- 산업위기 지역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50% 감면 19
-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79
- 미등록 선박에 대한 관리 강화 80
- 해수욕장 입수 제한 완화 및 시설사업 시행자격 확대 126
-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새 이름, '해양보호생물' 127
-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확대 128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4)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서류 간소화 20
- 엑셀러레이터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방식 도입 164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사무권한 확대 165
-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166

국가보훈처 (3)

- 국립묘지 안장 생전(生前) 심의제 81
-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및 국립괴산호국원 안장서비스 개시 82
- 강원도 춘천에 강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개소합니다 219

식품의약품안전처 (2)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제도 본격 시행 220
-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 국가공인시험 첫 시행 222

관세청 (2)

- 통관목록물품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제출 21
- 품목분류 사전심사 'HS6단위 소호 회신제도' 신설 22

조달청 (1)

- 혁신조달플랫폼 구축 167

병무청 (7)

- 병역판정검사 시 전자 색각검사 시행 52
-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입영일자 조정 범위 확대 53
- '군지원 사유' 연기제도 개선, 편법연기 방지 54
- 동일법인 내 다수 병역지정업체(산업체) 선정 가능 55
-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정 근거 신설 56
-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공개 항목 추가 57
-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가혹행위 시 제재 강화 83

방위사업청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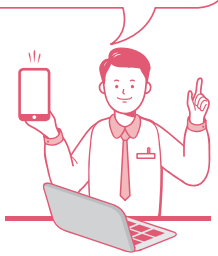
- 방산업체 권리구제를 위한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운영 58
- M&S 사업의 개발문서(산출물) 작성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테일러링 가이드 시행 59
- 방산 수출 확대 및 촉진을 위한 방산물자 수출 시 기술료 인하 60
-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결과 디브리핑 제도 도입 61

경찰청 (2)

- 손실보상의 범위를 기존 재산상 손실에서 생명·신체상 손실까지 확대 84
-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 85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소방청 (1)

-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강화 87

산림청 (3)

-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자격요건 완화 129
- 방제계획서, 완료서 작성자 완화 및 검인제도 폐지 130
-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 131

특허청 (4)

- 중소기업 등의 특허활용촉진을 위한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 23
-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대폭 강화 88
-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89
-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 우선심사 대상 확대 169

기상청 (8)

- 웹기반 사용자 맞춤형 지진정보서비스 실시 90
- 규모 2.0 미만 미소지진 대국민 공개 서비스 실시 91
- 국민체감형 여름철 기상정보 제공(태풍정보 개선) 146
- 천리안위성 2A호 정규서비스 실시 147
- 사용자 위치기반 위험기상 사전알림 서비스 실시 148
- 사용자 중심으로 날씨 홈페이지 통합 새단장 149
- 해양기상 맞춤형 정보 모바일 웹 서비스 실시 150
- '기상자료개방포털' 사용자 중심 서비스로 전환 151

공정거래위원회 (2)

- 담합·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92
- 임금·자재비 체불 업체에 하도급 대금 직불 제한 170

금융위원회 (10)

-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도입 24
-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 25
- 카드이동 서비스 26
-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 15
-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시 변호인 참여 허용 27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제도 변경 28
- 농수산식품 우수기술자에 대한 신용보증(농신보) 한도 확대 29
-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한 보험설계사의 정보 조회 30
-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31
- 국내 최대규모 창업지원공간 '마포혁신타운' 개소 171

국민권익위원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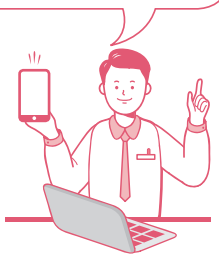
-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93

원자력안전위원회 (1)

-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 강화 94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2)

- 공영방송 수신료 감면제도 개선 32
-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의무화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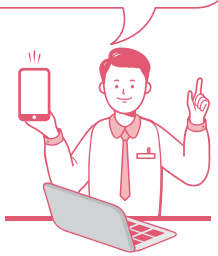
시기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178)

2019년 7월 (78)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 (기획재정부) 10
-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11
- 수출용원재료의 관세 등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 (기획재정부) 12
- 통고처분 납부방법 개선 (기획재정부) 13
- 점자여권 발급대상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 (외교부) 71
- 지방세와 과태료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받아 납부 (행정안전부) 73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문화체육관광부) 101
-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184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08
-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 (농림축산식품부) 110
- 수입되는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111
- 말고기 등급기준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113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시 표시 의무 (농림축산식품부) 115
- 살처분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안전비용 지급기준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116
- 살처분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117
- 살처분 보상금 계약사육농가 지급 (농림축산식품부) 118
-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119
- 닭·오리 농장 및 부화장CCTV 설치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120
- 가공품 원산지 표시기준 개선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구분 (농림축산식품부) 121
- 도매시장 경매사 의무교육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122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도입 등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123
- 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24
- 곤충업 신고제도 합리화 (농림축산식품부) 125
- 국가·자자체 등이 발주한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기업 참여 제한 (산업통상자원부) 157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관련 자료 공유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산업통상자원부) 159
-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186
-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보건복지부) 190
-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191
-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 제공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 194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 '자궁외 임신'도 임신·출산 진료비지급 대상에 포함 (보건복지부) 198
- 목욕탕·찜질방 레지오넬라 안심! 수질기준 강화 (보건복지부) 200
- 자살유발정보 유통이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 201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지정변경 (보건복지부) 205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본격 운영 (환경부) 142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시 (고용노동부) 206
- 7월 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고용노동부) 207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208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업일과 관계없이 가입 가능 (고용노동부) 21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신설 (고용노동부) 213
- 장애인 취업지원 원스톱(One-Stop) 전달체계 구축 (고용노동부) 215
-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38
- 일정소득 이하 대규모기업 노동자 훈련비 지원 (고용노동부) 216
- 근로기준법 상 부속 기숙사 설치·운영 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217
-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고용노동부) 218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장애부모 범위 확대 및 서비스 신청 편의 제고 (여성가족부) 40
-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문화를 혁신할 수 있는 플랫폼 출범 (여성가족부) 41
-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처벌 등 (여성가족부) 76
-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확대 개편 (국토교통부) 229
- 모바일 앱을 통한 전국공항 주차장 간편결제서비스 시행 (국토교통부) 237
- 새마을·무궁화 등 일반열차 지연배상금 지급 확대 (국토교통부) 239
-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79
-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해양수산부) 18
- 산업위기 지역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50% 감면 (해양수산부) 19
- 미등록 선박에 대한 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80
- 해수욕장 입수 제한 완화 및 시설사업 시행자격 확대 (해양수산부) 126
-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새 이름, '해양보호생물' (해양수산부) 127
-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확대 (해양수산부) 128
- 엑셀러레이터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방식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164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사무권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165
-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166
- 국립묘지 안장 생전(生前) 심의제 (국가보훈처) 81
- 강원도 춘천에 강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개소합니다 (국가보훈처) 219
- '군지원 사유' 연기제도 개선, 편법연기 방지 (병무청) 54
-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가혹행위 시 제재 강화 (병무청) 83
-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결과 디브리핑 제도 도입 (방위사업청) 61
-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자격요건 완화 (산림청) 129
- 방제계획서, 완료서 작성자 완화 및 검인제도 폐지 (산림청) 130

-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 (산림청) 131
-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대폭 강화 (특허청) 88
-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특허청) 89
- 천리안위성 2A호 정규서비스 실시 (기상청) 147
- 사용자 위치기반 위험기상 사전알림 서비스 실시 (기상청) 148
- 규모 2.0 미만 미소지진 대국민 공개 서비스 실시 (기상청) 91
-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도입 (금융위원회) 24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제도 변경 (금융위원회) 28
-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한 보험설계사의 정보 조회 (금융위원회) 30
-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 94
- 공영방송 수신료 감면제도 개선 (방송통신위원회) 32

2019년 8월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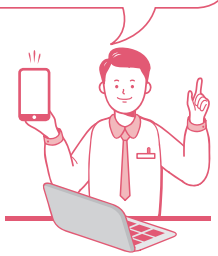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제도 규제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5
-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 임신갈등·위기상담 서비스 추진 (여성가족부) 42
- 중국 항공노선 확대로 항공교통이용자 편의 개선 (국토교통부) 232
-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강화 (소방청) 87
-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시 변호인 참여 허용 (금융위원회) 27

2019년 9월 (9)

-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 (법무부·금융위원회) 15
-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의 기준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114
-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상권영향 평가 내실화 (산업통상자원부) 158
- 전립선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187
-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확대 (보건복지부) 195
- 숫자 추가 및 디자인 적용된 신규 자동차 번호판 시행 (국토교통부) 236
- 항공종사자 업무 전 음주측정 의무화 (국토교통부) 78
- 담합·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92
- 농수산식품 우수기술자에 대한 신용보증(농신보) 한도 확대 (금융위원회) 29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2019년 10월 (13)

-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의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0
- 복부·흉부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188
-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보건복지부) 192
- 임신부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196
- 성인 예방접종력 관리 강화를 위한 군의료정보시스템 연계 (보건복지부) 204
- 먹는샘물 주표시면에 품목명(먹는샘물) 표시 (환경부) 138
-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관리 대상 확대 (환경부) 140
- 위·수탁 폐수의 전자 인계·인수 관리 (환경부) 141
- 외래종 안전관리 강화(유입주의 생물 지정제도) (환경부) 144
- 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고 보안검색 및 생체정보로 신원확인 (국토교통부) 77
-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및 국립괴산호국원 안장서비스 개시 (국가보훈처) 82
-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공개 항목 추가 (병무청) 57
-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93

2019년 11월 (8)

-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 확대 (법무부) 72
- 안전설비 인증제도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74
-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시행 (환경부) 145
- 드론실증도시 기반 드론 활용 실증 및 상용화 추진 (국토교통부) 161
-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 국가공인시험 첫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222
- 동일법인 내 다수 병역지정업체(산업체) 선정 가능 (병무청) 55
- 해양기상 맞춤형 정보 모바일 웹 서비스 실시 (기상청) 150
- 임금·자재비 체불 업체에 하도급 대금 직불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170

2019년 12월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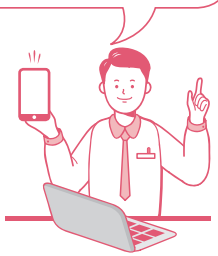
- 양곡관리사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109
-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112
-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189
-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 절차 의무화 (국토교통부) 234
- 웹기반 사용자 맞춤형 지진정보서비스 실시 (기상청) 90
- 사용자 중심으로 날씨 홈페이지 통합 새단장 (기상청) 149
- '기상자료개방포털' 사용자 중심 서비스로 전환 (기상청) 151
-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 (금융위원회) 25

2019년 하반기 (19) : 구체적인 날짜는 미정이나 하반기 시행 예정

- 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인 자 등에 대한 군인연금 제한 (국방부) 16
- 관광안내업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100
- 문화자원의 실감콘텐츠 체험 및 향유권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102
- 스포츠강좌이용권·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체육활동 참여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103
-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등록금 전액+장려금200만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83
-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107
- 4차산업 연관 신기술 등 엔지니어링기술 범위 유연화 (산업통상자원부) 160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보건복지부) 185
- 국가폐암검진 실시 (보건복지부) 197
-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도입 (보건복지부) 202
-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환경부) 139
- 민원 발생 공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에 포함 (환경부) 143
-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 (여성가족부) 43
- 주요공항 여객터미널·주차장 등 이용편의 향상 (국토교통부) 231
- 출·퇴근 편의를 위한 경부선 전철 급행 확대 추진 (국토교통부) 233
- 주택도시기금대출 절차 간소화 및 자산심사 기준 도입 (국토교통부) 235
-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 시범운영 개시 (국토교통부) 163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서류 간소화 (중소벤처기업부) 20
- 중소기업 등의 특허활용촉진을 위한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 (특허청) 23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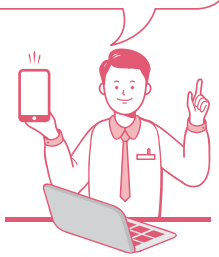
기 타 (38) : 2019년 상반기 시행 또는 2020년 시행 예정

-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신설 (기획재정부) 9
- 비금융기관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이용 허용 (기획재정부) 14
- 올해 3학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교육부) 37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9
-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이 인정된 경우 '순직결정일로부터 급여 청구권의 시효 기산 (국방부) 49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신청 기간 연장 (국방부) 50
- 지뢰 사고 피해 위로금 등 신청 기간 연장 (국방부) 51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99
-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7
- 국제단위(SI)기본단위가 완전체로 재탄생 (산업통상자원부) 156
- 몰래카메라 설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보건복지부) 199
- 보호종료아동주거지원통합서비스 추진 (보건복지부) 203
- 정수기 관리 기준 강화 (환경부) 137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 개선 (고용노동부) 208
-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신설 (고용노동부) 75
- 양육비 확보를 위해 부모의 주소와 근무지 조회 가능 (여성가족부) 39
-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에 상담학 전공 추가 (여성가족부) 44
-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 230
- 국립항공박물관 건립 (국토교통부) 238
-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162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제도 본격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220
- 통관목록물품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제출 (관세청) 21
- 품목분류 사전심사 'HS6단위 소호 회신제도' 신설 (관세청) 22
- 혁신조달플랫폼 구축 (조달청) 167
- 병역판정검사 시 전자 색각검사 시행 (병무청) 52
-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입영일자 조정 범위 확대 (병무청) 53
-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정 근거 신설 (병무청) 56
- 방산업체 권리구제를 위한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운영 (방위사업청) 58
- M&S 사업의 개발문서(산출물) 작성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테일러링 가이드 시행 (방위사업청) 59
- 방산 수출 확대 및 촉진을 위한 방산물자 수출 시 기술료 인하 (방위사업청) 60
- 손실보상의 범위를 기존 재산상 손실에서 생명·신체상 손실까지 확대 (경찰청) 84
-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 (경찰청) 85

-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 우선심사 대상 확대 (특허청) 169
- 국민체감형 여름철 기상정보 제공(태풍정보 개선) (기상청) 146
- 카드이동 서비스 (금융위원회) 26
-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금융위원회) 31
- 국내 최대규모 창업지원공간 '마포혁신타운' 개소 (금융위원회) 171
-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의무화 (방송통신위원회) 33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1. 금융·재정·조세
2. 교육·보육·가족
3. 국방·병무
4. 행정·안전·질서
5. 문화·체육·관광
6. 농림·수산·식품
7. 환경·기상
8. 산업·중소기업·에너지
9. 보건·복지·고용
10. 국토·교통

01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융·재정·조세



Infographic

1 기획재정부

자세한 내용은 p.9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신설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Before

'19년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자신과 배우자 모두)는 반기별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후, 다음해 9월에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 다음연도 5월 신청, 9월 지급
- 개정 :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방식 추가(근로소득자 한정)
  - (상반기 소득분) 당해연도 8.21.~9.10. 신청 → 12월 지급
  - (하반기 소득분) 다음연도 2.21.~3.10. 신청 → 6월 지급
  - (정산) 다음연도 9월 환수 또는 추가 지급

* 현행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After



2 법무부·금융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p.15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

시행일 : 2019년 9월 16일

Before

'19년 9월 16일부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16.3.22제정) 시행으로
주식·사채 등 증권의 실물이 사라집니다.

- 9월 16일 시행 시 상장증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이 되고, 미예탁분 또는 실물증권은 실효될 예정입니다.

* 미예탁 실물 권리자가 전환대상 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권리자 명의로 특별계좌를 개설하여 실물권리자를 보호할 예정

After



3 국방부

자세한 내용은 p.16

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인 자 등에 대한 군인연금 제한

시행일 : 2019년 하반기(예정)

Before

지금까지 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인 자는 퇴직수당 및 일시금에 한하여 2분의 1을 지급유보 하고 연금은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After

'19년 하반기(예정) 군인연금수급자가 형사 피의자인 경우 군인연금이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방지하고 군인연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겠습니다.



4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18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Before

지금까지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무겁지 않았습니다.



After

선박 운항자의 항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9년 7월 1일부터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상향됩니다.



Infographic

5 중소벤처기업부

자세한 내용은 p.20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서류 간소화

시행일 : 2019년 하반기

Before

지금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신청 시 세무서류 4종을 제출하여야 했습니다.



After

2019년 하반기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 시 제출하는 세무서류를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6 금융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p.24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도입

시행일 : 2019년 7월

Before

2019년 7월부터 대출의 기준금리로 쓰이고 있는 잔액기준 COFIX를 개편하여 신(新) 잔액기준 COFIX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 은행이 대출재원으로 조달한 모든 자금비용을 반영한 신(新) 잔액기준 COFIX 도입 → 현행 잔액기준 COFIX보다 약 27bp 하락('16.8월 ~'18.8월기준)
- 신(新) 잔액기준 COFIX는 '19.7월 공시 이후의 신규대출자부터 적용하며, 기존 대출자도 희망할 경우 신(新) 잔액기준 COFIX 대출로 전환 가능

After



* 기존 대출계약 후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며, 기존 대출계약 3년 이전의 경우에 적용되는 변동금리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4월)

7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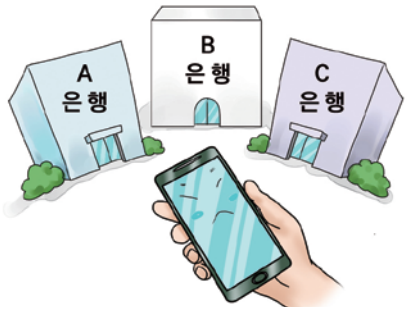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25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

시행일 : 2019년 10월 은행권 시범 시행
2019년12월 전면 시행 예정

Before

지금까지 여러 은행 거래 시 각각의 은행 앱을 통해서 결제·송금·이체 이용하였습니다.



After

'19년12월 금융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되어 하나의 앱으로 모든 거래가 가능해 집니다.



8 금융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p.26

카드이동 서비스

시행일 : 자동납부 통합조회서비스(2019년 말)
자동납부 해지·변경서비스(2020년 상반기)

Before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조회, 해지 · 변경 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 신용카드 자동납부내역을 금융결제원 통합플랫폼 시스템(www.payinfo.or.kr 및 전용앱)을 통해 한 번에 통합조회가 가능
- 시행일 : 자동납부 통합조회서비스(2019년 말) 자동납부 해지 · 변경서비스(2020년 상반기(잠정))

After



금융결제원 통합 플랫폼 (Payinfo)

- 통신서비스, 도시가스비, 아파트 관리비 등 카드자동납부가 활성화된 부문부터 우선 실시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신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3)

2019년부터 자신과 배우자 모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후, 다음해 9월에 정산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에 한해 지급주기를 단축하여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는 현행 방식을 유지합니다.

- 현행 : 다음연도 5월 신청, 9월 지급
- 개정 :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방식 선택 가능(근로소득자 한정)

* (상반기 소득분) 당해연도 8.21. ~ 9.10. 신청, 12월 지급
  (하반기 소득분) 다음연도 2.21. ~ 3.10. 신청, 6월 지급
  (정산) 다음연도 9월 환수 또는 추가 지급

▣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신설

- **추진배경** 근로장려금 지급주기 단축을 통한 저소득 근로자 지원
- **주요내용**
  - 지급주기 변경
    - 현행 : 다음연도 연 1회 지급
    - 개정 :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방식 추가(근로소득자)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4)

내수 확대 및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5%→3.5%)를 '19년 말까지 6개월 연장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편방안 발표(2019.6.5.)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

- **추진배경** 내수확대 및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
- **주요내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5%→3.5%)를 '19년 말까지 6개월 연장
- **시행일** 2019년 7월 1일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6)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자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 국내 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 등이 게임·음성·동영상파일·전자문서·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을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왔으며,

▣ 과세대상 용역에 클라우드컴퓨팅*,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중개용역을 추가하였습니다.

*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공간 대여, 중앙컴퓨터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등 대여하는 서비스

▣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 보도자료(2018.7.30.), 2018년도 세법개정안(21개) 본회의통과 보도자료(2018.12.8.)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

- **추진배경** 국내·외 사업자간 과세형평 제고
- **주요내용**
  - 국외사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게임·음성·동영상파일·전자문서·소프트웨어저작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 클라우드컴퓨팅, 광고 게재용역, 중개용역을 과세대상에 추가
- **시행일** 2019년 7월 1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수출용원재료의 관세 등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2)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된 자가 수출용원재료의 관세 등을 일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관세법 및 관세환급특례법을 위반하였거나,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하는 등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일괄납부업체 지정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수출용원재료의 관세 등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

- **추진배경** 일괄납부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등의 일괄납부 시 무담보 원칙 적용
- **주요내용**
  - (원칙) 일괄납부업체 : 무담보
  -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관세법·관세환급특례법 위반자
    - 관세 등 조세 체납자
    -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자
    -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중인 자 등
    - 수입실적, 자산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최근 1년 이내 어음법, 수표법에 따라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체납중인 자 등
- **시행일** 2019년 7월 1일

통고처분 납부방법 개선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2)

관세법을 위반하는 경우 벌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 납부하도록 통고처분을 하고 있으나, 현금납부만 가능하여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일 이후 통고처분 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통고처분 납부방법 개선

- **추진배경** 현금납부 이외에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국민 편의 제고
- **주요내용** • 납부방법 :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로 납부 가능
- **시행일** 2019년 7월 1일

비금융기관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이용 허용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044-215-4753)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 추가됩니다.

▣ 이에 따라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재화 및 용역 구입만 가능하며, 다른 전자지급수단이나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자산 구입은 제외됩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5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해외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한다」 보도자료

비금융기관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이용 허용

- **추진배경** 국민들의 결제편의 제고 및 핀테크 산업 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비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추가
- **시행일** 2019년 5월 28일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

법무부 상사법무과 (☎ 02-2110-3256)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02-2100-265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16.3.22) 시행으로 2019년 9월 16일부터 주식·사채 등 증권의 실물이 사라집니다.

▣ 주식·사채 등을 전자적으로 등록하여 실물 없이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됩니다.

▣ 9월 16일 시행 시 상장증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이 되고, 미예탁분 또는 실물증권은 실효될 예정입니다.

※ 미예탁 실물 권리자가 전환대상 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권리자 명의로 특별계좌를 개설하여 실물권리자를 보호할 예정

▣ 시행 후 상장주식·사채 등은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유통 되고,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전자증권으로 전환됩니다.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올해 9월부터 주식·사채 등 증권 실물이 사라집니다."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

- **추진배경** 권리관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 효율성을 제고하며 금융 혁신을 위한 전자증권제도 도입
- **주요내용** 주식·사채 등을 전자등록하여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자증권제 도입
- **시행일** 2019년 9월 16일

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인 자 등에 대한 군인연금 제한

국방부 군인연금과 (☎ 02-748-6671)

군인연금이 형사 피의자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자 및 외국에 1년 이상 체류 중임에도 외국거주자신상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의 군인연금을 제한합니다.

▣ 복무 중 발생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 또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자가 소재불명이 된 사유로 검사 및 군검사의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 퇴역(상이)연금의 1/2을 지급 유보합니다.

▣ 군인연금수급권자가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시민권자·영주권자와 동일하게 외국거주자신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금 전액을 지급 유보합니다.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군인연금법 시행령' 및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인 자 등에 대한 군인연금 제한

- **추진배경** 군인연금수급자가 형사 피의자인 경우 군인연금이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방지하고 군인연금의 부정수급을 예방
- **주요내용**
  - 수사 또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자가 소재불명이 되어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의 2분의 1을 지급 유보
    - 현행 : 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인 자는 퇴직수당 및 일시금에 한하여 2분의 1을 지급유보
  - 군인연금수급권자가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외국거주자신상신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금 전액을 지급 유보
    - 현행 : 외국 시민권·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연금수급권자의 경우 외국거주자신상신고서 제출
- **시행일** 2019년 하반기(예정)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044-201-1728)

2019년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노지채소 5개 품목(배추, 무, 당근, 호박, 파)을 추가하였습니다.

▣ 상반기에 고랭지 배추·무, 단호박, 대파를 판매하였으며, 하반기에 월동 배추·무, 당근, 쪽파·실파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 품목수 : ('01년) 2개 → ('10년) 25개 → ('16년) 50개 → ('18년) 57개 → ('19년) 62개

품 목	가입기간	사업지역
배추	4.29~6.21	[고랭지] (강원)정선·삼척·태백·강릉·평창
	9.16~9.27	[월동] (전남)해남
무	4.29~6.28	[고랭지] (강원)홍천·정선·평창·강릉
	9.16~9.27	[월동] (제주)제주·서귀포
단호박	4.8~5.24	(경기)연천
당근	7.15~8.9	(제주)제주·서귀포
파	4.29~5.31	[대파] (전남)진도·신안
	7.15~8.9	[쪽파·실파] (충남)아산, (전남)보성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정책홍보〉 분야별정책〉 농업분야〉 농작물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 **추진배경**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경영 안정망 확충
- **주요내용** 농작물재해보험 : 노지채소 중심으로 보험 대상품목 확대 (57품목 → 62품목)
  - 신규 5품목 : 배추, 무, 당근, 호박, 파
- **시행일** 품목별 가입시기 상이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044-200-5820)

선박 운항자의 항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운항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3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대상 항법은 「해사안전법」에 따른 경계(제63조), 안전한 속력(제64조), 충돌위험 판단법(제65조), 충돌회피 동작(제66조), 추월방법(제71조), 마주치는 상태의 항법(제72조), 횡단하는 상태의 항법(제73조),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제77조)입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해사안전법'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 **추진배경**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발생한 급유선·낚시어선 간 충돌사고('17.12월)를 계기로 운항부주의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기초항법 준수에 대한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 제고
- **주요내용**
  - 분경계, 안전한 속력 및 충돌회피 동작 등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 상향(300만원→1,000만원)
  - 과태료 위반횟수별로 과태료 차등 부과
    - 1회 위반 시에는 과태료 상한의 30%, 2회 위반 상한의 50%, 5회 위반 100%를 부과
- **시행일** 2019년 7월 1일

산업 위기지역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50% 감면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 044-200-5266)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위기 극복을 지원합니다.

▣ 최근 정부는 지역경제가 크게 침체된 9개 시·군·구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근로자·실직자 고용안정, 대체·보완산업 육성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군산시,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울산광역시 동구, 창원시 진해구

▣ 해양수산부는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50% 감면함으로써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비용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산업 위기지역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50% 감면

- **추진배경** 산업위기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 **주요내용** 산업위기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해당 행정구역의 산업위기지역·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한시적 감면)
- **시행일** 2019년 7월 1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서류 간소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042-481-4454)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 보증신청 시 제출하는 세무서류를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 지역신보법 개정('19.7월)에 따라 고객이 동의할 경우 다음과 같이 지역신보에서 세무서류를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 세무서 방문) 세무서류 4종* 제출 필요

  *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납세증명

- (개정 : 지역신보 발급) 세무서류 4종 제출 생략

  * 지역신보법 상 과세정보요청 근거 마련을 통해 세무서류 4종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 활용 추진

▣ 개정내용은 2019년 하반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상기 세무서류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승인결과에 따라 서류간소화 시행일 일부 변동 가능 ('19.7~12월 중)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서류 간소화

- **추진배경** 지역신보 제출서류 간소화 (고객편의 제고)
- **주요내용** 지역신보법 개정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세무서류 제출 생략
  - 현행 : 세무서류 4종 제출 필요
    ※ 사업자증명, 부가세증명, 재무제표증명, 납세증명
  - 개정 : 세무서류 4종 제출 생략
- **시행일** 2019년 하반기

통관목록물품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제출

관세청 특수통관과 (☎ 042-481-7835)

해외직구 신고 정확도 강화 및 성실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목록통관시에도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명의가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정당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화물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직구물품의 실시간 통관진행 정보와 과거 통관이력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홈페이지→국민관심서비스(해외직구 여기로)→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개정내용은 2019년 6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3

통관목록물품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제출

- **추진배경** 타인명의를 도용한 상용물품 저가신고 및 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해 목록통관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기재 추진
- **주요내용**
  - 목록통관 제출 시 개인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
  - 개인통관고유부호 활용 통관진행정보 통합조회 기능 제공
- **시행일** 2019년 6월 3일

품목분류 사전심사 'HS 6단위 소호 회신제도' 신설

관세청 세원심사과 (☎ 042-714-7642)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인이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만 요청할 경우 소호까지 회신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 적용대상은 FTA 원산지 확인을 위한 수출물품으로,

– 신청방법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신청사유' 항목란에 '수출물품 6단위 소호 확인'을 체크하면 됩니다.

▣ 이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정한 법정기간(30일)보다 단축된 15일 이내 심사하여 회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HS 6단위 소호 회신제도' 신설

- **추진배경** FTA 활용 등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6단위 회신번호 제도 신설
  - 품목분류 사전심사 처리기한 단축 (30일→15일)
- **시행일** 2019년 4월 22일

중소기업 등의 특허활용촉진을 위한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 042-481-5716)

중소기업·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특허권 등에 대해 연차등록료 감면을 실시합니다.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기관

▣ 중소기업 등이 기술신탁관리기관에 특허권 등을 신탁하면,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수탁한 특허권 관리와 기술 이전·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수탁하더라도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연차등록료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 2019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공공연구기관 등이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 등록한 특허권 등의 연차등록료도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특허권 등의 수탁 후의 유지비용 경감 정책에 따라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수탁하고 있는 중소기업 특허권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

- **추진배경** 중소기업 등의 기술이전·사업화 및 특허권 활용 촉진
- **주요내용**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의 감면대상에 '기술신탁관리기관' 추가
- **시행일** 2019년 하반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의 공포후 시행 예정)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도입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 02-2100-2853)

대출의 기준금리로 쓰이고 있는 잔액기준 COFIX를 개편하여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 은행이 대출재원으로 활용함에도 그간 잔액기준 COFIX 산출시 제외되었던 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이하 '결제성자금') 일부를 포함하여 산출할 계획입니다.

- 결제성 자금을 포함한 새로운 COFIX(잔액기준)는 현행보다 27bp 정도('16년 8월~'18년 8월 기준) 하락하게 됩니다.

▣ 새로운 COFIX(잔액기준)는 2019년 7월부터 산출하여 신규대출자부터 적용하고 기존 COFIX(잔액기준)는 기존 대출계약자를 위해 새로운 COFIX와 병행해 지속산출할 계획입니다.

- 기존 COFIX(잔액기준)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새로운 COFIX(잔액기준)를 기준금리로 한 대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기존 대출계약 후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며, 기존 대출계약 3년 이전의 경우에 적용되는 변동금리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4월)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도입

- **추진배경** 실제 대출재원에 사용되는 결제성자금을 COFIX(잔액기준)에 포함하여 산출함으로써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
- **주요내용**
  - 일부 결제성자금(약 19%정도)을 포함한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도입 → 현행 잔액기준 COFIX보다 약 27bp 하락('16년 8월~'18년 8월기준)
  -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는 '19년 7월 공시 이후의 신규대출자부터 적용하며 기존 잔액기준 COFIX 대출자도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대출로 전환 가능
- **시행일** 2019년 7월~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 02-2100-2535)

금융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구축됩니다.

*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 개별은행과 제휴 없이도 참여 은행들이 표준화된 방식(API)으로 해당 은행의 자금이체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

▣ 앞으로 여러 은행계좌를 가진 소비자들은 은행별로 앱(App)을 일일이 설치할 필요 없이, 은행 또는 핀테크기업의 앱(App) 하나에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하여 결제·송금·이체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됩니다.

▣ 변경된 내용은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19년10월 경 은행권에서 시범 시행되며, '19년 12월에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공동 결제시스템 (오픈뱅킹) 구축

- **추진배경** 금융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
- **주요내용**
  - 금융서비스 이용편의성 제고
    - 현행 : 여러 은행 거래시 각각의 은행 앱을 통해서 결제·송금·이체 이용
    - 개정 : 하나의 앱에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하여 편리하게 결제·송금·이체 이용
- **시행일** 2019년 10월 은행권 시범 시행, 2019년 12월 전면 시행 예정

카드이동 서비스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02-2100-2983)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조회,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한번에 조회하고, 필요시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가 금융결제원 통합 플랫폼(Payinfo)을 기반으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 통신서비스,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 카드자동납부가 활성화된 부문부터 우선 실시하며,

▣ '카드이동 서비스'는 2019년 말 자동납부 내역 조회서비스를 우선 제공 후, 2020년 상반기에 해지·변경 서비스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국민체감형 금융거래서비스 도입방안

카드이동 서비스

- **추진배경** 현재 소비자는 주거래 카드 변경시 자동납부를 일일이 변경해야하고, 자동납부 현황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개선 필요
- **주요내용**
  - 신용카드 자동납부내역을 금융결제원 통합플랫폼 시스템(www.payinfo.or.kr 및 전용앱)을 통해 한 번에 통합조회가 가능
  -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필요시 통합플랫폼 시스템을 통해 해지 또는 일괄 변경이 가능
- **시행일** 자동납부 통합조회서비스(2019년 말)
  자동납부 해지·변경서비스(2020년 상반기)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시 변호인 참여 허용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02-2100-2682)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 02-2100-2518)

2019년 8월 3일부터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사건(내부자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조사 과정의 변호사 참여가 가능합니다.

▣ 그동안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과정에서 변호사 참여는 허용되지 않았으나,

-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변호사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시 변호인 참여 허용

- **추진배경**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시 국민의 방어권 보장
- **주요내용**
  - 금감원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과정의 변호사 참여를 허용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한될 수 있음)
- **시행일** 2019년 8월 3일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제도 변경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02-2100-2668)

부적격자의 유사투자자문업 영위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유사투자자문업 교육 미이수자 등의 유사투자자문업 영위가 불가능해집니다.

▣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유사투자자문업 교육 미이수자 등이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 불수리가 가능하며, 신고가 수리된 이후라도 금융관련법령 위반 등 발생시 신고 직권 말소가 가능합니다.

▣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위하는 경우 처벌이 3천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2020년 6월 30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금융투자협회에서 2019년 7월 1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교육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며, 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은 금융투자협회(T.02-2003-988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19.4.16.)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제도 변경

- **추진배경** 부적격자의 유사투자자문업 영위에 따른 투자자피해 방지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 요건을 신설
- **주요내용**
  - 금융관련법령 위반 등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 사유 신설
  -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시 처벌 강화(과태료→형사벌)
  - 유사투자자문업 교육 신설 및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교육 이수 의무화 등
- **시행일** 2019년 7월 1일

농수산식품 우수기술자에 대한 신용보증(농신보) 한도 확대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 02-2100-2863)

농수산식품분야 우수기술자에 대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가 확대됩니다.

▣ 외부 기술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자는 일반보증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술신용평가기관(TCB) 5개

- 현행 : 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일반적인 동일인당 보증한도)
- 개정 : 개인·법인 30억원

▣ 개정내용은 2019년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농수산식품 우수기술자에 대한 신용보증(농신보) 한도 확대

- **추진배경** 농수산식품분야 기술금융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
- **주요내용**
  - 외부 기술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농수산식품분야 우수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자는 농신보 보증한도를 확대
    - 현행 : 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
    - 개정 : 개인·법인 30억원
- **시행일** 2019년 9월 1일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한 보험설계사의 정보 조회

금융위원회 보험과 (☎ 02-2100-2965)

「e-클린보험서비스(www.e-cleanins.or.kr)」를 통하여 보험설계사의 신뢰성 관련 정보에 소비자가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소비자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 보험가입시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율을 반드시 알려주고, 등록정보·계약유지율·제재이력 등은 e-클린보험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 기존의 모집경력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불완전판매율·계약유지율 등 추가정보를 집적·활용하고, 소비자·GA(법인보험대리점)도 직접 접속가능하도록 확대 개편됩니다.

▣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한 정보 조회는 2019년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정보는 일정 기간 정보집적 후 제공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부(02-2262-6629)·손해보험협회 자율관리부(02-3702-8616)로 문의 바랍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보험설계사·GA 관련 정보 이제 투명하게 보여드립니다.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한 보험설계사의 정보 조회

- **추진배경** 보험소비자의 알권리 확대 및 보험설계사간 신뢰도 경쟁을 통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
- **주요내용**
  - 보험가입시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을 알려주고 신뢰성 관련 정보에 대한 시스템 조회 가능
  - 모집경력시스템에 추가정보를 집적하고, 소비자·법인보험대리점도 직접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편
- **시행일** 2019년 7월 1일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02-2100-2991)

제2금융권에 '계좌이동 서비스'를 도입하고, 은행과 제2금융권 간 계좌 이동도 가능해집니다.

▣ 계좌이동 서비스가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에 도입됨에 따라 제2금융권 이용고객도 자동이체 일괄변경이 가능해집니다.

▣ 은행-제2금융권간 자동이체 변경도 가능해집니다.

▣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는 2019년 하반기까지 도입예정이며, 은행-제2금융권간 자동이체 변경 서비스는 2020년 상반기 이전까지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국민체감형 금융거래서비스 도입방안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 **추진배경** 제2금융권 이용고객은 주거래 계좌 변경시 자동납부 계좌를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 존재
- **주요내용**
  - 제2금융권 이용고객도 자동이체 일괄변경이 가능하도록 계좌이동 서비스를 제2금융권에 도입
  - 은행-제2금융권간 자동이체 변경이 가능하도록 금융결제원 통합플랫폼 시스템(www.payinfo.or.kr 및 전용앱) 개선
- **시행일** 제2금융권 계좌이동서비스 (19년 하반기)
  은행-제2금융권 간 자동이체 변경서비스 (20년 상반기, 잠정)

공영방송 수신료 감면제도 개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 02-2110-1418)

수신료 징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수신료 납부과정에서 발생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현행 체납액의 5%에서 3%로 인하되고, 독촉장에도 가산금 부과근거가 기재됩니다.

▣ 지금까지는 수신료 면제대상 중 전력사용이 저조하거나 난시청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등에 한정하여 별도 증빙 없이 면제를 신청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 향후, 수신료 면제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까지 증빙 없이 면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됩니다.

▣ 수신료 선납 감액제도를 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수신료를 징수하는 KBS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도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 기존에는 수상기등록자가 잘못 납부한 수신료만 환급 받을 수 있었으나, 향후에는 수상기를 갖고 있지 않은 국민에게 잘못 부과·납부된 수신료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을 7월부터 수신료 체납 가산금 낮아진다.

공영방송 수신료 감면제도 개선

- **추진배경** 수신료 납부과정에서의 국민 불편 해소 등 수신료 징수제도의 합리성 제고
- **주요내용**
  - 수신료 체납 가산금을 현행 체납금의 5%에서 3%로 인하
  - 수신료 면제대상자 중 별도 증빙 없이 면제를 신청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
  - 수신료 징수자에 수신료 선납 감액제도 고지 의무 부과
  - 수상기 미소지자 오납 수신료 환급 근거 신설
- **시행일** 2019년 7월 10일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의무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02-2110-1529)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에 대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됩니다.

▣ 보험 가입 등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이용자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사업자로, 다만 연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의무보험(공제)의 최저가입금액(보상한도액) 또는 준비금 최소 적립금액 기준은 0.5억원에서 10억원 수준으로 사업자의 '매출액' 및 '이용자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의무화는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개정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의무화

- **추진배경**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화
    - 대상 : 이용자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다만, 연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
    - 기준 : 최저보험가입금액(또는 최소 준비금 적립금액)은 0.5억원에서 10억원 수준으로 사업자의 '매출액' 및 '이용자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 **시행일** 2019년 6월 13일

02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교육·보육·가족



Infographic

1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39

양육비 확보를 위해 부모의 주소와 근무지 조회 가능

시행일 : 2019년 6월 25일

Before

한부모의 양육비 확보를 위하여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주소, 근무지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6월 25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양육부·모의 주민등록 등·초본에 대한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양육부·모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After



2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40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장애부모 범위 확대 및 서비스 신청 편의 제고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신청 지역 범위 확대는 2020년 1월 1일
(잠정, 개정안 법제처 심의중)

Before

지금까지 장애부모 중 1급, 2급 및 3급 일부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경우)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After

'19년 7월 1일(예정)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기존
1~3급에 해당하는 장애 부모는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으로서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됩니다.



* 주소 등록지 관할 뿐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지며,
소득판정에 필요한 정보가 관할 지역으로 이관되어 판정이 진행됩니다.
→ 신청 범위 확대는 '20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올해 3학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 044-203-6517)

국민 기본교육인 고등학교 학비를 국가가 부담하여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올해 3학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됩니다.

▣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 보다 많은 학생들이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 '20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21년에는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 **추진배경** 고등학교 학비를 국가가 부담하여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
- **주요내용**
  - 대상학교 :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19년 기준, 약 137만명)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제외학교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초·중학교 동일 기준)
  - 지원항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 현행 초·중학교 의무교육 단계 무상지원 범위와 동일
- **시행일** ('19.2학기) 3학년 → ('20년) 2, 3학년 → ('21년~) 全학년

http://whatsnew.moef.go.kr

고용노동부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9)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하여 1인 자영업자·특수고용직**·단시간 노동자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었음

* 수급요건 :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피보험 단위기간)

**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택배기사 등

– 2019년 7월부터는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월 50만 원의 출산급여(3개월, 최대 150만 원)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 **추진배경**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 **주요내용**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월 50만 원(3개월)의 출산급여 지원
- **시행일** 2019년 7월

양육비 확보를 위해 부모의 주소와 근무지 조회 가능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54, 6347)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의 양육비 확보를 위하여 2019년 6월 25일부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주소, 근무지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 지난해 12월 개정 · 공포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6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비양육부·모의 주민등록 등·초본에 대한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양육부·모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양육비 소송제기 전,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도모하고, 소송기간 단축으로 미성년 자녀의 복리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표전화 1644-6621

비양육부·모의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

- **추진배경** 양육비 청구 소송 전, 비양육부모의 신속한 소재 파악 통한미성년 자녀의 복리 증진
- **주요내용**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위해 비양육부·모의 주소, 근무지 조회 가능
- **시행일** 2019년 6월 25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장애부모 범위 확대 및 서비스 신청 편의 제고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02-2100-6365)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아동의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서비스 우선제공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기존에는 1급, 2급 및 3급 일부(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경우)가 우선제공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기존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으로서 우선제공 대상에 포함됩니다.

▣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부지원 신청 시 편의 제고를 위해 주소 등록지 관할 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지며, 이 경우 소득판정에 필요한 정보가 관할 지역으로 이관되어 판정이 진행됩니다.

▣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아이돌봄서비스 시행규칙」을 '19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할 예정이며, 다만 신청 범위 확대는 시스템 기능 구축이 완료되는 '20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참고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19.7.1. 개정 시행)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장애부모 범위 확대 및 서비스 신청 편의 제고

- **추진배경**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한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장애부모 범위 확대 및 서비스 신청 과정에서의 편의 제고 위한 신청 지역 확대
- **주요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장애부모 범위를 기존 1~3급(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
  -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시 관할 지역 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신청 가능하도록 신청 지역 확대
- **시행일** 2019년 7월 1일, 신청 지역 범위 확대는 2020년 1월 1일(잠정, 개정안 법제처 심의중)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문화를 혁신할 수 있는 플랫폼 출범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 02-2100-6151)

청년들의 관심의제에 대해 청년과 정부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2030세대의 '청년 참여 플랫폼'이 2019년 7월에 출범합니다.

▣ 청년과 정부 간의 상시화된 소통과 청년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은 정책 제안을 넘어 실제 정책을 바꾸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 '청년 참여 플랫폼'은 '성평등' 관점에서 가족, 안전, 다양성, 노동, 디지털, 미래 등의 정책 이슈를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추진합니다.

* 정책 이슈(예시) : 조직문화 혁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다양한 가족 포용, 지역 청년 활동 지원, 안전한 피임·임신·출산 등

▣ '청년 참여 플랫폼'은 공적 영역의 정책개선과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문화혁신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활동할 예정입니다.

청년 참여 플랫폼 출범·운영

- **추진배경** 청년들이 성평등 관점에서 일자리, 디지털과 안전, 지역 균형 등 정책을 정부와 함께 소통·공론화하고, 직접 기획 실행할 수 있는 논의의 장 마련
- **주요내용**
  - 청년 모집 및 분과 구성('19.6월~7월)
  - 정책 제안 및 실행('19.7월~연중)
  - 문화 혁신 사업('19.8월~연중)
- **시행일** 2019년 7월 19일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 임신갈등·위기상담 서비스 추진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02-2100-6326)

기존 한부모·양육비 상담전화에 위기임신상담서비스를 추가한 가족상담전화(1644-6621)가 8월부터 시범운영하게 됩니다.

▣ 청소년 등 임신과 관련된 위기·갈등상황에 처한 여성에게 ▲전화상담원이 초기 심리·정서상담과 정보제공을 진행하고, ▲심층상담필요시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22개소)를 통한 전문상담사(44명) 연계 또는 ▲입소·전문기관 연계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게 됩니다.

▣ 또한 ▲(긴급)위기임신 대상자가 언제든 연락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으로 상담시간을 확대하고, ▲비혼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 상담기능(문자서비스)을 추가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가족상담전화 내 임신갈등·위기상담 서비스 추진

- **추진배경** 청소년 등 임신과 관련된 위기·갈등상황에 처한 여성에 대한 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 운영
- **주요내용** 심리정서상담, 긴급위기상담, 주거/의료/생활/법률지원 등 정보제공, 전문기관 연계
- **시행일** 2019년 8월 말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02-2100-6378)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간 실질적인 소통·융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됩니다.

▣ 공공시설 등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사회내 다문화가족의 소통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19년 80개소가 신규 설치·운영됩니다.

▣ 다문화가족의 자조활동, 자녀성장 프로그램 운영 등 폭넓은 활용이 가능하며,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상호교류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 설치

- **추진배경** 다문화가족의 커뮤니티·프로그램 운영 공간 부족
- **주요내용** 다문화가족들 스스로가 지역사회 발전과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사회에 환원 할 수 있는 실질적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공간 지원
- **시행일** 2019년
  ※ 시군구별 개소(開所) 일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 시기 상이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에 상담학 전공 추가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02-2100-6275)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에 '상담학 학위 취득자'가 추가됩니다.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상담관련분야'의 학위를 보유하거나 일정 경력 이상의 상담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 '상담관련분야'에 대해 기존 법령에서는 '상담학'을 명시하지 않아 '상담학과' 졸업생은 응시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다수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 이번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상담학과 졸업사실만 증명하면 응시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관련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규정은 6월 19일에 시행되었으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시험부터 적용됩니다.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에 상담학 전공 추가

- **추진배경**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을 확대하여 관련 전공자의 응시자격 증명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에 '상담학' 전공 추가
  - 달라지는 점
    - 개정전 : '상담학' 전공자들은 다수의 증빙서류를 준비해 응시자격 증명
    - 개정후 : '상담학' 전공자들은 상담학과 졸업 사실만 증명하면 응시자격 인정
- **시행일** 2019년 6월 19일

03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방·병무



Infographic

1 병무청

자세한 내용은 p.54

'군지원 사유' 연기제도 개선, 편법연기 방지

시행일 : 2019년 7월이후 각 군 (전환복무 포함) 지원자 부터

Before

지금까지 '의무경찰 지원' 사유 입영일자 연기가 30세까지 가능하였습니다.



After

'19년 7월 이후 28세 초과자는 '의무경찰 지원'사유 입영일자 연기를 제한합니다.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이 인정된 경우 '순직 결정일'로부터 급여 청구권의 시효 기산

국방부 군인연금과 (☎ 02-748-6664)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순직을 인정받았음에도 급여의 청구 시효 경과로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유족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급여 청구 시효의 특례조항이 신설됩니다.

▣ 종전에는 유족연금·사망보상금·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인 '사망일'로부터 5년(사망 조위금은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했습니다.

▣ 앞으로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급여의 청구 시효를 군인 '사망일'이 아닌 '순직 결정일'로부터 기산합니다.

▣ 또한, 개정 내용은 개정법이 공포된 날('19.4.23.)부터 시행하되, 법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청구 시효가 완성된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해 개정법 시행 이전('12.7.1.부터 '19.4.23.전까지)에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적용합니다.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국방소식〉보도자료/공지사항〉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월 23일 공포, 시행/관련 급여 신청절차 안내

순직 재분류자의 급여 청구 시효 특례 조항 신설

- **추진배경**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순직을 인정받았음에도 급여 청구 시효가 지나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유족의 권리 구제
- **주요내용**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급여의 청구 시효를 군인 '사망일'이 아닌 '순직 결정일'로부터 기산
- **시행일** 2019년 4월 23일(단, 2012년 7월 1일~2019년 4월 23일 간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2019년 4월 23일을 기준으로 시효 적용)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신청 기간 연장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 02-3476-8005)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신청 기간이 연장됩니다.

▣ 보상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이 연장됩니다.

- 현행 : 2016. 1. 19. ~ 4. 19. (신청기간 종료)
- 개정 : 2019. 5. 24. ~ 11. 25. (6개월 연장)

▣ 개정내용은 2019년 5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보상신청안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신청 기간 연장

- **추진배경**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 및 보상
- **주요내용**
  - 보상신청기간 연장
    - 현행 : 2016. 1. 19. ~ 4. 19. (신청기간 종료)
    - 개정 : 2019. 5. 24. ~ 11. 25. (6개월 연장)
  -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중 미신청자에 대해 보상신청 기회 부여
- **시행일** 2019년 5월 24일

지뢰 사고 피해 위로금 등 신청 기간 연장

국방부 지뢰피해자지원단 (☎ 02-748-7062)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뢰 사고로 피해를 입었으나, 위로금 등의 신청기간이 지나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경제적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지뢰 사고 피해 위로금 등의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이 연장됩니다.

- 현행 : 2015. 4. 16. ~ 2017. 4. 15. (신청기간 종료)
- 개정 : 2019. 6. 1. ~ 2021. 5. 31. (2년 연장)

▣ 개정내용은 2019년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보도자료〉지뢰 사고 피해 위로금 등 신청기간 연장된다.

지뢰 사고 피해 위로금 등 신청 기간 연장

- **추진배경** 지뢰 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 등 지급 기회 제공
- **주요내용**
  - 보상신청기간 연장
    - 현행 : 2015. 4. 16. ~ 2017. 4. 15. (신청기간 종료)
    - 개정 : 2019. 6. 1. ~ 2021. 5. 31. (2년 연장)
  - 지뢰 사고로 피해를 입었으나, 신청 기간을 놓친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 등 지급 기회 제공(신청 기간 연장)
- **시행일** 2019년 6월 1일

http://whatsnew.moef.go.kr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시 전자 색각검사 시행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042-481-2918)

우수한 모집병 선발을 목적으로 병역판정검사 시 실시하고 있는 색각검사를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전자 색각검사로 시행합니다.

▣ 종전에는 색각검사 책자를 활용하여 색각 이상 유무를 판별하였는데, 이는 1:1 대면 검사 방식으로 검사 시간이 상당 소요 되는 등 수검자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하반기부터는 색각검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PC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검사시간도 단축됩니다.

- (1차) 개별 PC이용, 색각검사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전원 검사
- (2차) 1차 이상자에 대해 색각검사표로 검사 '최종 결과' 확정

병역판정검사 시 전자 색각검사 시행

- **추진배경** 책자를 활용한 색각검사의 불편해소로 국민편익 제고
- **주요내용** 우수한 모집병 선발 목적으로 실시하는 색각검사의 전산화 실시
  - 종전 : 색각검사 책자를 활용하여 1:1 대면검사 실시
  - 개선 : 색각검사 전산시스템 구축, 전자 색각검사 실시
- **시행일** 2019년 6월 이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부터 전자색각검사 시행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입영일자 조정 범위 확대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12)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입영일자 조정범위가 확대됩니다.

▣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1회에 한하여 학기 종료 후로 입영일자 조정이 가능하여 입영일자가 3~7월인 경우 1학기 종료 후인 8~9월로, 9~12월인 경우는 학년 종료 후인 다음해 2~3월로 조정하였으나,

▣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안정적인 학습지도와 진로상담을 위하여 입영일자가 3~7월(1학기중)로 정해진 경우 8~9월 또는 다음해 2~3월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학년을 마치고 입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사 입영일자 조정제도 개선

- **추진배경** 학생들에 대한 안정적인 학습지도와 진로상담을 위해 학년을 마치고 입영할 수 있도록 입영일자 조정시기 개선
- **주요내용** 초·중·고등학교 교사 사유 입영일자 조정범위 확대
  - 당초 : 입영일자가 3~7월 → 8~9월로 조정
  - 개선 : 입영일자가 3~7월 → 8~9월 또는 다음해 2~3월로 조정
- **시행일** 2019년 5월 20일

‘군지원 사유’ 연기제도 개선, 편법연기 방지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16)

각 군(의무경찰 등 전환복무 포함) 모집에 지원,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군지원 사유’ 입영일자 연기를 제한합니다.

▣ 그 동안 군지원 사유 입영일자 연기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어,고령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한 사람이 다음해에 입영하는 의무경찰(30세까지 지원가능)을 지원, 입영지연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 이에, 편법연기를 통한 입영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군 모집병 지원 제한 연령인 28세까지 지원한 사람에 한하여 군지원 사유 입영일자 연기를 허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군지원 사유 입영일자 연기제도 개선

- **추진배경** ‘군지원 사유’ 연기를 통한 편법 입영지연 방지
- **주요내용** 28세 초과 각군(전환복무 포함) 모집에 지원한 사람으로 연기제한
- **시행일** 2019년 7월이후 각 군(전환복무 포함) 지원자 부터

동일법인 내 다수 병역지정업체(산업체) 선정 가능

병무청 산업지원과 (☎ 042-481-2773)

동일법인내 다수의 공장(사업장)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여 업체에서 보충역 자원 및 전직 제도를 이용,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그 동안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이 있는 경우 1개의 공장(사업장)만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고, 공장(사업장) 간 파견·출장도 1년 이내로 제한되어 기업의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현행 : 동일법인 내 1개의 공장(사업장)만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 개정 :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 선정 가능

▣ 다만, 동일 법인 내 여러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 현역대상은 1개 병역지정업체만 배정, 다른 병역지정업체와 인력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보충역은 필요인원만큼 채용)

▣ 개정내용은 2019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부터 적용하며, 병역지정업체 선정 결과는 2019년 11월 말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뉴스〉보도자료〉2019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0년 인원배정 관보 고시

동일법인 내 다수 병역지정업체 (산업체) 선정 가능

- **추진배경** 병역지정업체의 인력 활용의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병역지정업체(산업체) 선정 기준 완화
  - 현행 : 동일법인 내 1개의 공장(사업장)만 선정
  - 개정 :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 선정 가능

  ※ 다만, 산업기능요원 현역은 1개 업체에 대해서만 배정, 보충역은 필요 인원만큼 채용 가능
- **시행일** 2019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부터(선정 결과 : '19.11월말)

http://whatsnew.moef.go.kr

병무청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정근거 신설

병무청 산업지원과 (☎ 042-481-2773)

경제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한 경우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을 따로 하여 편입기회를 우선 제공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취약 대상자 별도 인원배정 근거 마련으로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지원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도 인원배정부터 적용되며, 2020년 1월 1일 이후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합니다.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뉴스>보도자료>2019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0년 인원배정 관보 고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배정근거 신설

- **추진배경**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해 있는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기회 제공
- **주요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해 있는 경우 산업기능요원 별도 인원배정
- **시행일** 2019년 5월 31일(2020.1.1.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공개 항목 추가

병무청 병역공개과 (☎ 042-481-2776)

2019년 10월 24일부터 4급이상 공직자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병역사항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가 추가되고, 이를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합니다.

▣ 지금까지 신고의무자 본인과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은 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분야, 계급, 입영연월일, 전역(소집해제)연월일, 전역(소집해제)사유', 복무 중인 경우 '복무분야, 계급, 입영(편입)연월일,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을 신고·공개하고 있으나,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병역공개법)」 일부개정에 따라 복무를 마친 신고대상자는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가 추가되고 복무 중인 신고대상자는 '병과 및 군사특기'가 추가로 신고·공개됩니다.

▣ 이처럼 고위공직자 본인과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공개항목을 보다 구체화하여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공개 항목 추가

- **추진배경**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 제고
- **주요내용** ① 병역공개법 일부개정('19. 4. 23.)
  ② 개정내용 : 법제3조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병역사항 추가
  - 복무 마친자 :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군인)
  - 복무 중인자 : 병과 및 군사특기(군인)
- **시행일** 2019년 10월 24일

방산업체 권리구제를 위한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운영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과 (☎ 02-2079-6312)

최근 과도한 지체상금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업체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 기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법률전문가, 회계사, 손해사정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체상금 관련 민원에 대해 옴부즈만의 검토 및 판단을 지원하는 민간 심의·자문 기구입니다.

▣ 업체에서 지체상금 부과 및 면제심의 이후 이의가 있을 시 위원회에서 각 분야 민간전문가들의 시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가운데,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

지체상금 부과	이의 제기
군수조달분과위 심의 및 면제결정(계약관) (청→업체)	민사 소송

– 개정 :

지체상금 부과	이의 제기	위원회 검토	위원회 검토	위원회
군수조달분과위 심의 및 면제결정(계약관) (청→업체)	민사 제기 (업체→옴부즈만)	민간전문가 구성 위원회 심의 (위원회→옴부즈만)	위원회 결과에 따른 옴부즈만 의견 통보 (옴부즈만→담당부서)	지체상금 결정 (유지·조정·면제) (청→업체)

참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공지사항〉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내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운영

- **추진배경** 지체상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업체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제도 신설
- **주요내용**
  - 지체상금 부과 및 면제 심의 이후 이의가 있을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률가, 회계사, 손해사정사 등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
- **시행일** 2019년 4월 29일

M&S[1] 사업의 개발문서(산출물) 작성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테일러링 가이드 시행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기반과 (☎ 02-2079-6325)

M&S 사업간 작성해야 할 산출물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업체의 업무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조정(테일러링) 기준을 제공하여 시행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M&S 사업의 산출물 테일러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개별 사업에서 자체 조정함에 따라 유사 산출물이 중복 작성되거나, 필수 산출물이 누락되고 불필요하게 과다 작성되는 등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 '19. 4월부터는 M&S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산출물을 조정할 수 있도록 아래 표와 같이 테일러링 가이드를 제시하였습니다.

구 분		표준개발 산출물	MND-AF[2] 산출물	CBD[3] 산출물
연동체계	CBD 적용	39 → 19	29 → 9	35 → 33
	CBD 미적용	39 → 31	29 → 9	35 → 0
단독운용 (사업특성 0형)	CBD 적용	39 → 19	29 → 7	35 → 34
	CBD 미적용	39 → 31	29 → 7	35 → 0

▣ 사업관리자 및 개발업체가 실제 체계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행정업무가 경감되고, 필수 산출물에 대한 작성 누락을 예방 할 수 있어 M&S 체계의 완성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M&S : Modeling & Simulation
2) MND-AF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rchitecture Framework
3) CBD : Component Based Development

M&S 사업 산출물 작성 테일러링 가이드 시행

- **추진배경** M&S체계 개발 사업시 작성되는 산출물에 대한 조정(테일러링) 기준 및 예시 제공
- **주요내용**
  - (무기체계 SW 개발 및 관리 매뉴얼, 국방 MND-AF, 국방 CBD 산출물 간 관련성 분석을 통해 유사 산출물의 조정 및 통합
  - 연동대상체계(사업특성분류) 및 국방CBD개발방법론 적용 유무에 따른 M&S 사업 산출물 테일러링 가이드 제시
- **시행일** 2019년 4월 16일

방산 수출 확대 및 촉진을 위한 방산물자 수출 시 기술료 인하

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 (☎ 02-2079-6394)

국방개혁과제의 방산육성, 범정부 방산수출지원 등을 위해 방산 업계에서 수출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제도개선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방위수출 활성화 필요

▣ 방산업체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료 감면 요구 증가

※ 장관 주관 『방산업체 CEO 간담회』, 청장 주관『DAPA-GO』, 방산업체 의견수렴 등

〈방산업체 건의사항〉

① **국내에서 생산한 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기술료 인하 요구**
② **국내생산 방산물자의 기술료는 2%이나, 해외 고객의 현지생산 및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과다한 기술료 지불 상황 발생** **- 현지생산의 경우 현행 3%를 2% 이하로, 제3국 수출 현행 5%를 2% 이하로 조정**
③ **방산업체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기술료 전액 감면에 대한 정책적 검토 건의**

▣ 국내 생산 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기술료 인하

- 현행 : 방산물자 수출 : 제품단위당 국내 순조달가격의 2%
- 개정 : 방산물자 수출 : 제품단위당 국내 순조달가격의 1%
  단, 순수출가격이 순조달가격 보다 낮은 경우 순수출가격의 1%

▣ 국외 기술협력을 통해 방산물자를 생산한 경우 기술료 인하

- 현행 : 국외 현지생산 자국사용 / 국외 현지생산 제3국 수출 : 단위당 순판매가격의 3% / 순수출가격의 5%
- 개정 : 국외 현지생산 자국사용 / 국외 현지생산 제3국 수출 : 단위당 순판매가격의 2% / 순수출가격의 3%

방산물자 수출 시 기술료 인하

- **추진배경** 방산수출지원을 위해 방산물자 수출 시 기술료 인하
- **주요내용**
  - 수출 시 기술료 인하

현행	· 방산물자 수출 : 제품단위당 국내 순조달가격의 2% · 국 외 현지생산 자국사용 / 국외 현지생산 제3국 수출 : 단위당 순판매가격의 3% / 순수출가격의 5%
개정	· 방산물자 수출 : 제품단위당 국내 순조달가격의 1% · 국 외 현지생산 자국사용 / 국외 현지생산 제3국 수출 : 단위당 순판매가격의 2% / 순수출가격의 3%

- **시행일** 2019년 2월 20일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결과 디브리핑 제도 도입

방위사업청 사업운영평가팀 (☎ 02-2079-5031)

투명하고 공정한 방위사업 추진을 위해 제안서 평가결과의 인터넷 공개와 디브리핑(Debriefing)* 제도를 올해 7월부터 확대 시행합니다.

* Debriefing : 제안업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해당업체의 제안서 평가점수와 사유를 설명하여 제안업체가 어떤 점이 미흡하고 개선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방위력개선사업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선합니다.

- 현행 : 협상대상업체(우선순위) 확정 후 대상업체만 개별 통보
- 개정 : 제안서 평가 후 3근무일 내 인터넷 결과 공개 및 제안업체 요청 시 해당 업체 평가결과 설명
  ⇒ 2019년 3월 ~ 6월까지 시범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7월에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을 개정·전면 시행합니다.

※ 올해 4월부터 확대 시행된 업체의 행정처분 내용이 포함된 자체감사 결과 디브리핑제도 도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 업체의 행정처분이 포함된 자체감사 결과는 감사조치 부서 및 기관에게 통보
- 개정 : 업체의 행정처분이 포함된 자체감사 결과는 감사관이 해당업체에게 통보하고 설명을 요구할 경우 감사결과를 설명.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보도자료〉디브리핑제도 도입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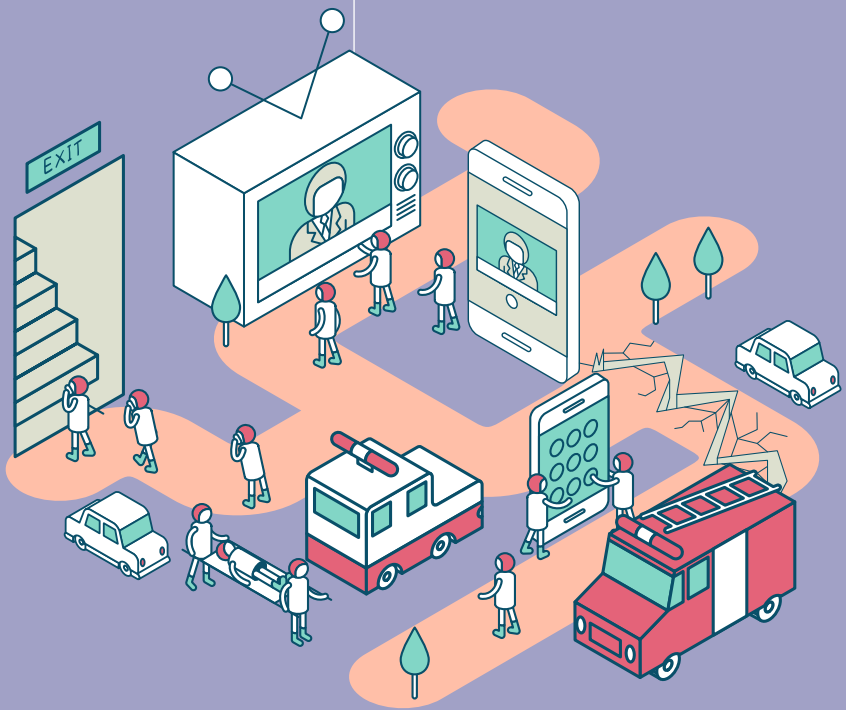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결과 디브리핑 제도 도입

- **추진배경** :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결과의 적시적인 공개 및 설명(디브리핑)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방위사업 추진 보장
- **주요내용**
  - 대상 : 방위력개선사업 중 국내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 모든 입찰업체의 제안서 평가결과를 세부 항목별 점수를 인터넷 공개
  - 입찰업체 요청 시 해당 업체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의무화
  - 디브리핑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신설
- **기대효과**
  - 방위사업 업체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 제안업체의 강·약점 파악 보완의 기회 제공으로 방산업체 경쟁력 강화
- **시행일** : 2019년 7월(「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개정 중)

04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안전·질서



Infographic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세한 내용은 p.69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 개선

시행일 : 2019년 6월 13일

Before

지금까지 기업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에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After

'19년 6월 13일부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대상자가 축소되는 등 관련 제도가 달라집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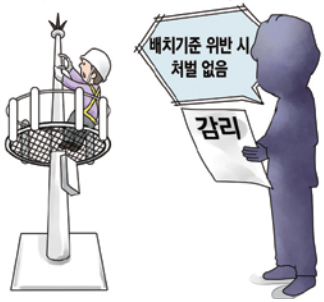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70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의무

시행일 : 2019년 10월 25일

Before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고 그 공사에 대하여 감리를 수행하였습니다.



After

'19년 10월 25일 이후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3 행정안전부

자세한 내용은 p.73

지방세와 과태료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받아 납부

시행일 : 2019년 7월

Before

지금까지 지방세를 종이고지서로 납부하였습니다.



After

'19년 7월 재산세부터 네이버 앱(네이버페이), 페이코 앱(NHN페이코) 및 카카오톡(카카오페이)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 즉시납부 또는 자동납부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금융사 앱을 통해서도 전자송달 및 납부 가능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케이뱅크, 광주, 대구, BNK경남, BNK부산, MG새마을금고, 금융결제원

4 해산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79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Before

7월 1일부터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설비가 대폭 강화되며, 출항 전 비상대응요령 안내가 의무화 됩니다.

-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해야 합니다.
- 야간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항해용 레이더를 장착해야 하며, 야간영업하는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은 위성조난신호기(EPIRB)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낚시어선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안내사항을 게시하고, 출항 전 방송 및 안내지 배부 등을 통해 비상 시 대응요령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Af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구명뗏목



위성조난신호기(EPIRB)



레이다

Infographic

5 국가보훈처

자세한 내용은 p.81

국립묘지 안장 생전(生前) 심의제

시행일 : 2019년 7월 16일

Before

지금까지 국립묘지 안장은 안장대상자 사후에 유족들의 안장신청을 받아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 여부 결정



After

'19년 7월 16일부터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립묘지 안장 생전(生前) 심의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6 경찰청

자세한 내용은 p.84

손실보상의 범위를 기존 재산상 손실에서 생명·신체상 손실까지 확대

시행일 : 2019년 6월 25일

Before

지금까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 집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보상 대상만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 재산상 손실보상

After

'19년 6월 25일부터 손실보상의 범위를 기존 재산상 손실에서 생명·신체상 손실까지 확대 운영합니다.



- 손실보상심의위원회로 허여금 심사자료와 결과를 경찰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도록 함

*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

7 경찰청

자세한 내용은 p.85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

시행일 : 2019년 6월 25일

Before

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평범하였습니다.



After

'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됩니다.



8 특허청

자세한 내용은 p.88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대폭 강화

시행일 : 2019년 7월 9일

Before

지금까지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시 특허권자 등의 생산능력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배상되었습니다.



After

'19년 7월 9일부터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Infographic

9 공정거래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p.92

담합·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시행일 : 2019년 9월 19일

Before

지금까지 공정거래법 집행은 시정조치, 과징금 등 행정적 조치에 집중되어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 구제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After

앞으로 담합 및 보복조치를 당한 피해자는 위반사업 · 사업자 단체를 상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p.94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 강화

시행일 : 2019년 7월

Before

'19년 7월 이후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강화됩니다.

-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출입업자 대상 등록제도 실시
- 신체밀착·착용제품에 원료물질 사용 금지
- 방사선작용을 이용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수출입 금지

After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 02-2110-2979)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대상자가 축소되는 등 관련 제도가 달라집니다.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대상 기업이 축소됩니다.

- 소상공인·소기업 등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약 16만 개 기업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 대기업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 대상기업 중 중견기업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정보보호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게 됩니다.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 관련 학력·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제도개선 시행(6.13일) 보도자료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 개선

- **추진배경** 사이버침해 예방·대응 등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제고
- **주요내용**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대상 기업 축소
    -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기업부담이 완화
  - 대기업 및 일부 중견기업 등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 제한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신설
- **시행일** 2019년 6월 13일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의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 02-2110-1907)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그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용역업자는 해당 정보통신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30일 이내(30일 이내에 완료되는 공사는 완료되기 이전)에 감리원 배치현황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함),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 개정내용은 2019년 10월 25일 이후 발주되는 정보통신공사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정보통신공사 보도자료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의무

- **추진배경**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및 정보통신공사 시공품질 향상
- **주요내용** 정보통신공사의 감리원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 제재 처분
  - 현감리원 배치현황 미신고 :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시행일** 2019년 10월 25일

점자여권 발급대상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

외교부 여권과 (☎ 02-2002-0115)

'19.7월 장애인 등급제 폐지 계기,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점자여권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현행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시각장애인
- 개정 : 모든 시각장애인

▣ 기존 4~6급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문자 인식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각장애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점자여권 발급대상을 장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한다('19.7.1. 시행).

- 관련 여권법령은 현재 개정 추진 중이며, 시행 전 대국민 홍보 예정

점자 여권 발급대상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

- **추진배경** 장애인복지법령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서비스 제공 목적 및 필요도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고려하여 점자여권 발급대상을 1~3급 중증시각장애인에서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
- **주요내용** 장애등급 또는 장애의 정도와 상관없이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발급대상 확대
- **시행일** 2019년 7월 1일
  *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의원발의, 개정안 발의 준비 중)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 확대

법무부 형사기획과 (☎ 02-2110-3541) | 법무부 형사법제과 (☎ 02-2110-3564)

앞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5억 원 이상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경제사범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 기업의 임직원이 거액의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기업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취업이 제한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11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경제사범관리위원회 폐지('09. 5. 특경법 개정)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왔던 경제사범 취업제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부 검찰국 내에 '경제사범 전담팀'을 설치하여 취업제한 등 위반여부 조사, 위반자에 대한 해임·인허가취소 요구 및 형사고발 등을 진행하고, 공정위, 금융위, 인허가 부서 등 관련 부처와의 협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또한, 취업승인 여부 결정 등을 심의하는 경제사범관리위원회 재도입, 취업제한 대상 기관 정비, 조사 수단 보완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충실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범죄를 저지른 경제인의 취업제한이 확대된다.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 확대

- **추진배경** 기업의 임직원이 거액의 경제범죄를 저질러 기업에 손해를 가한 경우 취업을 제한할 필요
- **주요내용**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추가
- **시행일** 2019년 11월 8일

지방세와 과태료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받아 납부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 (☎ 044-205-3880)

'19년 7월 재산세부터 대다수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카카오톡, 네이버 앱 및 페이코 앱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 즉시납부 또는 자동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종이고지서로 납부하였는데, 올해 7월부터는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대화형 앱(App)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가 모바일고지 안내를 카카오톡 등으로 받고, 납부는 신용카드 또는 예금계좌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면 정해진 날짜에 자동납부가 되어 납기를 놓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며, 모바일 고지서 건당 최고 1,000원까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와 과태료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받아 납부

- **추진배경** 4차 산업혁명 등 모바일 환경변화에 따른 국민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가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및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입 납부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대상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 법인은 제외
  - 세목 :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 과태료 등은 10월부터 신청 가능
  - 송달수단 : 카카오톡(카카오페이), 네이버(네이버페이) 앱, 페이코 앱
- **시행일** 2019년 7월 재산세
  - 신청기간 : 2019년 6월 14일부터
  - 신청방법 :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중 한 개의 앱에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 등 관련 약관동의를 거쳐 신청

http://whatsnew.moef.go.kr

산업통상자원부

안전설비 인증제도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044-203-5275)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설치·사용되는 안전설비는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인증대상 안전설비는 수동밸브, 체크밸브, 유량조절밸브입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안전설비 인증제도 도입

- **추진배경** 국내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설비 인증을 통한 안전성 제고
- **주요내용**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설치·사용되는 안전설비에 대해 인증제도 도입
  - 인증근거 : 「산업표준화법」제15조
  - 인증대상 : 수동밸브, 체크밸브, 유량조절밸브
- **시행일** 2019년 11월 1일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신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 044-202-7733)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를 조종하는 사람은 '20.2.1.부터 자격 없이는 조종할 수 없게 됩니다.

▣ 기존에는 별도의 자격 없이 누구나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를 조종할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당 장비의 신규자 교육과정(20시간)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조종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해당 장비를 조종한 경험이 3개월 이상인 사람은 '19.12.31.까지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 2시간을 이수한 경우 조종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령〉「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22호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신설

- **추진배경** 유해·위험한 장비 조종자의 역량강화 및 안전의식 향상
- **주요내용**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는 아래의 한 가지를 충족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② '20.2.1.부터 지정교육기관(안전보건공단 포함)을 통해 신규 교육을 수료한 사람
  ③ '19.12.31.까지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조종전문교육(2시간)을 이수한 사람
- **시행일** 2020년 2월 1일

http://whatsnew.moef.go.kr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처벌 등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100-6405)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보다 강화합니다.

▣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할 경우 처벌*하고, 해당 범죄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에 포함됩니다.

* (간음) 3년 이상 유기징역, (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로 신고된 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70만원 또는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

▣ 이와 함께 위계·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추행하면 처벌받는다.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행위 처벌 등

- **추진배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강화
- **주요내용**
  -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처벌 및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에 포함
  - 위계·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 **시행일** 2019년 7월 16일

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고 보안검색 및 생체정보로 신원확인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 044-201-4233, 4237)

제주공항에 CT X-ray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김포공항에는 국내선 항공기 탑승구에서 승객 본인여부 확인 시 탑승권 확인 대신 생체정보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노트북·액체류 검색을 위해 가방을 열어야만 검색이 가능했으나, CT X-ray가 도입되는 제주공항에서는 가방을 열지 않고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탑승구 진입 시 탑승권을 확인하였으나, 탑승권 대신 생체정보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 인천공항에 생체정보 활용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시스템 구축 추진
⇒ 승객 편의제고 및 항공보안 강화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고 보안검색 및 생체정보로 신원확인

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고 보안검색 및 생체정보로 신원확인

- **추진배경** 항공기 탑승객 편의 제고 및 항공보안 강화
- **주요내용** ① 제주공항 : CT X-ray, 중앙판독실 등 스마트 검색시스템 구축·운영
  ② 김포공항 : 국내선 출발장 진입 시에만 운영중인 생체인식시스템을탑승구까지 확대
- **시행일** 2019년 7월(제주공항 CT X-ray 등 스마트 검색시스템 구축·운영)
  2019년 10월(김포공항 국내선 탑승구 생체인식 시범운영 개시)

항공종사자 업무 전 음주측정 의무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044-201-4255)

'19년 9월부터 조종사·항공정비사 등 항공종사자는 매 비행·근무 시작 전에 의무적으로 음주여부를 측정하게 됩니다.

▣ 지금까지는 정부의 음주측정 단속과는 별도로 항공사 내에서 불시 측정을 시행하여 왔으나,

▣ 항공종사자의 음주영향 업무 수행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매 비행·근무 전 전수 측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현행 : 종사자의 약 15% 무작위 불시 측정
- 개정 : 全 종사자의 매 근무 전 의무 측정

▣ 이에 대한 규정이 '19.5월 개정되었으며,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항공종사자 업무 전 음주측정 의무화

- **추진배경** 항공종사자 주류등 측정·단속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통한 항공안전 증진
- **주요내용**
  - (측정대상 확대)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항공종사자로 대상 확대
    - 현행 : 일부(종사자의 15%) 표본 측정
  - (측정시기 조정) 매 비행·업무 시작 전 측정
    - 현행 : 임무수행 직전부터 직후까지 측정
- **기대효과** 음주 영향 하의 업무 수행 종사자 제로화
- **시행일** 2019년 9월 1일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044-200-5538)

낚시어선 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장비가 대폭 강화됩니다.

▣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해야 합니다.

▣ 또한 야간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항해용 레이더를 장착해야 하며, 야간영업하는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은 위성조난신호기(EPIRB)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4(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

아울러, 기존에 여객선과 유도선에서 시행되었던 출항 전 안내 의무가 올해 7월 1일부터 낚시어선에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안내사항을 게시하고, 출항 전 방송 및 안내지 배부 등을 통해 비상 시 대응요령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요령 고시'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 **추진배경**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 **주요내용** 선박 자동식별장치, 항해용 레이더, 위성 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설비 등 장비 설치, 출항 전 안내 의무
- **시행일** 2019년 7월 1일

미등록 선박에 대한 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044-200-5845)

미등록 선박 운항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 소유자가 '선박법'에 따라 선박을 취득하고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선박을 취득하고 60일 이내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등록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등록신청 지연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50(소형선박 10)	50만원(소형선박은 10만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하여 매 1일당 1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150만원(소형선박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소형선박은 30만원)으로 한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선박을 취득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등록 하세요' 보도자료

미등록 선박에 대한 관리 강화

- **추진배경** 미등록 선박 운항 방지
- **주요내용** 선박을 신규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내 등록신청을 아니한 경우
  - 200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임시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
- **시행일** 2019년 7월 1일

국립묘지 안장 생전(生前) 심의제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 (☎ 044-202-5592)

'19년 7월 16일부터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립묘지 안장 생전(生前) 심의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국립묘지 안장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중 범죄경력 또는 병적 이상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는데 안장 심의가 완료되기까지 통상 40일 정도가 소요되어 유족들의 장례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국립묘지 안장신청을 생전(生前)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여 안장대상자 본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장례편의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권고가 있거나, 기타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심의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국립묘지 안장 생전(生前) 심의제 시행

- **추진배경**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를 생전(生前)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만족도 제고에 기여
- **주요내용**
  - 결격사유가 있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생전에 안장 가능여부 확인
  - 안장대상자 중 80세 이상자 우선 추진
- **시행일** 2019년 7월 16일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및 국립괴산호국원 안장서비스 개시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 (☎ 044-202-5556)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증가로 부족한 안장능력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립묘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수도권 및 중부권 안장대상자가 원거리 소재 호국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국립괴산호국원 개원으로 근접 안장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 2019년 10월에 개원하는 괴산호국원은 1묘역(2만기)를 우선 운영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2묘역·3묘역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국립대전현충원 봉안당 및 국립이천호국원 확충, 제주국립묘지 신규조성 중에 있으며, 적기 안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대전현충원('17~'20, 5만기) , 이천호국원('18~'23, 5만기), 제주국립묘지('12~'21, 1만기)

참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알림·소식〉보훈처소식〉국립괴산호국원 개원 및 안장서비스 실시('19. 3분기 중 공지 예정)

국립괴산호국원 안장서비스 개시

- **준공** 2019년 6월 21일
- **주요내용** 시설안전 및 안장서비스 점점 등 개원 준비 : 2019년 6~9월
- **시행일** 2019년 10월 (예정)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가혹행위시 제재 강화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 042-481-3004)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하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복무 관련 규정이 강화됩니다.

▣ 사회복무요원이 서비스대상자에게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현행 병역법으로도 경고 및 연장 복무 처분은 가능했으나, 법 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포괄적 측면이 있었으며, 경고 누적에 따른 고발은 불가능했습니다.

▣ 이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한 제재사항에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하여 적용 법률을 명확히 하고, 경고처분 누적시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며, 사회복무요원에게 경각심을 주어 복무기강 확립과 범죄 발생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서비스대상자에게 가혹행위시 제재 강화

- **추진배경**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 강화로 복무기강 확립 및 범죄 발생예방 효과 제고
- **주요내용**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행위에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
  - 해당 의무 위반시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 조치, 경고누적시 고발대상이 됨
- **시행일** 2019년 7월 24일

손실보상의 범위를 기존 재산상 손실에서 생명·신체상 손실까지 확대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2-3150-0348)

2019. 6. 25.부터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시민이 입은 손실의 보상 범위가 다음과 같이 확대됩니다.

- 현행 : 재산상 손실
- 개정 :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

▣ 또한 보상금 지급 여부를 심의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경찰위원회에 보상금 심사자료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환수하는 등 보상금 지급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경찰청 홈페이지〉뉴스/알림〉뉴스룸〉PBN뉴스〉경찰 공무 수행 중 다친 시민, 국가 보상청구 가능해진다_경찰리포트(2018.12.28.)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범위 확대

- **추진배경**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시민의 생명·신체상 손실에 대한 보상을 통해 국민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시민이 입은 손실의 보상 대상을 생명·신체상 손실까지 확대
    - 현행 : 재산상 손실
    - 개정 :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
  -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후 경찰위원회에 심사자료와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도록 함
    - 환수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2019년 6월 25일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

경찰청 교통기획과 (☎ 02-3150-0659)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기준, 벌칙수준, 결격기간 및 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 기준 등이 강화됩니다.

▣ 주요내용으로 △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되며 △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 수준도 징역형의 상한(上限)은 5년, 벌금형의 상한은 2천만원으로 높아집니다.

※ 세부 형사처분기준은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내용" 참고

▣ 이와 함께 △ 운전면허 결격기간도 전반적으로 높아지며(1회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1년→2년 등) △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역시 ①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②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라도 면허취소대상이 되는 음주횟수도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도로교통법〉2019.6.25.시행 도로교통법(법률 제16037호)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

- **추진배경**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기준, 벌칙수준, 결격기간 및 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 기준 등이 강화됩니다.
- **주요내용**
  -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 0.03% 이상으로 개정(法 제44조 제4항)
  -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취소 기준 강화(法 제93조의제1항제2호)

구분	현행	개정안
면허정지 수치라도 취소대상이 되는 음주 횟수	3회 이상	2회 이상

• 주요내용

•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 수준 상향(法 제148조의2)

구분	현행	개정안
0.03~0.05%	〈신 설〉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5~0.1%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0.1~0.2%	징역 6개월~1년, 벌금 300만원~500만원	(0.08~0.2%) 징역 1년~2년, 벌금 500만원~1천만원
0.2% 이상	징역 1년~3년, 벌금 500만원~1천만원	(0.2% 이상) 징역 2년~5년, 벌금 1천만원~2천만원
2회	〈신 설〉	(2회 이상) 징역 2년~5년, 벌금 1천만원~2천만원
3회 이상	징역 1년~3년, 벌금 500만원~1천만원	
측정불응	징역 1년~3년, 벌금 500만원~1천만원	징역 1년~5년, 벌금 500만원~2천만원

• 음주운전에 대한 결격기간 강화(法 제82조제2항)

구분	현행	개정안
음주운전 교통사고		
3회 이상	3년	(2회 이상) 3년
2회	1년	
1회	1년	2년
음주운전		
3회 이상	2년	(2회 이상) 2년
2회	1년	
기타		
음주치사	–	5년

•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행정처분 기준 강화(規則 별표 28,29)

구분	현행	개정안
취소처분 개별기준		
음주 인피교통사고	0.05% 이상	0.03% 이상
취소처분 기준	0.1% 이상	0.08% 이상
음주운전 필요적 취소 횟수	3회(0.05%)	2회(0.03%)
정지처분 개별기준		
정지처분 기준	0.05% 이상	0.03% 이상
이의신청 기준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	0.12% 초과	0.1% 초과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	0.05% 이상	0.03% 이상

• 시행일 2019년 6월 25일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강화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 044-205-7472)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 부과됩니다.

▣ 안전표시(적색)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미터 내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반한 경우,

– 범칙금과 과태료가 승용자동차 8만원, 승합자동차 9만원으로 상향 부과됩니다.

구 분	현 행	개 정
범칙금·과태료	승용자동차 4만원 승합자동차 5만원	승용자동차 8만원 승합자동차 9만원

▣ 개정내용은 2019년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강화

- **추진배경** 소방차량의 접근성 확보를 통한 신속한 초기 대응 강화
- **주요내용**
  - 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위반 시 범칙금 및 과태료 상향
  - 기존 주·정차 금지표시와 구분되는 별도 안전(금지)표시 신설
- **시행일** 2019년 8월 1일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대폭 강화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 042-481-5842)

타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인정받는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됩니다.

▣ 종전에는 손해배상액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침해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보상하면 된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지식재산권 침해의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 이제는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높여, 지식재산의 침해를 근절하고 지식재산이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 밖에도 특허권자의 입증이 용이하도록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를 도입하고, '영업비밀 인정 요건 완화' 하는 등 지식재산의 보호수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동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특허청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특허법 개정 보도자료

특허법 및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 **추진배경** 지식재산권보호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 **주요내용**
  - 실시료 배상금액 판단기준 변경(통상적 실시료 → 합리적 실시료)
  - 소송에서 피고에게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함
  - 영업비밀이 '합리적 노력' 없이 '비밀로 관리'만 되면 보호 가능하도록 함
  -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는 행위 등 형사처벌 대상 확대
  - 영업비밀 침해죄 벌칙 상향(징역형 2배, 벌금상한액 10배 이상)
  - 영업비밀 침해 예비음모죄 벌금상향(1천만원 상향)
- **시행일** 2019년 7월 9일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특허청 심판정책과 (☎ 042-481-8444)

특허심판에서 대리인이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신청에 의해 특허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해주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 기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소기업 등 경제적 사정으로 특허심판에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하며,

-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심판 사건이 끝난 후에 심판수수료(심판청구료, 정정청구료)도 반환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자는 심판청구일로부터 1개월 또는 답변서 제출기일의 만료일까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특허청홈페이지〉 보도자료〉새해 달라지는 제도·지원 시책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 **추진배경** 특허심판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
- **주요내용**
  -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특허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 선임
  -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해 심판수수료 감면
- **시행일** 2019년 7월 9일

웹기반 사용자 맞춤형 지진정보서비스 실시

기상청 지진정보기술팀 (☎ 02-2181-0082)

지진발생 즉시 사용자 위치까지의 지진파 예측 도달시간 및 예상진도 등 체감 가능한 실효성 있는 지진정보가 제공됩니다.

▣ 맞춤형 지진정보서비스는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necis.kma.go.kr)과 기상청 날씨누리(www.weather.go.kr)를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 기상청에서 운영 중인 전국 지진관측소에서 관측된 지진동값이 실시간 제공되어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해 집니다.

▣ 지진발생 시 사용자 설정 지점 또는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예상진도 및 지진파 진행상황 등 실효성 있는 정보가 제공됩니다.

- 동심원 형태의 실시간 지진파 진행상황 및 설정 지점까지의 초 단위 지진파 도달 예상시간 제공으로 사전대응 시간 확보

▣ 관심지역 설정을 통해 과거 주요지진 통계정보가 제공되어 규모 3.0이상의 지진발생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기반 사용자 맞춤형 지진정보서비스 실시

- **추진배경** 지진정보 전달시간 단축 및 진도정보 요구 증가에 따라 지진발생 시 지역별 영향도 등 체감 가능한 지진정보 제공 필요
- **주요내용**
  - 지진발생 시 사용자별 지진파 예측 도달시간 정보 제공
  - 전국 예상진도 및 최대예상진도분포도 제공
  - 관심지역별 과거 주요지진에 대한 상세정보 제공
- **시행일** 2019년 12월

규모 2.0 미만 미소지진 대국민 공개 서비스 실시

기상청 지진화산감시과 (☎ 02-2181-0783)

현재 기상청은 규모 2.0 이상의 국내지진에 대해 지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올해 7월부터는 규모 2.0미만 미소지진까지 홈페이지 서비스를 통해 대국민 제공합니다.

▣ 최근 대도시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 규모 2.0 미만 지진에서도 진동을 느끼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 미소지진 결과를 신속히 기상청 홈페이지 지진 목록 메뉴를 통해 대국민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고 기상청 날씨누리(www.kma.go.kr)/지진·화산/국내지진 목록

국민 불안해소를 위한 미소지진정보의 대국민 공개

- **추진배경** 기상청은 규모 2.0 이상의 국내지진에 대해 지진정보를 제공 중이나, 유감 미소지진 및 포항 여진 등 미소지진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 서비스 개선 필요
- **주요내용**
  - 종전 규모 2.0이상 공개했던 국내지진을 규모 2.0미만의 미소지진까지 공개 범위 확대
  - 현업에서 탐지·분석한 미소지진 결과를 홈페이지 지진 목록 메뉴를 통해 대국민 제공
- **시행일** 2019년 7월

http://whatsnew.moef.go.kr

공정거래위원회

담합·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 044-200-4305)

담합 및 보복조치를 당한 피해자는 위반사업자·사업자 단체를 상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다만, 담합 자진신고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피해자의 실 손해액 범위 내에서 다른 담합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공정거래법 집행은 시정조치, 과징금 등 행정적 조치에 집중되어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 구제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됨에 따라,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구제를 강화하면서 위법 행위에 따른 기대 비용을 높여 법 위반 억지력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보도>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8.30.)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추진배경**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구제 강화 및 법 위반 억지력 제고
- **주요내용**
  - 담합,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배상책임 부과
- **시행일** 2019년 9월 19일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 044-200-7752)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 수준이 더욱 더 높아집니다.

- 누구든지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의 취소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 보호받는 신고자의 범위를 국회·법원 증언자, 수사기관 고소·고발자로 확대하였습니다.
- 해고 취소 등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 결정을 불이행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부패사건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공공기관에 신고한 사건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 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행위의 신고등과 관련하여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http://whatsnew.moef.go.kr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 02-397-7237)

'라돈침대' 등의 사례로 확인된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19년 7월 시행됩니다.

▣ 기존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등록제도가 적용되었으나,

- 원료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등록제도가 확대되며,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등록이 허용됩니다.

▣ 또한, 소량의 원료물질 사용만으로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신체밀착·착용제품에 원료물질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 방사선작용을 이용할 목적(소위 '음이온'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 및 수입이 금지됩니다.

참고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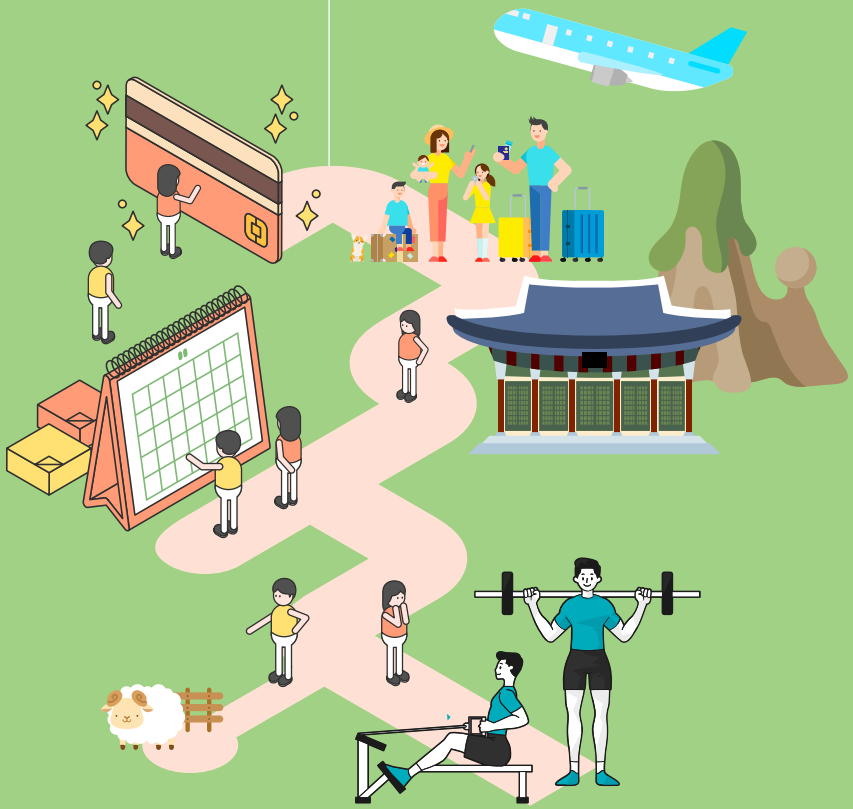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 강화

- **추진배경** '라돈침대' 사례로 확인된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 해소
- **주요내용** ①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 등록제도 실시
  ② 신체밀착·착용제품 및 음이온 목적의 원료물질 사용 금지
- **시행일** 2019년 7월

05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



Infographic

1 문화체육관광부

자세한 내용은 p.99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행

시행일 : 2019년 6월 24일

Before

2019년 6월부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시범 운영합니다.

①신청대상 :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내국인에 한함)

② 대출상품
- 생활안정자금(5백만원 이내) : 결혼자금,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및 기타 긴급한 용도의 생활자금
- 전·월세 주택(창작공간 포함)자금(4천만원 이내) : 전·월세 보증금

③ 신청방법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취급은행 방문 및 온라인 신청(http://www.artloan.kr)

After



2 문화체육관광부

자세한 내용은 p.100

관광안내업 신설

시행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 3개월 후(2019년 4분기 예상)

Before

개별여행 중심으로 변화하는
관광추세에 부응하여
개별여행객 맞춤형 관광안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관광안내업을 신설

합니다.

After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044-203-2715)

금융의 문턱을 낮춰,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한 예술인을 위한 융자제도를 도입합니다.

▣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예술계 특성상, 예술인은 대출요건(창업자금 등)이나 자격요건(자영업자, 근로자 등) 때문에 일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소액생활자금, 주택(창작공간 포함) 전·월세자금 등의 대출 상품으로 2019년 6월부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시범 운영합니다.

참고 http://www.artloan.kr(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누리집)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시행

- **추진배경** 예술인 긴급생활자금 융자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안전망 제공
- **주요내용**
  - ① 신청대상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에 한함)
  - ② 대출상품
    - 생활안정자금(5백만원 이내) : 결혼자금,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및 기타 긴급한 용도의 생활자금
    - 전·월세 주택(창작공간 포함)자금(4천만원 이내) : 전·월세 보증금
  - ③ 신청방법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취급은행 방문 및 온라인 신청(http://www.artloan.kr)
- **시행일** 2019년 6월 24일

관광안내업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 044-203-2840)

개별여행 중심으로 변화하는 관광추세에 부응하여 개별여행객 맞춤형 관광안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관광안내업을 신설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없이 사업장(자택 가능)만 구비하면 되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1,500만원 이상과 사무실을 갖추면 국내를 여행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안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다만, 1영업일을 넘어 관광안내를 제공하거나, 운송시설·숙박시설의 이용 알선 또는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개정내용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 3개월 후부터 적용됩니다.(2019년 4분기 예상)

관광안내업 신설

- **추진배경** 개별여행 중심으로 변화하는 여행환경에 대응하고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 관광안내업 신설
    - 업역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제공 (1영업일을 넘어 관광안내를 제공하거나, 운송시설·숙박시설의 이용 알선 또는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 제외)
  - 등록기준
    - 공통기준 :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갖출 것
    - 개인사업자: 사업장을 갖출 것
    - 법인사업자: 자본금 1,500만원 이상과 사무실을 갖출 것
- **시행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 3개월 후(2019년 4분기 예상)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 044-203-2649)

2019년 7월 1일부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됩니다.

▣ 기존 도서·공연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18.7.1. 시행) 범위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하여,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 공제대상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 공제율 : 30%
- 공제한도 :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포함 100만원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 **추진배경** 국민들의 박물관·미술관 이용 등 문화생활 지원
- **주요내용**
  - 적용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공제대상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 공제율 : 30%
  - 공제한도 :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포함 100만원
- **시행일** 2019년 7월 1일

문화자원의 실감콘텐츠 체험 및 향유권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044-203-2423)

우리나라의 주요 문화자원을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향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실감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일반인들은 쉽게 접하기 힘든 박물관 수장고, 해외 및 북한소재의 주요 문화재를 가상현실 등 첨단 실감 콘텐츠로 제작하고,

▣ 국립중앙박물관 및 지역박물관 등 공공문화시설 내에 체험관을 조성하여 실감콘텐츠의 체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 일반 국민의 문화재 등 주요 문화자원의 체험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화자원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관 조성

- **추진배경** 실감콘텐츠를 통한 문화자원의 향유권 확대
- **주요내용** ① 문화자원 실감콘텐츠 제작(신설 100억원, 약 20개 과제)
  ② 문화자원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신설 40억원, 국립중앙박물관, 지역박물관 내 4개소 조성)
  ※ 조성대상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국립청주박물관 등 4개소
- **체험관 개관** 2019년 하반기(예정)

스포츠강좌이용권·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체육활동 참여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044-203-3130) / 장애인체육과 (☎ 044-203-3179)

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 체육활동을 즐기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만5세~만18세)이 더 많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9년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확대합니다.

▣ 월 8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최소 지원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7개월로 확대하고, 수혜인원 역시 기존 4만명 규모에서 5만명 규모로 1만명 이상 확대합니다.

또한, 건강 유지를 위해 체육활동이 필수적인 장애인을 대상으로(만12세~만23세)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이 신규로 도입됩니다.

▣ 올해 하반기(7월~)부터 만 12세~만 23세 저소득 장애인* 5,1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월 8만원 이내에서 6개월간 시범적으로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차상위계층 / (장애인 여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만 12세~만 23세)

▣ 이를 위해, 전국 동시신청 접수 및 선정(신청접수 6.3~6.14/선정 6.17~6.21)기간을 운영하고, 선정된 수혜자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에서 스포츠 강좌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6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림·수산·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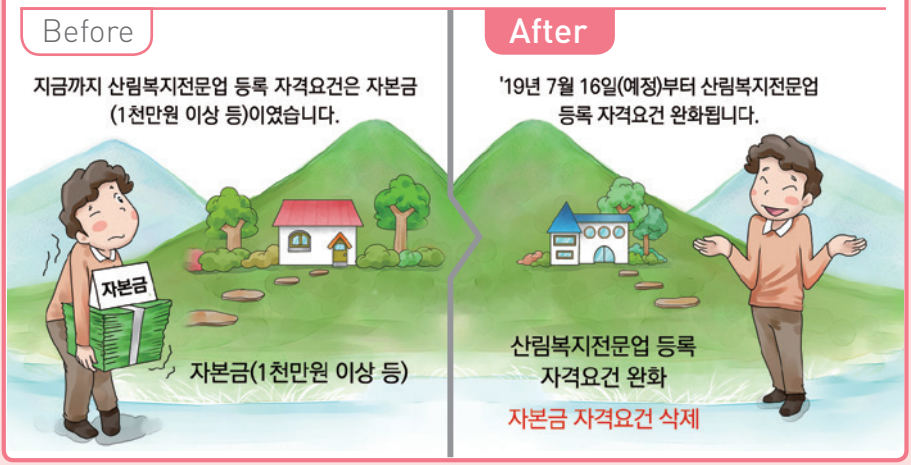
Infographic

1 산림청

자세한 내용은 p.129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자격요건 완화

시행일 : 2019년 7월 16일 예정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36)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임차농업인 보호를 위해 농지임대차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고령농이 부분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차 허용사유를 확대하고, 시설 농업 등의 임대차 기간을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예정입니다.

▣ 또한 임차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마련하여 임차농업인의 임대차 계약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임대차 제도 개선 농지법 개정안 공포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 **추진배경**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임차농업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
- **주요내용** ① 농지 임대차 허용사유 추가(안 제23조 제1항)
  - 60세 이상·5년 이상 자경한 농업인, 농식품부장관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정하는 사업을 위한 임대를 추가

  ② 농지 임대차 기간 연장(안 제24조의2)
  - 다년생식물재배지 등의 경우 임대차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③ 임대차 표준계약서 마련(농지법 시행규칙 서식 신설, '19년 하반기)
- **시행일** 2019년 하반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37)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해당지역 농업인·주민의 소득제고를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일정 수준 이상 염도로 인하여 농업생산성이 낮은 간척농지에 대해 농지 복구를 조건으로 태양광 용도로의 일시사용이 가능하도록 농지법이 개정('18.12월)되었으며,

▣ 일시사용기간(20년), 염도 기준 및 측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마련할 예정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 **추진배경**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도모 및 농가 소득제고를 위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 **주요내용**
  - "염해 간척농지에 설치하는 태양광시설"을 농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
    - 일정 수준 이상 염도로 인하여 농업생산성이 낮은 간척농지에 대해 농지 복구를 조건으로 태양광 용도의 일시사용기간 확대(8년→20년)
- **시행일** 2019년 7월 1일

양곡관리사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 044-201-1820)

국산 쌀의 품질을 높이고 정부비축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양곡에 대한 전문가를 평가·인증하는 양곡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합니다.

▣ 양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확 후 관리, 도정방식 등이 핵심 기술인바, 이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인증하여 쌀 산업 종사자의 역량을 높이고 고품질 쌀의 생산·유통을 촉진하겠습니다.

▣ 또한 새로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자격 취득자도 지속적으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RPC 등에 채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 아울러, 자격증 취득자를 통해 정부양곡의 보관·가공 등을 관리토록 하여 관리를 효율화하고 품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양곡관리사 도입

- **추진배경** 쌀 산업의 품질고급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 **주요내용** ① 양곡관리사 자격증 제도 도입
  ②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③ 양곡관리사를 통한 권역별 정부양곡 관리체계 구축
- **시행일** 2019년 12월(잠정)

http://whatsnew.moef.go.kr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044-201-2079)

외래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입자, 운송업자 등 수입물품 취급자가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붉은불개미 등 규제병해충 발견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붉은불개미의 주요 유입 원인으로 수입 컨테이너가 지목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통관지연,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전량 개장검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따라서, 화주, 운송업자 등 수입물품 취급자가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토록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 2019년 7월부터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입물품 취급자가 신고대상 병해충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법령〉식물방역법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

- **추진배경** 외래병해충에 의한 자연환경 및 국민건강 등의 피해 예방
- **주요내용**
  -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화주, 관세사 등 수입물품 취급자에게 신고의무 부과 및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현행 : 식물의 재배자에 한하여 병해충 피해 식물 또는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
    - 개선 : 식물의 재배자, 수입자·운송업자 등 수입물품 취급자에 대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
- **시행일** 2019년 7월 1일

수입되는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044-201-2079)

외국으로부터 유해한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휴대·우편·탁송 및 이사물품으로 수입되는 묘목, 종자 등 모든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휴대·우편·탁송 및 이사물품으로 일정 수량 이하의 소량으로 수입하는 재식용·번식용 식물의 경우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를 면제하였지만, 외래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규제병해충 검출건수('18년 기준) : 검역증 첨부(199건, 0.7%) 〈 검역증 미첨부(683건, 2.4%)

▣ 참고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EU 등 많은 국가들에서도 재식용 식물의 수송방법, 수입량과 무관하게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자산업 업계의 종자자원 확보 우려 등을 감안하여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수량 이하로 수입하는 재식용 식물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령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법령〉식물방역법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 **추진배경** 외래병해충의 유입 차단
- **주요내용**
  - 휴대·우편·탁송 및 이사물품으로 수입되는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 현행 :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첨부
    - 개선 : 수량에 관계없이 첨부

    ※ 단 소량의 식물 수입 시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첨부 대상에서 제외
- **시행일** 2019년 7월 1일

http://whatsnew.moef.go.kr

농림축산식품부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044-201-2322)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고 한우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등급기준을 보완 · 시행할 계획입니다.

▣ 2019년 12월부터 등급제 보완 방안이 시행되어 도체중량이 크면서 정육률이 우수한 소의 판별력이 강화되며, 가격 · 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근내지방도 기준은 완화*됩니다.

* 1++등급 근내지방도 : (전) No 8, 9 → (후) No 7, 8, 9

– 또한 근내지방도 외 평가항목 기준을 강화하여 품질향상 유도 및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에 부응하고, 소비자 관심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육질 : (전) 근내지방도 중심 → (후) 근내지방도, 지방색, 탄력도, 육색 등 각각 평가

* 육량 : (전) 단일 육량예측산식 → (후) 성별, 품종별 산식 적용(6종류)

▣ 등급제 개편으로 1++등급의 경우 근내지방도를 병행표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지방 함량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축산법 시행규칙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내용

- **추진배경**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생산자 ·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소도체 등급기준 보완
- **주요내용** ① (생산) 1++등급 근내지방도 기준완화와 육색 · 지방색 등 평가기준 강화, 성별, 품종별로 달리하여 육량산식 적용
  ② (소비) 쇠고기 선택에 도움이 되는 소비자 관심정보 제공 강화 및 등급 명칭 보완
- **시행일** 2019년 12월 1일(축산법 시행규칙 '18.12.27. 개정)

말고기 등급기준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044-201-2322)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말고기 유통투명화 및 품질고급화 추진으로 말고기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시행할 계획입니다.

* '제2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에서 말고기의 신뢰 제고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말 등급제도 도입 추진

▣ 소비자는 품질이 좋은 말고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되고 생산자는 적정수준의 가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품질 수준을 구분하는 객관적인 등급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 육질 :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육색 등 평가하여 등급 부여
* 육량 :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도체중량으로 정육량 측정 후 등급 부여

▣ 등급제 기준마련으로 소비자의 육류 식별능력 제고를 통한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 또한 등급제 시행으로 등급거래에 따른 시장정보(가격, 수요, 공급 등)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여 유통체계 기반 조성에 활용될 것입니다.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축산법 시행규칙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

말고기 등급기준 시행 내용

- **추진배경** '제2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에서 말고기의 신뢰 제고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말 등급제도 도입 추진
- **주요내용** ① (생산) 육질(1,2,3등급), 육량(A,B,C등급) 3단계 체계로 변별력 강화
  ② (소비) 품질을 식별하여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구매지표 설정
- **시행일** 2019년 7월 1일(축산법 시행규칙 '18.12.27. 개정)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의 기준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044-201-2326)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에 허가를 받은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 농장의 사육시설 및 방역시설 기준이 강화됩니다.

▣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종계업, 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 하는 자는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하여야 합니다.

▣ 종계장 및 종오리장의 경우에는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하여야 합니다.

- 다만, 농장의 구조 상 출입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출입로와 차량, 운반용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종계업, 종오리업, 부화업 및 닭·오리 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장은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45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어야 함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축산법 시행령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의 기준 강화

- **추진배경**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
- **주요내용** ① 종계업, 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 하는 경우,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할 것
  ② 종계·종오리장은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할 것
  ③ 닭·오리 농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것
- **시행일** 기존농가 2019년 9월 1일 적용(신규농가는 '18.9.1. 기시행)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시 표시 의무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044-201-2359)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원료로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 사료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하여 사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경우 포장재와 용기에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료검정인정기관을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료관리법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시 표시 의무

- **추진배경**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지정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내용** ①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표시규정 신설
  ② 사료검정인정기관을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명칭변경하고 지정·취소에 대한 근거 명확화
- **시행일** 2019년 7월 1일

http://whatsnew.moef.go.kr

농림축산식품부

살처분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안정비용 지급기준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044-201-2542)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안정비용* 지원 기준이 축산농가의 가계지출 비용을 고려하여 전국농가평균가계비에서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로 변경('19.7.1일)됩니다.

* 생계안정비용 지원: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는 일정기간 입식이 제한되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생계안정을 위한 가계비를 지원하는 제도

▣ 현행 생계안정비용은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농가평균가계비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축산농가의 평균 가계비로 기준을 변경하여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농가의 생계안정 지원이 강화됩니다.

* '17년 통계청 자료 기준: (현행) 월별 2,553천원 → (변경) 3,125천원(증 572천원)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현행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비용 지원액 상향

- **추진배경**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안정비용 지원 기준을 축산농가의 가계지출 비용을 고려하여 변경
- **주요내용**
  - 생계안정비용 지원 기준을 전국농가평균가계비에서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로 변경하여 농가 생계안정 지원 강화('17년 통계청 자료 기준: 월 2,553천원 → 3,125천원)
- **시행일** 2019년 7월 1일

살처분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044-201-2542)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와 종사자, 현장에 동원된 인력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안내 및 지원이 강화('19.7.16일)됩니다.

▣ 시군구에서는 살처분 참여자에게 치료지원 내용, 신청절차 및 방법, 지정 의료기관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내(작업후 15일 이내)하여야 합니다.

* 지정 의료기관(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적절한 상담·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대상자는 시군구에 신청)

▣ 또한, 언제든지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심리적 치료 신청 및 추가적인 치료 제한기간*(6개월 이내)을 폐지하고, 추가적인 전문치료에 대한 개인부담을 없애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개선합니다.

* 현행 치료신청은 작업후 6개월 이내, 추가적인 치료는 최초상담 후 6개월 이내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현행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

살처분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

- **추진배경**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와 종사자, 현장에 동원된 인력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안내 및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살처분 참여자에게 작업후 15일 이내 치료지원 내용, 신청절차 및 방법, 지정 의료기관 등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
  - 심리적 치료 신청 및 추가적인 치료 제한기간(6개월 이내) 폐지
  - 추가적인 전문치료 시 자부담(50%)을 없애고 전액 국가가 부담
- **시행일** 2019년 7월 16일

http://whatsnew.moef.go.kr

농림축산식품부

살처분 보상금 계약사육농가 지급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044-201-2542)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시행('19.7.1일)으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가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토록 한 것은 계열화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계약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을 보호하고,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현행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

살처분 보상금 계약사육농가 지급

- **추진배경** 가축의 소유자인 계열화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계약사육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 보호 및 정당한 보상 도모
- **주요내용**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사육경비 수급권의 보호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
- **시행일** 2019년 7월 1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 044-201-2553)

축산농가의 해충방제를 농가 자체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살충제 등 농약·동물약품의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고 방제 효율성도 저하되어, 전문업체를 활용한 해충 방제 활동의 효율화·전문화를 위해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제도가 도입됩니다.

▣ 동 업종은 신고업종으로 관리하고, 일정규모 이상 산란계 농가와 살충제 사용 위반 산란계 농가 등은 전문업체를 통해 해충 방제를 실시토록 의무화됩니다.

- 살충제 사용 위반농가의 경우 '19.7.1일부터 의무화가 적용되며, 일정규모 이상 농가의 경우 산란계 10만수 이상 사육농가는 '21년부터, 5만 이상 10만 미만 사육농가는 '23년부터 의무화 적용 예정입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시설·인력·장비 기준, 소독·방제 기준, 교육과정, 의무적 이용대상자 등의 사항은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현행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 **추진배경** 축산농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해충방제가 약품 오남용 문제 등이 있어, 전문업체를 활용하여 효율화·전문화가 이루어지도록 개선
- **주요내용**
  - 업종의 영업신고, 방제기준, 인력·장비 기준, 영업자 교육관련 사항
  - 해당업종의 의무적 이용 대상자
- **시행일** 2019년 7월 1일

닭·오리 농장 및 부화장 CCTV 설치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 044-201-2555)

닭·오리 농장과 부화장을 대상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이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개정('18.12.31)안에 따른 것으로 CCTV 영상기록물을 이용한 가금상태 관찰을 통해 AI 등 가축전염별 발생 시 농가와 계열사의 조기 신고를 유도하고 역학조사를 통한 차단조치 등 신속한 방역조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현행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

가금(닭·오리) 사육농장 및 부화장 CCTV 설치 의무화

- **추진배경** 가금 관찰과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한 CCTV 의무화 규정 시행
- **주요내용**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 2의4 제4호 다목
    - 닭·오리 사육농장 및 부화장의 출입구 및 농장 내 각 동별 출입구에는 내부촬영이 가능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관리해야 하며, 영상기록은 촬영일부터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시행일** 가축전염병예방법: 2019년 7월 1일

가공품 원산지 표시기준 개선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구분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 044-201-2277)

원산지 표시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기준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을 개선합니다.

▣ 농산물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한 가공식품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닌 원료이거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원료명 표시 생략을 허용하는 경우 가공식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기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인 양고기를 양고기와 염소고기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음식점에서의 양고기와 염소고기의 구분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공고·공지

가공품 원산지 표시기준 개선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구분

- **추진배경**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음식점에서 식육의 축종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 **주요내용** ①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조정(시행령 제3조제3항 단서조항 신설)
  - 농수산물을 제품명으로 사용한 가공식품 중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닌 원료를 사용하거나, 식품표시법에서 원료명 표시 생략을 허용한 경우 원산지표시 생략이 가능하도록 허용

  ②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구분(시행령 제3조5항 5의2 신설)
  -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 대상 중 양고기에서 염소고기를 구분하여 표시
- **시행일** 2019년 7월 1일(잠정, 개정안 심의중)

도매시장 경매사 의무교육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044-201-2221)

2019년 7월 1일부터 도매시장 경매사는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2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농산물 경매사 의무교육"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유통교육원, 연간 9회실시)

- 경매사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 안에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매사는 2019년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현재 임명되어 근무 중인 모든 경매사는 모든 교육 대상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참고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도매시장 경매사 의무교육제도 도입

- **추진배경** 도매시장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경매사 역량 제고를 위해 의무교육 도입
- **주요내용** ① 경매사 교육이수 의무화(법 제75조 일부 조문 신설)
  -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2년마다 의무적으로 교육훈련 이수

  ②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벌칙 부과(법 제90조 일부 조문 신설)
  - 의무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매사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1회 미 이수시) 25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
- **시행일** 2019년 7월 1일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도입 등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44-201-2436~7)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낮아진 친환경인증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친환경 인증제도가 개선됩니다.

▣ 첫째, '2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는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수해야 하며, '19년 7월 1일부터 사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신규 3시간, 갱신 2시간, (교육기관) 농관원, 지자체 등

▣ 둘째, 인증심사원의 자질을 높이고 무분별한 재취업을 차단하고자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중 인증심사 경력으로 자격을 부여하던 기준을 폐지하는 등 친환경 인증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됩니다.

* 친환경축산물인증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자격기준에 "수의사" 자격을 추가

▣ 그 외, 친환경 인증사업자가 인증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신규로 포장재 등을 새로 제작해야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표시 항목에서 "인증기관명"이 제외됩니다.

–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포장재(표시)는 '21.12.31.까지 병행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도입 등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 **추진배경**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후속조치
- **주요내용** ①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의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교육 이수 의무화
  ②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개선
  ③ 친환경인증 표시항목 간소화("인증기관명" 제외) 등
- **시행일** '19년 7월 1일
  단, 친환경인증제도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20.1.1, 사전교육은 '19.7.1.부터)

http://whatsnew.moef.go.kr

농림축산식품부

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 044-201-1895)

농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판매 및 구매 정보를 기록·관리하고자 하는 농약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현재 독성이 높은 농약 등 10종의 농약에 대해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농약(50㎖ 이하 소포장 농약 제외)에 대해 판매 정보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 농약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등은 농약을 판매할 때 이름·주소·연락처 등의 구매자 정보와 농약의 품목명·포장단위·판매일자·판매량·사용농작물명 등의 정보를 기록 및 보존해야 합니다.

- 아울러, 농약 판매상의 부담 완화를 위해 '19년말까지는 수기 기록과 전자적 기록을 모두 허용하지만, '20년부터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 및 보존해야 합니다.

참고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농약관리법('19.7.1, 시행 예정)

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 **추진배경** PLS 제도 연착륙 등 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록관리 체계 개선
- **주요내용** ① 모든 농약(50㎖ 이하 소포장 농약 제외)에 대해 판매기록을 전자적으로 기록 및 보존하도록 하는 농약의 범위가 확대
  ② 농촌진흥청은 농약 판매정보와 농약업 관리, 농약 등의 안전사용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20년부터 구축·운영
- **시행일** 2019년 7월 1일(예정)

곤충업 신고제도 합리화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 044-201-2472)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및 시행('19. 7. 1)으로 곤충 업(곤충 생산업, 가공업, 유통업) 신고 시 시군에서는 5일이내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신고인게 통지하도록 변경됩니다.

▣ 만약, 시군에서 5일이내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해당 처리일(5일)이 끝난 날 다음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곤충 업 신고 제도의 합리화

- **추진배경** 신고 후 수리까지 처리지연 등을 방지하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여 국민의 민원처리 완료 시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곤충 업(생산업, 가공업, 유통업) 신고시 5일이내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5일이내 미통지시, 해당 처리일이 끝난 날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 **시행일** 2019년 7월 1일

http://whatsnew.moef.go.kr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입수 제한 완화 및 시설사업 시행자격 확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 044-200-5253)

폐장기간 해수욕장에서 자유롭게 바다에 들어 갈 수 있고, 해수욕장 시설사업 시행자격을 일정 조건을 갖춘 민간까지 확대 합니다.

▣ 강, 계곡, 해변과 달리 해수욕장은 개장기간 중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만 입수가 가능했지만, 입수제한 시기를 개장기간으로만 한정하여 폐장기간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일반관광지처럼 원칙적으로 해수욕장의 자유로운 이용을 가능토록 하되, 개장기간에만 안전관리를 위해 입수가능 시간과 장소를 준수토록 함

▣ 공공기업, 공기업 외에 민간자본이나 해수욕장 어촌계에서도 해수욕장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됩니다.

- 샤워실, 탈의실 등 기본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중·소형 해수욕장의 이용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시설사업 시행으로 소득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행법상으로는 공공기관, 공기업 등으로 시설사업 시행자격이 제한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수욕장 입수 제한 완화 및 시설사업 시행자격 확대

- **추진배경** 해수욕장 이용제한 규제완화와 중소형 해수욕장 이용환경 개선으로 사계절 해수욕장 이용확대
- **주요내용**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해수욕장 입수제한 완화 : 개장기간 지정 시간 및 장소만 입수가능 → 폐장기간 자유로운 입수 허용
  - 시설사업 시행자격 확대 : 공공기관 및 공기업 → 시행령상 일정조건을 갖춘 민간
- **시행일** 2019년 7월 1일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새 이름, ‘해양보호생물’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 044-200-5315)

2019년 7월 1일부터 ‘보호대상해양생물’이 ‘해양보호생물’로 명칭이 바뀝니다.

▣ ‘해양보호생물’은 ‘보호대상해양생물’이 단어 길이가 길고 국민들이 쉽게 기억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호대상해양생물 명칭 공모전’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명칭입니다.

▣ ‘해양보호생물’은 보호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종으로 남방큰돌고래, 점박이물범 등 80종이 지정*되어 있으며, 불법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할 경우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3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알기쉬운 용어로 명칭 변경(‘보호대상해양생물’→‘해양보호생물’)

- **추진배경**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인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알기 쉬운 용어인 ‘해양보호생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해양보호생물’의 보전·관리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 **주요내용**
  - 명칭 변경
    - 보호대상해양생물 → 해양보호생물
- **시행일** 2019년 7월 1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확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 044-200-5315)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하여 우리 바다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양생태계를 개선하겠습니다.

▣ 지금까지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대규모 골재채취(50만㎥ 이상)에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되고 있어, 해양생태계 훼손이 큰 준설·투기·해양자원 개발사업 등은 부과대상이 아니었습니다.

▣ 또한, 시·도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도 바다에서이루어지는 해양수산사업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육상부 사업에는 환경부가 부과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적용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하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을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전체와 시·도 조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확대합니다.

– 해양에서의 난개발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을 막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확대

- **추진배경** 해양 난개발 방지 및 해양생태계 개선
- **주요내용**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을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전체와 시·도 조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확대
- **시행일** 2019년 7월 1일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자격요건 완화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 042-481-1839)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진입장벽 해소 등을 위해 앞으로는 자본금 확보 조건이 삭제됩니다.

▣ 지금까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치유업,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숲길등산지도업, 종합산림복지업에 따라 1천만원 이상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자본금 조건이 삭제됩니다.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신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www.fowi.or.kr) 홈페이지 또는 우편접수(대전광역시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209호 한국산림복지진흥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령〉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자격요건 완화

- **추진배경** 청년 등 창업자들의 진입장벽 해소
- **주요내용**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자격요건 완화
  - 사업유형별 1천만원 이상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확보 조건 삭제
- **시행일** 2019년 7월 16일 예정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서식 개정 추진 중

방제계획서·완료서 작성자 완화 및 검인제도 폐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042-481-4068)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전용 시 산림기술사, 엔지니어링사업자, 산림조합중앙회가 작성한 재선충병방제계획서·완료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 소나무류가 50본 미만이거나 면적이 660m 미만인 경우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하도록 작성주체가 완화됩니다.

또한, 검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는 것으로 일원화됩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산림청소개〉달라지는 주요산림정책

방제계획서·완료서 작성자 완화 및 검인제도 폐지

- **추진배경** 소규모 산지전용 시 산주 불편 해소 및 소나무류 이력관리 효율화
- **주요내용**
  - 반출금지구역 산지전용 시 소나무류 50본 미만 또는 면적 660m 미만인 경우 방제계획서·완료서 작성자를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로 완화
  - 소나무류 생산확인 시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일원화(검인제도 폐지)
- **시행일** 2019년 7월 16일(개정안 법제처 심사중)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

산림청 백두대간보전팀 (☎ 042-481-88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8에 의거 산림복원 사업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제도가 의무화됩니다.

▣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산림복원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대상지에 대하여는 사업 종료 후 10년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산림복원지의 기반환경의 변화, 생물다양성의 증감 여부, 복원 목표 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합니다.

▣ 모니터링 결과 산림복원의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업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개정 내용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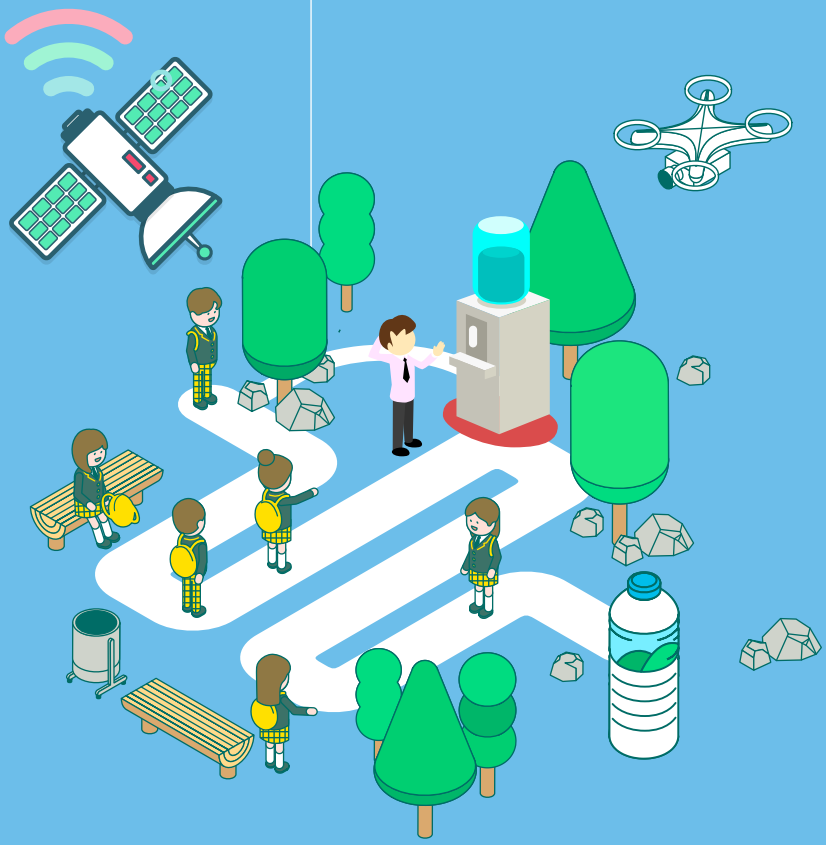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최근재개정명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번호 제16198호)

정부입법지원센터〉입법예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일부개정령(안)

07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환경·기상



Infographic

1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137

정수기 관리 기준 강화

시행일 : 2019년 6월 25일

Before



지금까지는
정수기능을 가진 기구만
정수기로 규정,
관리하였습니다.

After

'19년 6월(잠정) 먹는물 안전성을 높이기위해
정수기 관리 기준이 강화됩니다.



정수기 **심의절차 강화**

품질검사에 **'위생 · 청결 매뉴얼 적합성 심사' 추가**

2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138

먹는샘물 주표시면에 품목명(먹는샘물) 표시

시행일 : 2019년 10월 1일

Before

지금까지 먹는샘물의 품목명 표시가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기타·혼합음료와의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After

'19년 10월 1일부터 먹는샘물 제품 주표시면(라벨)에
품목명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3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139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시행일 : 2019년 하반기 시행 예정

Before

지금까지 경유 철도차량이 준수해야 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없었습니다.



After

'19년 하반기 경유 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기상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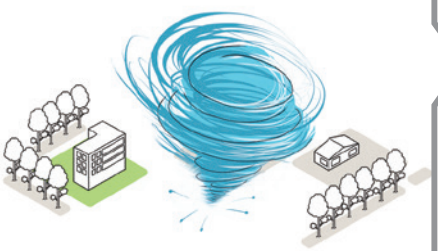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146

국민체감형 여름철 기상정보 제공(태풍정보 개선)

시행일 : 2019년 5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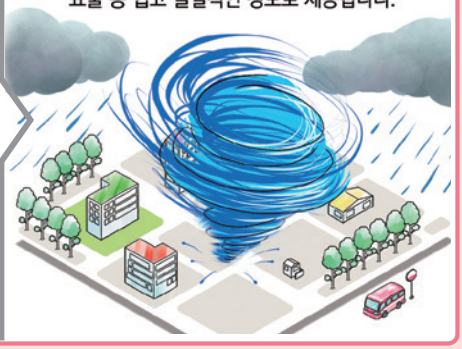
Before

지금까지 태풍정보는 태풍진로 구간 시간 간격이 길고 정보가 상세하지 못했습니다.



After

'19년부터 태풍정보는 진로 구간 상세화, 위험영역 표출 등 쉽고 실질적인 정보로 제공됩니다.



Infographic

5 기상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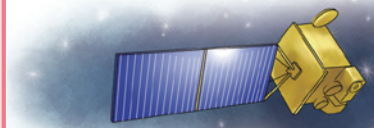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147

천리안위성 2A호 정규서비스 실시

시행일 : 2019년 7월

Before

'10년 6월 천리안위성 1호 발사로
세계 7번째 기상위성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 천리안위성 1호 기상관측
해상도 : 가시(1㎞)/적외(4㎞)
관측주기 : 한반도 15분
서비스영상 : 16종 산출물
흑백영상

After

'19년 7월 세계 3번째 차세대 기상위성
천리안위성 2A호의 정식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천리안위성 2A호 기상관측
해상도 : 가시(0.5, 1㎞)/적외(2㎞)
관측주기 : 한반도 2분
서비스영상 : 52종 산출물 컬러영상

정수기 관리 기준 강화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 044-201-7113)

먹는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수기 관리강화를 추진합니다.

▣ 기존 정수기능을 가진 기구뿐만 아니라 정수기능과 연결된 냉·온수, 탄산수, 얼음 및 커피 제조장치도 정수기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정수기 관리 기준에 식품류 제조를 위한 정수기 부가 결합장치 항목이 추가됩니다.

▣ 또한 물과 접촉하는 부분은 부식 발생이 없고 온도변화와 적절한 사용에도 벗겨지지 않는 도금 또는 보호코팅 사용 기준을 추가하여 재질에 대한 안전성도 강화됩니다.

▣ 정수기 심의절차가 사전심의·종합심의로 분리, 사전심의를 통과한 제품에 한해 종합심의를 실시합니다.

▣ 개정내용은 6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정수기 관리기준 강화

- **추진배경** 먹는물 안전성 제고
- **주요내용**
  - 정수기 부가 결합장치(얼음 제조등)에 대한 품질검사 추가
  - 정수기 심의절차 강화(사전심의·종합심의)
  - 품질검사 항목에 '위생·청결매뉴얼 적합성 검사' 추가
- **시행일** 2019년 6월 25일

먹는샘물 주표시면에 품목명(먹는샘물) 표시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 044-201-7118)

먹는샘물과 탄산수·혼합음료의 구분이 쉬워집니다.

▣ '14년 병마개 품목명 표시 강제조항이 삭제되어, 먹는샘물과 비슷한 일부 기타·혼합음료와 먹는샘물을 구분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앞으로 먹는샘물 제품 주표시면(라벨)에 품목명(먹는샘물)을 가장 큰 활자크기의 1/20이상 크기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품목명은 병뚜껑에도 표기할 수 있음(권장)

- 개정내용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 시행

- **추진배경** '14년 '샘물 증명표지제도'가 폐지되어 병마개 품목명 표시 강제조항이 없어짐에 따라 일부 기타·혼합음료와의 직관적인 구분이 어려워 소비자들의 혼란 야기
- **주요내용** 먹는샘물 제품 주표시면(라벨)에 품목명(먹는샘물)을 의무 표기
- **시행일** 2019년 10월 1일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환경부 교통환경과 (☎ 044-201-6926)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됩니다.

▣ 경유철도차량은 전기철도가 다닐 수 없는 비전철(電鐵) 구간에서 여객 및 화물운송을 담당 중이며, '19.1월 기준으로 국내에 총 348대가 운행 중입니다.

- 경유철도차량은 1대 당 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경유차의 약 850배에 달함에도, 건설기계·선박 등과 달리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 그러나 향후 국내에 신규 도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신규 기준을 적용할 경우, 1대 당 연간 1,200kg 상당(경유차 300대 분)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 **추진배경** 수송분야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 해소
- **주요내용** ①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3.5g/kWh 이하	7.4g/kWh 이하	0.4g/kWh 이하	0.2g/kWh 이하	NRSC 모드

② 신규 도입되는 경유철도 1대당 연간 1,200kg 상당 (경유차 300대분)의 미세먼지 저감 기대

- **시행일** '19년 하반기 시행 예정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관리대상 확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044-201-7004)

아파트단지 내 바닥분수 등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2019년 10월 17일부터 신고·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금까지는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에서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만 신고의무와 수질·관리기준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 2019년 10월 17일부터는 ①공동주택, ②대규모점포 등에 설치·운영하는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도 신고의무와 수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최근 제·개정법령〉물환경보전법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관리 대상 확대

- **추진배경** 깨끗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을 위해 신고·관리대상 확대
- **주요내용** ①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등에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신고·관리 대상에 추가

  ※ 현행 신고·관리대상 시설 : ①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②민간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관광지 및 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② 신고·관리대상 시설은 설치·운영 신고와 수질·관리기준 등을 준수해야 함
  - pH(5.8~8.6), 탁도(4NTU 이하), 대장균(200개체수/100mL 미만), 유리잔류염소(0.4~4.0㎎/L), 수질검사(1회/15일)
  - 수심 30㎝ 이하 유지, 부유물·침전물 제거 및 저류조 청소, 용수 여과 및 소독,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카드 작성·보관 등

  ③ 시설 설치·운영 미신고, 수질·관리기준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시행일** 2019년 10월 17일(기존 시설의 경우 6개월 유예)

위·수탁 폐수의 전자 인계·인수 관리

환경부 수질관리과 (☎ 044-201-7061)

사업장에서 위탁처리하는 폐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9년 10월 17일부터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인계·인수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합니다.

▣ 지금까지는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간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종이로 된 폐수 위·수탁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019년 10월 17일부터는 폐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 인계·인수시스템이 도입되고, 폐수 위·수탁자는 폐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인계·인수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물환경보전법

위·수탁 폐수의 전자인계·인수 관리

- **추진배경** 위탁처리 폐수의 효율적 관리
- **주요내용**
  - 환경부장관은 위·수탁 폐수의 전자적 관리를 위한 전자인계·인수시스템 구축·운영
  -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인계·인수시스템에 입력·관리
  - 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할 경우 영업정지(6개월 이내) 및 과태료 부과(100만원 이하)
- **시행일** 2019년 10월 17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본격 운영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 (☎ 044-201-7644)

물기술 발전과 물산업진흥을 위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19년 7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합니다.

▣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연구개발, 성능검증, 사업화, 해외진출에 이르는 물산업 전주기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물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또한, 물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취업연계 및 현장기반 실습·이론 병행 교육으로 혁신형 물기술 인력 확보를 가능하게 하여, 물산업 인재 육성을 통한 신기술 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초기 활성화 정책(사용료 할인 등)과 중·소규모 물기업 각종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홈페이지(http://www.watercluster.or.kr)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개요

• 목적	R&D에서 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으로 국내 물 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사업위치	대구 국가산업단지 부지내(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 면적 및 사업비	부지 145천㎡(4.4만평), 총사업비 2,409억원(국비)
• 주요시설	실증플랜트, 물융합연구센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워터캠퍼스
• 운영기관	한국환경공단

민원 발생 공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에 포함

환경부 대기관리과 (☎ 044-201-6904)

연면적 1,000㎡ 이상인 대수선공사와 공사면적 1,000㎡ 이상이면서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는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를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포함합니다.

▣ 대수선공사,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공사는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함에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당 사업을 기초 지자체(시·군·구청장)에 신고하도록 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포함·관리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 해소 및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민원 발생 공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에 포함

- **추진배경**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대수선공사,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공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에서 제외되어 인근 지역주민 민원 발생
- **주요내용** ① 연면적 1,000㎡ 이상인 대수선공사, 공사면적 1,000㎡ 이상이면서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는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에 포함
  ② 기초 지자체(시·군·구청장)에 신고를 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 관리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시행일** 2019년 하반기(현재 법제 심사 중)

외래종 안전관리 강화(유입주의 생물 지정제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044-201-7247)

생태계 위해(危害)가 우려되는 외래생물 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할 계획입니다.

▣ 기존 '위해우려종'과 '생태계교란 생물'로 구분했던 외래생물 관리기준을 개선하여, 위해가 의심되는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하여 수입·반입시 위해성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 됩니다.

- 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고, 위해성이 없거나 미미할 경우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생태계교란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생태계 방출·방생·유기·이식 행위가 금지되고, 학술연구 목적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등 허가 요건이 강화됩니다.

※ 기존에는 전시·교육용, 식용 목적으로도 허가 시 자연생태계 방출 가능

▣ 위해 외래생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유입주의 관리생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래종 안전관리 강화

- **추진배경** 외래생물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생태계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
- **주요내용** ① 유입주의 생물 지정·고시
  ②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시 위해성평가 의무화(최초 수입시 1회)
  ③ 외래생물(생태계교란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생물)의 생태계 유출관리 강화
  *방출·방생·유기·이식행위 금지(학술연구 목적에 한하여 허용]
- **시행일** 2019년 10월 17일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시행

환경부 화학안전과 (☎ 044-201-6847)

벤젠, 디클로로메탄 등 고독성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가 시행되어, 국민의 건강권이 한층 강하게 보장됩니다.

▣ 올해 11월부터, 고독성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해당 물질의 배출 총량을 줄이기 위한 저감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업에서 제출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공개될 예정이며,
- 국민께서는 지역의 배출저감 실적과 향후 저감계획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획서 공개, 배출현황 점검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지역 사회가 주체가 되어 배출저감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화학안전에 대한 지역의 관심 및 역량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시행

- **추진배경** 고독성 화학물질의 배출량 증가로 국민 건강 우려
- **주요내용**
  - 기업은 고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배출저감계획을 수립·제출
    ※ 대상 물질은 순차적으로 확대 추진
  - 배출저감계획은 환경부 검토 후,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대국민 공개
  -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배출저감 이행 현황을 점검
- **시행일** 2019년 11월 29일

국민체감형 여름철 기상정보 제공(태풍정보 개선)

기상청 국가태풍센터 (☎ 070-7850-6355)

2019년 여름부터 여름철 대표적 자연재난인 태풍에 의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상청에서 다양한 태풍 정보를 제공합니다.

▣ 곡선화된 태풍진로를 이용하여 특정지역(예: 서울)에서 예상되는 태풍의 최근접시간·거리·강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 태풍이 육상에 상륙하여 태풍 강풍영역의 이상구조가 나타날 경우, 관측자료에 기반한 실제 강풍 영역을 태풍정보에 표출합니다.

▣ 태풍진로의 불확실 정도가 고려된 태풍의 강풍 위험영역 정보를 제공합니다.

▣ 48시간 내 구간에서 기존 24시간 간격으로 제공하던 태풍 예상 진로를 12시간 간격으로 상세히 발표합니다.

참고 기상청 날씨누리(www.weather.go.kr)〉태풍 및 특보·예보

국민 체감형 여름철 기상정보 제공

- **추진배경** 태풍피해 최소화를 위한 태풍 정보 콘텐츠 강화
- **주요내용**
  - 태풍 예보구간(48시간 내 구간) 상세화(24시간 간격 → 12시간 간격)
  - 이상구조 발생 시 태풍의 실제 강풍영역 및 태풍의 강풍 위험영역 표출
  - 태풍 곡선진로에 기반한 지역별 태풍 최근접 예상 정보 제공
- **시행일** 2019년 5월 31일 부터

천리안위성 2A호 정규서비스 실시

기상청 위성기획과 (☎ 043-717-0209)

천리안위성 2A호로 관측한 천연색 컬러영상 등 고품질 위성자료를 통해 기상위성 자료의 활용성이 강화 됩니다.

▣ 시·공간적 고해상도 컬러영상을 통해 위험기상 실시간 감시능력 강화와 향상된 초단기 예보지원이 가능해 집니다.

– 국지성 집중호우의 발달도 빠르게 관측 가능하며, 태풍의 이동경로 추적도 향상됩니다.

▣ 고해상도 컬러영상에서는 육안으로 '구름'과 '산불연기·황사'의 구분이 가능해져 기존보다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 기상분야 외에도 토양수분, 가뭄, 홍수 등에 대한 분석정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고 국가기상위성센터 홈페이지>천리안위성 2A호 소개 배너

천리안위성 2A호 정규서비스 실시

- **추진배경** 천리안위성 1호 임무연속성 확보
- **주요내용**

	천리안위성 1호	천리안위성 2A호
관측주기	한반도 15분	한반도 2분
서비스영상	16종 산출물, 흑백영상	52종 산출물, 컬러영상
공간해상도	가시(1㎞)/적외(4㎞)	가시(0.5, 1㎞)/적외(2㎞)

- **시행일** 2019년 7월

사용자 위치기반 위험기상 사전알림 서비스 실시

기상청 레이더분석과 (☎ 02-2181-0863)

예측 선행시간이 짧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호우, 눈, 낙뢰 등 위험기상에 대해 '우리 동네 레이더 날씨 알리미' 모바일앱을 활용한 사전알림을 2019년 7월부터 제공합니다.

- '우리 동네 레이더 날씨 알리미' 앱은 국민 누구나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애플)에서 내려 받아 사용 가능

▣ 기존에는 사용자가 직접 위험기상 현재 정보를 확인해야 하였으나, 개선 후에는 모바일앱 사용자 위치를 자동 파악하여 위험기상 현재 정보와 예측정보를 동시에 사전알림으로 전달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이 대폭 개선됩니다.

▣ 사전 알림 서비스는 사용자 위치 또는 관심지점으로 설정할 수 있고, 10분마다 최대 2시간까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용자 위치기반 위험기상 사전알림 서비스 실시

- **추진배경** 급속히 발달하여 다가오는 위험기상의 영향을 받을 국민들께 신속히 정보를 전달하여,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 필요
- **주요내용**
  - 모바일앱을 이용한 실시간 위험기상 알림 서비스 실시
    - 레이더 관측자료를 사용하는 '우리 동네 레이더 날씨 알리미' 앱 활용
    - 사용자의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하여 현재 정보와 예측 정보를 동시에 사전 알림
    - 사용자 위치 또는 관심지점을 중심으로 10분마다 최대 2시간 정보 제공
- **시행일** 2019년 7월

사용자 중심으로 날씨 홈페이지 통합 새단장

기상청 정보통신기술과 (☎ 02-2181-0410)

날씨전용 누리집인 날씨누리(www.weather.go.kr)가 스마트폰이나 PC에 관계없이 접속하는 기기에 적합한 날씨 홈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PC용 날씨 홈페이지와 경량화된 날씨정보로 구성한 모바일 웹을 별도로 운영하였지만, 모바일 환경에서도 동일한 날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날씨누리와 모바일 웹을 통합합니다.

▣ 날씨정보를 단순하고 간결하게 구성하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로 개선하여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날씨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참고 기상청 날씨누리, 모바일웹

사용자 중심으로 날씨 홈페이지 통합 새단장

- **추진배경**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날씨정보 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날씨누리와 모바일웹 통합 구축
  - 단순하고 간결한 웹디자인 적용 및 직관적인 날씨정보 구성
  - 날씨 이해를 돕는 콘텐츠 개발 등
- **시행일** 2019년 12월

해양기상 맞춤형 정보 모바일 웹 서비스 실시

기상청 해양기상과 (☎ 02-2181-0743)

레저, 방재, 어업 등 다양한 분야의 해양기상정보 이용자들을 위한 '해양기상 맞춤형 서비스 6대 분야'가 모바일 웹을 통해 제공됩니다.

※6대 분야: 항만, 항로, 레저, 어업, 안보, 해난

▣ 기상청은 해양기상정보포털을 통해 해양기상 맞춤형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모바일을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올해는 6대 서비스 분야별 맞춤형 정보를 해양기상 모바일 웹을 통해 서비스하여 언제 어디서나 수시로 사용자의 목적에 맞는 해양기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사용자 현재 위치와 자주 찾는 지점의 정보를 우선 표출하여 원하는 정보를 최소한의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존 해양기상정보포털도 서비스 지점과 초단기 예보, 해상 예보, 시계열 정보를 추가하는 등 콘텐츠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참고 (해양기상정보포털/PC) merine.kma.go.kr
(해양기상정보포털/모바일) marine.kma.go.kr/m/

해양기상 맞춤형서비스 모바일 웹 내용

- **추진배경** 해양기상정보를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언제, 어디서나,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양기상 모바일 서비스 강화
- **주요내용**
  - 해양기상 맞춤형 서비스 모바일 웹 서비스 실시
    (기존) 항만, 항로 → (추가) 항만, 항로, 레저, 해난, 어업, 안보
  - 사용자 현재 위치기반 모바일 서비스로 자주 쓰는 해양기상정보 우선 표출
- **시행일** 2019년 11월

‘기상자료개방포털’ 사용자 중심 서비스로 전환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 02-2181-0889)

기상청의 공공데이터 제공 플랫폼, 기상자료개방포털이 사용자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구 분	기존 ('18년)	개선 ('19년12월)
제공 자료 종류	128종	150종
공공기관 자료	5개 기관	20개 기관
데이터 포맷	GRIB	GRIB 및 csv, xml, 오픈API

▣ 복잡한 이용 경로, 전문적인 포맷에서 벗어나, 누구나 찾기 쉽고 사용하기 쉽도록 기상자료개방포털이 달라집니다.

- 데이터 일괄 다운로드, 제공 포맷 확대(csv, pdf→엑셀 추가), 찾기 쉬운 메뉴 개편으로 사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 키워드 검색기능 추가, 통계분석자료의 그래픽화로 포털이 더욱 똑똑해집니다.

▣ 시행일: 2019년 12월

참고 (기상자료개방포털) www.data.kma.go.kr

‘기상자료개방포털’ 사용자 중심 서비스로 전환

- **추진배경** 국민의 기상기후데이터 접근성 강화를 위한 기상자료개방포털 개설('15년) 및 지속적 데이터 개방 확대
- **주요내용**
  - 기상 데이터 개방 확대(128종→150종), 유관기관 관측자료 통합 서비스 (5개→20개)
  - 대용량 데이터를 요소별, 시간별, 층별로 경량화하여 오픈API 제공
  - 기상자료개방포털 사용이 쉽고 편리하도록 사용자 편의기능 개선
- **시행일** 2019년 12월

08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Infographic

1 산업통상자원부

자세한 내용은 p.156

국제단위계(SI) 기본단위가 완전체로 재탄생

시행일 : 2019년 5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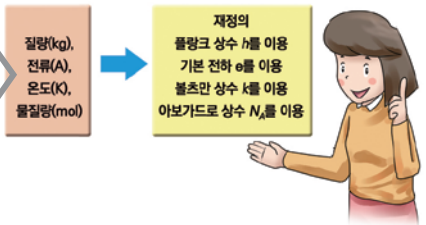
Before

기본단위의 정의가 인공물이나 특정 물질에 기반함에 따라 측정의 기준이 변하는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After

'19년 5월 20일부터 국제단위계(SI) 중 질량, 전류, 온도, 물질량 4개 단위의 정의가 바뀝니다.



* 단위 재정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단위의 크기에 일치하도록 정의하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미래 첨단산업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정밀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

자세한 내용은 p.164

액셀러레이터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방식 도입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Before

2019년 7월 1일부터 액셀러레이터를 대상으로 실리콘밸리의 투자방식인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를 도입합니다.

지분의 공정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에 신속한 투자와 창업보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After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제도 규제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 061-338-4710)

ICT 융·복합화, 5G서비스 상용화 등 IT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생산 방식도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다변화 추세

▣ 이에 전자파 안정성도 제고하고, 신기술 조기 시장 진출 및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적합성평가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 현재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164종에서 전파 혼·간섭 가능성이 낮은 기기 41종을 적합등록으로 완화하여 규제 부담이 줄어듭니다.
- 적합성평가는 완제품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나, 완구 등 일부 완제품은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품(모터 등)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허용하고 이를 사용한 완제품은 시험 생략 등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 수입제품은 전파인증 표시(KC표시)를 통관 전에 부착해야 가능했으나, 개도 개선으로 선 통관 후 부착이 가능해 집니다.
- 고시에서 유형별로 분류된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별표 1,2,3을 기술기준에 따라 별표 1로 통합 재분류함으로써 제조사 등이 적합성평가 적용분야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8월 중 적용됩니다. (5.13~7.12 행정예고)

참고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전자공청회〉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규제 개선

- **추진배경** 기업들의 시험·인증 규제부담 완화 및 대상기기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
- **주요내용**
  - 적합성평가 일부 대상기기 규제수준 완화
  - 인증을 받은 구성품을 사용한 완성제품의 절차 간소화
  - 수입제품의 적합성평가 표시 의무 완화
  - 국민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대상기자재 분류체계 개편
- **시행일** 2019년 8월 중(2019.5.13. 고시 행정예고)

http://whatsnew.moef.go.kr

산업통상자원부

국제단위계(SI) 기본단위가 완전체로 재탄생

산업통상자원부 표준정책과 (☎ 043-870-5347)

국제기본단위(SI) 7개 중에서 질량, 전류, 온도, 물질량 등 4개 기본단위의 정의가 바뀝니다.

▣ 재정의 되는 국제기본단위는 킬로그램(kg, 질량), 암페어(A, 전류), 켈빈(K, 온도), 몰(mol, 물질량)의 4가지 기본단위 입니다.

- 현행 : 기본단위가 실물을 기반으로 하여 변형(질량·kg, 물질의 양·mol)이 생기거나, 특정물질에 의존하여 불안정(온도·K)하며, 애매한 표현의 사용으로 혼란 야기(전류·A)에 오차 발생
- 개정 : 질량(kg), 전류(A), 온도(K), 물질량(mol)을 변하지 않는 상수(플랑크 상수 h, 기본 전하 e, 볼츠만 상수 k, 아보가드로 상수 NA)를 이용하여 재정의

▣ 단, 기존단위의 크기 및 양에 일치시킨 상수를 이용하여 정의함에 따라, 단위의 재정의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서 인지할만한 영향이 없도록 측정 방법만 바뀌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5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9년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개정 보도자료

국제단위계 재 정의된 기본단위를 정의하는 상수

단위 (기호, 명칭)	단위를 정의하는 상수
질량 (kg, 킬로그램)	플랑크 상수 (h = 6.626 070 15 × 10−34 J s)를 이용
전류 (A, 암페어)	기본 전하 (e = 1.602 176 634 × 10−19 C)를 이용
온도 (K, 켈빈)	볼츠만 상수 (k = 1.380 649 × 10−23 J K−1)를 이용
물질의 양 (mol, 몰)	아보가드로 상수 (NA = 6.022 140 76 × 1023 mol−1)를 이용

국가·자자체 등이 발주한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기업 참여 제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 044-203-5156)

중소 전기공사기업의 공공공사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전기공사시장의 양극화와 독점화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가 신설됩니다.

▣ 전기공사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중소 전기공사업자의 시장참여 확대를 위하여 전기공사업법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대기업 기준 설정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과 공기업,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등
-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 설정 : 국가 및 공기업, 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직영기업 등이 발주하는 전기공사 중 10억원(공사예정금액) 미만의 전기공사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예정이지만, 시행일 이전에 공고된 입찰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예산·법령〉입법예고〉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제 2019-305호)

국가·자자체 등이 발주한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기업 참여 제한

- **추진배경**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중소 전기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소규모 전기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전기공사 시장의 양극화 해소 및 전기공사 시장의 건전한 발전기반 구축
- **주요내용**
  -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규정(상호출자제한기업 및 국가·.공공기관 등)
  -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액(10억원)과 하한을 적용하는 대상공사(국가·공기업 등 발주 공사)를 규정
- **시행일** 2019년 7월 9일(잠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http://whatsnew.moef.go.kr

산업통상자원부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상권영향평가 내실화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 044-203-4381)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골목상권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상권영향평가 제도가 강화됩니다.

▣ 종전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범위가 좁고 작성 방법이 모호했던 점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작성 범위 : 종전 1개 업종(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 대규모점포 내에 입점 예정인 주요 업종으로 확대
- 작성 방법 : 정성적·정량적 방법을 병행하여 주변 상권 점포수, 매출액, 고용 등에 대한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구체화

▣ 개정내용은 2019년 9월 30일부터 적용되나, 시행일 이전에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보도자료>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보도자료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상권영향평가 내실화

- **추진배경** 종전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범위가 좁고 작성 기준이 모호하여 부실한 평가서 작성 사례가 다수 있었던 점을 감안, 상권영향평가서를 내실화하여 골목상권 보호 강화 추진
- **주요내용**
  - 작성 범위(업종)를 1개 업종에서 대규모점포내 입점 예정인 주요 업종으로 확대
  - 작성 방법을 정성적·정량적 방법을 병행하도록 구체화하고, 점포수·매출액·고용 등 평가 항목을 세분화하여 제시
- **시행일** 2019년 9월 30일(잠정, 시행규칙 개정령안 법제처 심의중)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관련 자료 공유 및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 044-203-442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내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받은 내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등 보조율 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관련 자료 공유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 **추진배경**
  - 국가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지원하는 총괄적인 내역을 파악할 필요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산업위기로 인한 지방 세수가 줄어들어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지방비 매칭에 부담을 겪는 실정
- **주요내용**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원 내역 제출
    - 산업부는 필요시 제출받은 내역을 지자체에 공유 가능
  - 국고보조금 지원시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가능
- **시행일** 2019년 7월 9일

4차산업 연관 신기술 등 엔지니어링기술 범위 유연화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044-203-4555)

엔지니어링기술의 범위와 종류 등 법적 정의를 유연화하여 신기술 등의 출현에 따른 산업의 수요를 능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4차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엔지니어링 기술의 출현이 예상됨에 따라 현행 기술분야에 탄력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 현행 법령상 엔지니어링사업자는 15개 부문(기계, 선박, 산업 등) 48개 전문분야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 新기술 등을 활용하여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코자 하는 경우, 사업자 및 기술자의 업계 진입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 더불어 새로운 기술이 추가되면 해당 분야의 기술인력 신고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 관련학과, 경력 등의 인정범위 등도 함께 마련 할 계획입니다.

▣ 관련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입니다.

엔지니어링기술의 범위 분류체계 유연화

- **추진배경** 엔지니어링 新기술이 출현하더라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입법방식을 유연화
- **주요내용** 도입이 요구되는 신기술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고시하고, 법령에 반영
- **시행일** 2019년 하반기(5월말 현재 법제처 심사중, 공포 3개월 후 시행)

드론실증도시 기반 드론 활용 실증 및 상용화 추진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 044-201-4315)

'드론 실증도시(Drone Air City, 2개)'를 선정하여 도심지역에서 드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지자체 특성에 맞춰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도심지역 내 실증·활용사례를 제안받아 각 도시별로 실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경기도(화성시) : 도심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 및 야간순찰, 폐기물업체·공사현장 환경 모니터링, 산업단지 대기질 모니터링 등 실증* 추진

  * 참여 : 전자부품연구원, SK텔레콤, 억세스위, 제임스컴퍼니, 두산DMI, 유맥에어, 바이앤

- 제주도(영어교육도시 및 올레길) : 안심서비스, 해양환경 모니터링, 월동작물·소나무재선충 모니터링 등 실증* 추진

  * 참여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유콘시스템, 이노팸, 한국항공대학교, 유시스, 올포랜드, 제이에스아이시스템

참고 국토교통부홈페이지〉국토교통 뉴스〉보도자료〉경기 화성·제주, 드론 실증도시로…7월부터 본격 운용시작

드론 실증도시 운영방안

- **경기도** 드론으로 사람과 산업을 숨쉬게 하는 첨단도시 조성(사업비 1,066백만원)
  - 대상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산업단지, 향남2지구 상업·주거지역
  - 주요내용 : 도심 내 불법주정차 계도, 폐기물·공사현장·대기질 현장 모니터링

- **제주도** 스마트 드론 기반 제주 환경·안전 모니터링 체계 실증(사업비1,069백만원)
  - 대상 : 제주도 해안선, 올레길, 제주영어교육도시, 구좌읍, 성산읍
  - 주요내용 : 하굿길 안심서비스, 범죄예방순찰, 해양환경·월동동작물/재선충 모니터링

※ 협약체결(5.29~6.7)→시범 테스트(6.8~)→도심 내 운영(7월~11월)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 044-201-4315)

2019년에는 드론을 4단계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기체신고·비행승인·안전성인증·조종자격 제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현재 드론의 무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안전관리 제도*를 위험도(최대이륙중량·속도·장착장비) 기준으로 개편합니다.

* 사업용 혹은 비사업용 자체중량 12kg 초과시 기체신고, 자체중량 12kg 초과 사업용 드론 조종자격 필요,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시 비행승인·안전성 인증

【 4단계 드론 분류기준 개선안(잠정) 】

분류	정의(무게는 최대이륙중량 기준)
모형비행장치	①자체중량 250g 이하 ②법령에서 정하는 장비* 미 탑재 ③일정 운용요건** 준수하는 기체 * 촬영용 카메라, 시각보조장치(FPV), 기타물품 탑재 등(외부 장착물이 전혀 없는 상태) **최대 비행고도 20m 이하, 비행거리 50m 이하, 사람위로의 비행 금지 등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7kg이하 중 1,400J의 운동에너지 이하(법령상에는 무게·속도로 명기)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①250g-7kg 무게 중 1,400J을 초과하거나, ②7-25kg 무게 중 14,000J 이하의 기체로 규정(법령상에는 무게·속도로 명기)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150kg 이하 드론 중 앞서 정의된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기체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저위험 드론 보다 쉽게, 고위험 드론 보다 안전하게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계획

- **추진배경** 저위험 드론의 규제완화, 고위험 드론의 안전성 확보
- **주요내용** ①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합리화 방안(초안) 마련('18.10.1 발표)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추진('18.10~)
  ②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합리화 방안 확정('18.12 발표)
- **시행일** 2019년 하반기(개선방안 확정 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 시범운영 개시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 044-201-4226)

경쟁력 있는 드론 제작업체 육성과 상업용 드론의 기술개발·안전검증을 위한 지역별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을 마무리 하고 3개소* 시범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 강원 영월, 충북 보은, 경남 고성 등 3개소

▣ 전용 비행시험장 3개소는 '18.6월 착공하여 '19년 하반기까지 비행통제센터 내 데이터 분석시스템 등 통신설비 구축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시범운영 예정 3개소

충북 보은 조감도	주요시설	면적	비고
	통제센터+정비고 (3층)	634㎡ (연면적 992㎡)	비행통제실, 회의실, 사무실, 기계실 등 *(정비고) 시험기체 정비, 데이터 분석 등
	이착륙시설 (헬리패드)	21×21m	-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경남 고성 조감도	주요시설	면적	비고
	통제센터 (3층)	634㎡ (연면적 992㎡)	비행통제실, 회의실, 사무실, 기계실 등 *(정비고) 시험기체 정비, 데이터 분석 등
	이착륙시설 (활주로)	21×21m	-
	정비고 (1층)	145㎡	시험기체 정비, 데이터 분석 등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강원 영월 조감도	주요시설	면적	비고
	통제센터+정비고(3층)	600㎡ (연면적 996㎡)	비행통제실, 회의실, 사무실, 기계실 등 *(정비고) 시험기체 정비, 데이터 분석 등
	이착륙시설 (헬리패드)	21×21m	-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액셀러레이터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방식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 042-481-4487)

액셀러레이터를 대상으로 실리콘밸리의 투자방식인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를 도입합니다.

▣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 가치에 따라 먼저 투자한 투자자의 지분이 결정되는 혁신적인 투자제도로서,

▣ 기업 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액셀러레이터 조건부 지분인수 투자방식 도입

- **추진배경** 지분의 공정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에 신속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 도입
- **주요내용** 창업보육 및 투자기능을 갖춘 액셀러레이터에 대해 실리콘밸리 투자방식을 도입
  * (美 Y-Combinator) '13년 도입 후 투자의 30% 이상에서 SAFE 활용
- **시행일** 2019년 7월 1일(「액셀러레이터 공시 및 전문인력 기준」고시개정)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사무권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기반과 (☎ 042-481-165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자율성 증대를 위하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사무권한이 확대됩니다.

▣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①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②협동화 단지조성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도지사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승인을 받게 됩니다.

- 또한 ③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은 광역자치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 협동화 단지조성사업 관련 개정 내용은 2019년 7월 1일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관련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사무권한 확대

- **추진배경**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사무권한 확대를 통한 행정 자율성 증대
- **주요내용** ①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권자, ②협동화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권자, ③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요청권자 변경
  * (현행) 시도지사 → (개정)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 **시행일** 2019년 7월 1일(협동화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2019년 7월 9일(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요청)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 042-481-3966)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19.7.16일부터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생법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개정

▣ 수탁기업은 공급원가가 일정 기준*이상으로 변동될 경우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불가).

*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잔여 대금의 3%이상 상승하는 경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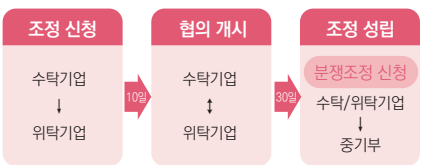
▣ 아울러 신청 후 위탁기업이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이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또한, 수탁기업의 조정협의 신청에 대한 위탁기업의 보복행위가 있을 경우 위탁기업의 공공분야 입찰 참여를 즉시 제한*하거나 수탁기업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보상제도 도입(3배 이내)으로 보복행위 제재수단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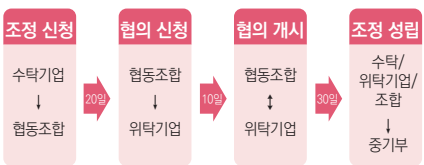
* 1회 위반시 벌점 5.1점 부과 → 벌점 5점 초과 시 즉시 입찰참여를 제한

참고 납품대금조정협의 절차

〈 수탁기업이 직접 신청 : 별도요건 없음〉



〈 협동조합을 통한 신청 : 일정요건 충족시〉



혁신조달플랫폼 구축

조달청 혁신조달과 (☎ 042-724-7347)

조달청은 2019년 정부혁신 역점분야인 새로운 가치를 창출·실현하는 '공공구매조달 혁신'을 뒷받침 하기 위해 '공공혁신조달 플랫폼' 구축을 추진합니다.

※ (추진일정) 조달발주(4.30.) → 입찰공고(5.15.~6.25.) → 사업자선정(7월초) → 혁신조달플랫폼 구축완료(~12월) → '20년 상반기 본격 시행

▣ 기존 종합쇼핑몰은 조달청이 계약한 상용품·규격화된 제품 위주로 거래되어 혁신조달업체의 진입장벽이 높고 혁신제품의 등록·거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예) 다수공급자계약(MAS)제품의 경우 동일 세부품명기준으로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계약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어 새롭게 개발한 혁신제품을 등록하기에는 제약

▣ 또한 정부기관이 필요한 혁신수요와 업체가 제공할 수 있는 제품 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혁신제품의 거래나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조달청은 수요발굴부터 공공구매까지 통합 지원하는 열린장터 형태의 혁신조달플랫폼을 구축하여 혁신제품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신속한 등록·거래를 지원합니다.

▣ 또한 혁신제품에 대한 수요·공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특허거래전문관 등 전문가를 활용한 연계를 지원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혁신조달플랫폼은 ▲혁신에 대한 수요·공급 커뮤니티, ▲부처별 공공연구개발사업 수요조사 통합운영, ▲혁신제품전용몰, ▲경쟁적 대화방식 등 혁신조달제도의 정보화로 구성됩니다.

① 먼저, 혁신조달에 대한 '의견제시'와 관련하여 정부부처의 수요와 기업의 공급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전문가를 통해 해당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시키고 수요와 공급 간의 연계를 지원합니다.

- 또한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부처별로 추진하던 공공 연구개발(R&D)사업의 수요조사 창구를 연계하여 통합 제공합니다.
- 통합창구를 통해 수요제기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민이 정부에 원하는 수요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하거나 연구개발을 지원할 때 유용하게 참고하고자 합니다.

① 다음으로, 혁신제품전용몰을 통해 각 부처 우수R&D제품,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제품, 신제품(NEP)·신기술(NET)·성능인증 등 기술개발제품, 벤처나라제품 등을 열린장터 형태로 업체가 자유롭게 등록·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제품의 판로를 지원합니다.

- 그간 수요기관과 업체별로 오프라인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혁신제품탐색 절차를 플랫폼으로 온라인화하고, 인공지능(AI)을 도입하여 비교가능한 상품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달의 '구글'로 만들어 구매편의를 크게 제고합니다.

② 마지막으로,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 경쟁적 대화방식**등 혁신조달제도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을 플랫폼에서 구현하여 혁신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을 평가하여 수의계약 대상으로 지정하고 조달청 예산으로 직접 구매하고 수요기관의 실증을 거쳐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

** 과업규격을 발주자가 설정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제시한 혁신적 아이디어가 경쟁을 통해 과업규격에 반영되는 문제해결형 계약방식

혁신조달플랫폼 구축

- **추진배경** 혁신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혁신수요와 공급 매칭
- **주요내용**
  - 혁신제품 전용몰 구축을 통한 판로지원
  -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제도, 경쟁적 대화방식 등 혁신조달제도 구현
  - 공공기관의 혁신수요와 기업의 혁신공급을 매칭하여 정보비대칭 해소
- **시행일** 2019년 12월말까지 구축후 2020년 오픈 예정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 우선심사 대상 확대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042-481-8243)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우선심사의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야를 7개에서 16개 분야로 확대*하였습니다.

* 기존 (①인공지능 ②사물인터넷 ③3차원 프린팅 ④자율주행차 ⑤빅데이터 ⑥클라우드컴퓨팅 ⑦지능형로봇) + 추가 (⑧스마트시티 ⑨가상·증강현실 ⑩혁신신약 ⑪신재생에너지 ⑫맞춤형 헬스케어 ⑬드론 ⑭차세대 통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 개정내용은 2019년 6월 10일부터 우선심사 신청되는 출원에 대해서 적용되나, 2019년 6월 10일 전에 우선심사 신청되는 출원은 종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 특허청 홈페이지〉주요제도〉특허/실용신안제도〉우선심사제도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우선심사제도 개편

- **추진배경** 우선심사 제도를 체질 개선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함
-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우선심사 분야를 확대
- **시행일** 2019년 6월 10일

임금·자재비 체불 업체에 하도급 대금 직불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044-200-4592)

하도급 업체가 임금, 자재 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직불)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는 더 이상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지 못하게 됩니다.

▣ 지금까지는 하도급 업체가 임금 등을 체불했을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 직불 중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직불을 중지해야 합니다.

▣ 다만, 하도급 업체가 임금·자재비의 지급을 지체하게 된 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있는 경우는 하도급 대금 직불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공정위 홈페이지〉공정위뉴스〉공정위소식〉보도〉하도급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금 등을 체불하는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 대금 직불 제한

- **추진배경** 근로자, 부품 납품업자 등의 권익 보호
- **주요내용** 하도급 업체가 임금, 자재 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발주자로 하여금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함
- **시행일** 2019년 11월 1일

국내 최대규모 창업지원공간『마포혁신타운』개소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 02-2100-2862)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기업가 정신을 지닌 인재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마포혁신타운을 조성합니다.

▣ 마포혁신타운은 금융·컨설팅·교육·해외진출 등 창업 全분야를 종합 지원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스타트업 보육공간*입니다.

* 위치)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22 (규모) 지상 20층, 연면적 36,259㎡(약 1만평)

※ 유럽 최대규모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 스테이션F(프랑스)와 유사한 규모

민간 전문가와 공공 창업지원기관*이 함께 모여 창업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VC, AC,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 등), 디캠프, KOTRA, 창업진흥원 등

▣ 핀테크·AI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혁신창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특화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 현재, 창업공간 구성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19년말 부분개소*, '20년 상반기 전체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시설 안전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1~5층 협업공간 및 종합지원시설을 우선 개소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관계기관 합동, 「마포 청년혁신타운」 세부 조성계획 마련

마포혁신타운 조성 계획

- **추진배경** 창업기업을 위한 맞춤형 창업지원공간 마련
- **주요내용** ① 신보 마포사옥을 리모델링하여 창업지원공간을 마련
  - 데모데이 등을 통해 선발된 300개 기업에 대해 최장 3년간 보육공간 제공

  ② 민간 전문가, 공공 창업지원기관 합동으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금융·컨설팅·교육·해외진출 등 창업 全분야를 One-Stop 패키지 지원
- **시행일** 2019년 4/4분기 부분개소, 2020년 상반기 전체개소

09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고용



Infographic

1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183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등록금 전액+장려금 200만원) 지원

시행일 : 2019. 2학기 ~

Before

'19년 2학기부터 졸업 후 농업분야 취창업을 의무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① 지원대상 : 농식품계열 대학에 재학 중이며 졸업후 농업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3학년 이상 대학생(전문대는 1학년 2학기 이상)

② 지원조건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00만원
- 신청 접수(6.27~7.9), 서류 및 면접심사(7월), 장학생 선정 및 지급(8월중), 장학생 대상 교육(8월~11월) 등

After



▪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지원학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농업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 등 의무 부여

2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184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 가능

시행일 : 2019년 7월

Before

지금까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을 귀농정책 대상으로 한정하였습니다.



After

'19.7월 이후부터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정책 수혜대상이 확대됩니다.



3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185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시행일 : 2019년 하반기

Before

'19년 하반기 건강보험 적용 과제 추진

- 중증질환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초음파 · MRI 검사의 보험기준을 확대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 병원급 의료기관 내의 형평성, 국민 수요도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과·한방)의 2·3인실에도 보험적용하여 입원환자 의료비 절감 도모

After



4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186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시행일 : 2019년 7월

Before

그간 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입원료 부담이 크고, 일부 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보다 입원료가 높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After

'19년 7월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입원료 부담이 기존의 약 40% 수준 (2인실 기준 약 7만원 → 2.8만원)으로 줄어듭니다.



Infographic

5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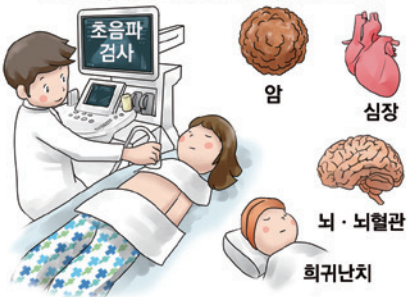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187

전립선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시행일 : 2019년 9월

Before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After

'19년 9월부터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남성생식기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임

6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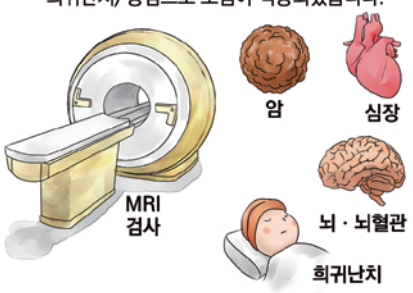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188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시행일 : 2019년 10월

Before

그간 MRI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After

'19년 하반기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복부나 흉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임

7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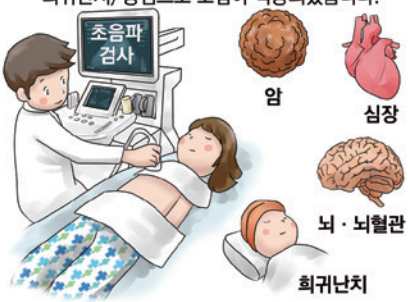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189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시행일 : 2019년 12월

Before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After

'19년 하반기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여성생식기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임

8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190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Before

오랜기간 비급여였던 난임치료시술을 표준화하고 비용부담을 낮췄습니다.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적용 연령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
적용 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 체외수정(동결배아) 3회 • 인공수정 3회
본인 부담률	• 종별 구분없이 본인부담 30% (단, 공난포 채취시 80%)

After

'19년 7월 1일부터 연령 및 횟수기준을 개선하여 보장범위를 넓혔습니다.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적용 연령	연령 제한 폐지
적용 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 7회 • 체외수정(동결배아) 5회 • 인공수정 5회
본인 부담률	• 공난포 포함 종별 구분없이 30% (단, 신규 확대분은 50%)



Infographic

9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191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추진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Before

지금까지 장애등급(1~6급)으로 등록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아 왔습니다.



장애인 등록 시 1~6등급 구분

장애등급에 따른 복지서비스 지원

After

'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등록을 '중증(1~3급)' 및 '경증(4~6급)'으로 단순화됩니다.



장애인 등록을 '중증' 및 '경증'으로 단순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장애인의 개별적 복지 요구를 고려하여 강화

* ('19년)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20년) 이동분야, ('22년) 소득 · 고용분야

10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192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시행일 : 2019년 7월

Before

지금까지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제도는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대상
대상	지체 · 뇌병변 1,2급
변경전 기준	• (육창예방매트리스)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 (이동식전동리프트) MBI 점수 중 의자/침대 이동 항목의 점수가 0점일 것
산소치료 대상 및 기준	호흡기장애 3급의 경우 90일동안 내과적 치료 및 별도검사(동맥혈가스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 기준 적합여부 확인
시각장애인 보장구 급여	• 흰지팡이 기준액 : 14천원 • 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 : 5년 • 돋보기 · 망원경 지원절차 : 처방→구입→검수→급여비청구→급여지급

After

'19년 7월 일부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이 10월부터는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급여기준액 현실화 및 급여절차가 개선됩니다.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대상
대상	심한 지체 · 뇌병변 장애
추가 기준	• (육창예방매트리스) MBI 점수 53점 이하 또는 두 다리에 대한 맨손근력검사 0-2등급 • (이동식전동리프트) MBI 점수 32점 이하 또는 두 다리에 대한 맨손근력검사 0-1등급 (MBI 중 의자/침대 이동항목 점수 3점이하)
산소치료 대상 및 기준	심한 호흡기 장애인의 경우 별도검사 (동맥혈가스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 기준 적합여부 확인
시각장애인 보장구 급여	• 흰지팡이 기준액 : 25천원 • 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 : 3년 • 돋보기 · 망원경 지원절차 : 처방→구입→급여비청구→급여지급



11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194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 제공 근거가 마련됩니다

시행일 : 2019년 7월 16일

Before

지금까지 자살위험자 긴급 구조를 위한 정보 제공 근거가 부족 및 통신서비스제공자의 협조 의무 부재



After

'19년 7월 16일 자살위험자 긴급 구조를 위한 정보 제공 근거가 마련되며 통신서비스제공자의 협조 의무 부과



12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195

아동수당 지급 대상연령 확대

시행일 : 2019년 9월

Before

지금까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After

'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Infographic

13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196

임신부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시행일 : 2019년 10월 22일(잠정)

Before

현행 만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 12세 어린이

After

'19년 하반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에 임신부까지 확대됩니다.



임신부 추가

*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크고, 태아 및 예방접종이 어려운 6개월 이전의 영아 건강보호를 위해 임신부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확대합니다.

14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206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시

시행일 : 2019년 7월 16일

Before

근로기준법 개정('19.7.16. 시행)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제76조의3제6항)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After



15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207

7월 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시행일 : 2019년 7월 17일

Before

'19.7.17.부터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fter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6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208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 개선

시행일 : 2019년 7월

Before

그동안 3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조정이 발생해도 사유서를 제출하면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fter

'19년 7월부터 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에 대해 고용조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Infographic

17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세한 내용은 p.220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제도 본격 시행

시행일 : 2019년 6월 12일

Before

종전,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의료기기를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자가사용용 의료기기'로 개인이 수입하였습니다.



After

'19년 하반기,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국가 주도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를 병행 시행합니다.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등록금 전액+장려금 200만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044-201-1578)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확대를 위해 '19년 2학기부터 졸업 후 농업분야 취창업을 의무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농식품계열 대학에 3학년 이상 재학생(전문대는 1학년 2학기) 500명을 선발하여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고,

*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지원학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농업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 등 의무 부여

▣ 재학 중 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실습 중심 교육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청년창업농 육성장학금) 지원

- **추진배경** 청년층(대학졸업생) 농업 및 농촌 유입 촉진
-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 : 농식품계열 대학에 재학 중이며 졸업후 농업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3학년 이상 대학생(전문대는 1학년 2학기 이상)
  ② 지원조건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00만원
- **시행일** 2019. 2학기 ~
  신청 접수(6월 27일~7월 9일), 서류 및 면접심사(7월),
  장학생 선정 및 지급(8월중), 장학생 대상 교육(8월~11월) 등

http://whatsnew.moef.go.kr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044-201-1540)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영농 창업시에 귀농인에 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귀농 정책 수혜대상이 확대됩니다.

▣ 귀농어귀촌법 개정·시행('19년 7월)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창업자금,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귀농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시설 등 영농창업(3억원 한도) 및 주택구입(75백만원 한도) 자금(연리 2%, 5년거치 10년상환)

참고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에 대한 귀농 정책 지원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에 대한 귀농 정책 지원

- **추진배경**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에 대한 영농 창업 지원
- **주요내용** '19년 7월 이후부터 창업자금, 교육·컨설팅 등 귀농 지원 정책 수혜 가능
- **시행일** 2019년 7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 044-202-2667)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33)

'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19년 하반기 건강보험 적용 과제 추진

▣ 중증질환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초음파 ·MRI 검사의 보험기준을 확대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 병원급 의료기관 내의 형평성, 국민 수요도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과·한방)의 2·3인실에도 보험적용하여 입원환자 의료비 절감 도모

①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② 전립선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③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④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⑤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①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 044-202-2667)

'19년 7월에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18년 7월 보험 적용)에 이어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 그간 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입원료 부담이 크고, 일부 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보다 입원료가 높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입원료 부담이 기존의 약 40% 수준(2인실 기준 약 7만원 → 2.8만원)으로 줄어듭니다.

※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임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추진배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년 8월)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 '19년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함
    - (기존) 1일 입원 시 2인실의 경우 약 7만원, 3인실의 경우 약 4.7만원 부담
    - (변경) 2인실의 경우 약 2.8만원, 3인실의 경우 약 1.8만원 부담
- **시행일** 2019년 7월

② 전립선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 044-202-2667)

'19년 9월에는 전립선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전립선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누구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임

전립선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추진배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년 8월)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 '19년 9월에는 전립선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함
    - 기존 :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 변경 : 의사의 판단하에 남성생식기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환자
- **시행일** 2019년 9월

③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 044-202-2667)

'19년 10월 뇌, 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19년 10월에는 복부·흉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 그간 MRI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복부나 흉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누구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임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추진배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년 8월)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 '19년 10월에는 복부·흉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함
    - (기존)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 (변경) 의사의 판단하에 해당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환자
- **시행일** 2019년 10월

④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 044-202-2667)

'19년 12월에는 전립선 초음파에 이어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여성생식기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누구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임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추진배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년 8월)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 '19년 12월에는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함
    - (기존)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 (변경) 의사의 판단하에 여성생식기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환자
- **시행일** 2019년 12월

⑤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33)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추가 개선됩니다.

▣ 만45세 이상 난임 여성도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의학적 시행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또한, 시술별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7회, 동결배아 3회→5회, 인공수정시술 3회→5회로 확대됩니다.

- 다만, 여성연령 만45세 이상 대상자이거나 금번 추가된 횟수 확대분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됩니다.

▣ 아울러, 체외수정시술 중 난자 채취과정에서 공난포만 나온 경우, 현재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던 것을 통상적인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개선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 **추진배경**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경감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의학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개선 방안 마련
- **주요내용**
  - 연령제한 폐지 : 여성연령 만 45세 이상인 자도 건강보험 적용 (단, 본인부담률 50%)
  - 급여횟수 확대

		현행	개선	비고
체외수정	신선배아	4회	7회	추가 3회는 본인부담률 50%
	동결배아	3회	5회	추가 2회는 본인부담률 50%
인공수정		3회	5회	추가 2회는 본인부담률 50%

- **시행일** 2019년 7월 1일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추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044-202-3289)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31)

장애인 등록제 개편은 기존의 장애등급(1~6급)이 '중증(1~3급)'과 '경증(4~6급)'으로 단순화하여 변경됩니다.

등록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를 우선 도입하고('19년 7월), 이동지원('20년 특별교통수단), 소득·고용지원('22년 장애인연금)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합니다.

▣ 또한, 장애인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사례관리를 위하여 시군구 장애인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 장애인 등록제 개편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①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①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31)

장애인 등록제 개편('19.7.1)에 따른 일부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기준금액이 현실화 됩니다.

▣ '1급 또는 1·2급'을 '심한 장애'로 개정하고, '심한 장애'에 해당되는 현행 3급 대상자 또는 신규 장애등록자에 대하여는 일부 추가된 세부 기준을 충족하면 급여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형 휠체어(틸팅·리클라이닝형) 급여 대상을 현행 "지체·뇌병변장애 1급 또는 1·2급"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으로 개선함으로써 현행 3급을 포함하여 그 기준이 완화되고,

- 또한, 산소발생기 임대료 지원시 호흡기 3급 장애인은 90일 동안의 내과적 치료를 받은 이후 별도의 검사를 거쳐 급여를 인정하였으나, '19년 7월부터는 '심한 장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90일 동안의 내과적 치료 없이 별도의 검사만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품 목	장애유형	현행	개선	추가 기준
자세보조용구	지체, 뇌병변	1,2급	심한 장애	
욕창예방 매트리스	지체, 뇌병변	1,2급	심한 장애	MBI 점수 53점 이하 또는 두 다리에 대한 맨손근력검사 0~2등급
이동식 전동리프트	지체, 뇌병변	1급	심한 장애	MBI 점수 32점 이하 또는 두 다리에 대한 맨손근력검사 0~1등급(MBI 중 의자/침대 이동항목 점수 3점이하)
수동휠체어 (틸팅형·리클라이닝형)	지체, 뇌병변	1,2급	심한 장애	
산소치료	호흡기	1,2급	심한 장애	동맥혈가스 또는 산소포화도검사결과 기준적합 여부 확인

▣ 시각장애인 보장구 기준금액이 '97년 이후 변동이 없어, 물가 상승, 환경변화 등을 반영한 현실에 맞는 급여기준으로 개선됩니다.

- 흰지팡이의 경우 재질의 변화 및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현행 14천원 지원하던 것을 25천원으로 기준액을 인상하고
- 시각장애인 사용 환경에 맞추어 저시력보조안경의 내구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돋보기·망원경의 급여는 검수절차를 폐지하는 등 급여확대 및 절차 간소화를 하게 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장애인 등록제 개편에 따른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대상 확대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제도 개선

- **추진배경** 장애인 등록제 개편('19.7.1)에 따른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대상 확대 및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현실 반영 급여기준 개선
- **주요내용**
  - 급여대상을 1급 또는 1·2급으로 정하고 있는 일부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대상 확대('19.7.1)
    -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휠체어(틸팅/리클라이닝형) : 지체·뇌병변 1급 또는 1·2급 →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
      * 산소치료 : 호흡기장애 3급의 경우 90일동안 내과적 치료 및 별도 검사 후 급여 → 심한 호흡기장애의 경우 별도검사 후 급여
  - 시각장애인 보장구 급여기준액 현실화 및 급여절차 개선(19.10월)

    ▲(흰지팡이) 기준액 인상(14→25천원) ▲(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 단축(5년→3년) ▲(돋보기·망원경) 검수 절차 폐지

http://whatsnew.moef.go.kr

보건복지부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 제공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 044-202-3881)

경찰, 소방 등 구조기관이 자살위험자*의 긴급구조를 위하여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자살위험자는 자살 의사나 계획을 표현한 사람,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 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자료제공요청 대상 자료는 성명, 주민등록번호(없을 시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전자우편주소, 위치정보법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 경찰, 소방 등 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협조해야 합니다.

▣ 아울러,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다른 방법으로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만 제공 요청하도록 규정,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주체에 통보할 의무 부과, 해당 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할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자살유발정보, 온라인에서 사라진다.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 근거 마련

- **추진배경** 자살위험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여 자살위험자 신속 구조
- **주요내용**
  -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료제공요청을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협조할 의무 신설
  - 자료제공요청 거부 시 처벌 규정 신설
  -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에 대한 제공이므로, 오·남용 막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
- **시 행 일** 2019년 7월 16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연령 확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044-202-3828)

하반기('19년 9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 당초 '18년 9월부터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는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의 만6세미만 아동에게 지급되었으나, '19년부터는 소득재산 조사가 없어지게 되었으며, 이어서 '19년 9월부터는 만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19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만 7세미만(0개월 ~83개월 아동) 아동까지 최대 84개월 동안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 사업 개요

- **목적**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 **지원대상** ('18년 9월) 소득하위 90% 만 6세 미만 → ('19년 1월)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19년 9월) 소득재산 관계없이 만7세미만 모든 아동
- **지원금액** 월 10만원, 매월 25일 지급
- **지원방식** 현금지급 원칙 (조례로 정하는 경우 상품권 지급 가능)
- **시 행 일** 2019년 9월

임신부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6819)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에 임신부까지 확대하여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 할 수 있게 됩니다.

▣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크고, 태아 및 예방접종이 어려운 6개월 이전의 영아 건강 보호를 위해 임신부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확대합니다.

- 현행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 개정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임신부

▣ 산모수첩 등 임신사실이 확인된 임신부라면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부 무료접종은 2019년 10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 사업기간 변경 시, 보도자료 등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

참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보도자료〉예방접종!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 보도자료

임신부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 **추진배경**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통한 질병부담 감소
-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에 임신부까지 확대
    - 현행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 개정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임신부 추가
- **시 행 일** 2019년 10월 22일(잠정)

국가폐암검진 실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044-202-2515)

현행 5대 국가암검진(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에 폐암검진을 추가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 검진대상은 만54~74세 남·여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 으로,
* 갑년 = 하루평균 담배소비량×흡연기간(30갑년=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 등)

▣ 매 2년마다 저선량 CT를 사용한 검진 및 사후상담을 실시하게 됩니다.

▣ 환자부담은 폐암검진비(약 11만원)의 10%인 약 1만원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은 전액 무료로 지원하게 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폐암검진 도입을 위해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

국가폐암검진 실시

- **추진배경**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국민 의료비 절감
- **주요내용**
  - 검진대상 :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
    *갑년 = 하루평균 담배소비량×흡연기간(30갑년=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 등)
  - 선정방법 : 해당 연령의 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일반검진 수검자 문진표를 통해 흡연력, 현재 흡연여부를 파악하여 선정
  - 항목·주기 : 매 2년마다 저선량 CT 사용한 검진 및 사후상담 실시
  - 비용 : 폐암검진 1건당 110,490원(90% 공단, 10% 자부담)

‘자궁외 임신’도 임신·출산 진료비지급 대상에 포함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34/ 273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대상자 범위에 ‘자궁 외 임신’을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 현재 임신 및 유산 확인은 초음파로 자궁 내 임신낭이 관찰된 경우에만 인정이 되었으나, 2019년 7월부터는 자궁 외 임신 등으로 인한 유산까지도 폭넓게 인정됩니다.

- 이를 위해, 혈청검사 결과 β-hCG* 수치(500mIU/mL 이상)를 기준으로 임신 또는 유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인간 융모성 생식선 자극호르몬(human chorionic gonadotropin), 착상 후 2개월 까지 급격히 분비되다가 3개월 이후부터 낮은 농도로 유지되어 임신 진단 검사에 이용

몰래카메라 설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044-202-2881)

불법 몰래카메라 설치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최대 영업장 폐쇄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몰래카메라 우범지역인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직접 촬영할 경우 최대 '영업장 폐쇄' 처분조치를 합니다.

- 개정사항 : 불법 몰래카메라 설치 공중위생영업자(숙박, 목욕, 이·미용, 세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개정내용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몰래카메라 설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추진배경** 몰래카메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중위생영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숙박업소에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목욕업소에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이·미용업소에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세탁업소에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 **시행일** 2019년 6월 12일

http://whatsnew.moef.go.kr

보건복지부

목욕탕·찜질방 레지오넬라 안심! 수질기준 강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044-202-2881)

목욕물을 순환·여과하여 다시 사용하는 "순환여과식 욕조"의 경우, 목욕장(목욕탕·찜질방)의 수질기준이 강화됩니다.

▣ 매년 1회 레지오넬라균 측정, 저수조청소, 수질관리사항 게시 등 목욕장 수질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하여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시 행정처분을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목욕장 (목욕탕·찜질방)의 수질기준 강화 신설

• **추진배경** 최근 법정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이 증가하고 있고, 목욕장 욕조수가 레지오넬라균 전파요인으로 파악됨에 따라 관리 강화의 필요성 제기

• **주요내용**

수질관리 강화 내용	위반시 행정처분 내용			
	1차	2차	3차	4차 이상
• 순환여과식 욕조수에 대한 소독기 설치 – 소독기를 여과기 직전에 설치하도록 위치규정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 목욕장 수질기준(연1회 의무검사) – 순환여과식 욕조수를 염소 소독하는 경우, 유리잔류염소 농도(0.2mg/L~0.4mg/L) 유지 – 레지오넬라균 기준치 (1,000 CFU/L이하)	개선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장 폐쇄명령
• 욕조수 관리사항 게시 • 저수조청소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 **시행일** 2019년 7월 1일

자살유발정보 유통이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 044-202-3882)

2019년 7월 16일부터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이 금지됩니다.

▣ 자살유발정보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말합니다.

①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②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③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④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⑤ 그 밖에 ①~④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 법률을 위반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자살유발정보, 온라인에서 사라진다.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의 배경

- **추진배경** 온라인 자살유발정보로 인한 동반 자살 및 모방 자살 방지
- **주요내용**
  - 정보통신망에서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을 금지
  - 유통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 **시행일** 2019년 7월 16일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도입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52)

돌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앞으로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만12세에서 17세의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 4,000명에게 월 44시간의 방과후돌봄바우처가 제공됩니다.

-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준비 중이며, 사업안내 및 읍·면·동 신청 및 선정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한 돌봄이 지원되고 가족의 돌봄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 개최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도입

- **추진배경** '18년 9월 수립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 따라 돌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발달장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 **주요내용** 만12세~만17세의 재학 중 청소년에게 월 44시간 방과후돌봄 바우처 제공
- **시행일** 2019년 하반기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www.broso.or.kr)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추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044-202-3446)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부담 완화 및 체계적인 자립지원 연계를 위한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사업이 시작됩니다.

▣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하며, (보증금·월세 무료, 관리비만 부담) 세탁기·냉장고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를 구비하여 입주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 또한 선발된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 사례관리사를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게 됩니다.

▣ 2019년은 시범사업으로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7개 시도에서 실시되며, 6월부터 주거 입주, 7월부터 사례관리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참고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주요사업〉자립지원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추진

- **추진배경**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부담 완화 및 성공적 자립지원을 위해 주거 지원과 함께 체계적 자립지원 연계 서비스 제공 필요
- **주요내용**
  - LH 보유 주택을 활용한 아동 개인별 원룸형 임대주택 지원(관리비만 부담)
  - 세탁기·냉장고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 구비
  - 전문 사례관리사를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등 실시
- **시행일** 2019년 6월~

성인 예방접종력 관리 강화를 위한 군의료정보시스템 연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6839)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과 군의료정보시스템이 연계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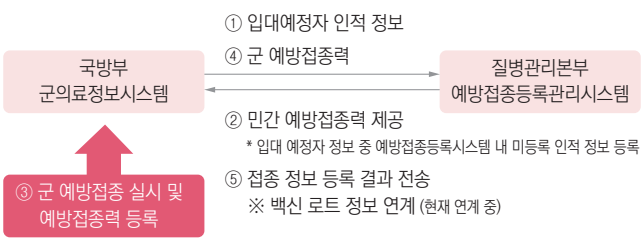
▣ 현재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 이력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예방접종력 자료 미연계로 중복접종 발생 및 접종이력 관리 등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 시스템 연계에 의해 중복접종이 방지되고 성인 예방접종력 관리 강화로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과 군보건의료정보시스템 연계

- **추진배경**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과 군의료정보시스템 연계로 성인 예방접종력 관리 강화 및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
- **주요내용**
  - 연계 대상: 인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예방접종력(날짜, 시행기관, 백신명 등)
  - 방법: 군의료정보시스템과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등록관리시스템을 웹서비스 방식으로 연계



- **시행일** 2019년 10월 24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지정변경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 043-719-9207)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현행 67개국에서 66개국으로 변경됩니다(시행일 2019. 7. 1.).

▣ 「검역법」에 따른 검역감염병 중 현재 해외에서 발생·유행 중인 검역감염병 6종*의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지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콜레라,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폴리오, 페스트, 황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사항

① (콜레라) 18개국 → 17개국
②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중국 9개 성·시→ 5개 성·시
③ (중동호흡기증후군) 10개국(변동없음)
④ (폴리오) 9개국→ 8개국
⑤ (페스트) 1개국(변동없음)
⑥ (황열) 42개국(변동없음)

참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해외질병〉검역감염병 오염지역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 및 오염인근지역 선정

- **추진배경** 해외 감염병 발생 현황에 따른 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지정 현행화
- **주요내용**
  - 오염지역 변경(67개국→66개국*) *감염병별 중복 국가 제외
    - 해제 : (콜레라) 남수단, (폴리오) 시리아
    - 변경 : (AI) 중국 9개 성·시 → 5개 성·시*
      * 중국 5개 성·시 : 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윈난성, 장쑤성, 후난성
- **시행일** 2019년 7월 1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34)

근로기준법 개정('19.7.16. 시행)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토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책자료〉정책자료실〉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19.2.21. 및 5.14. 게시)

개정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주요 내용

- **추진배경**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발생 시 조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격권과 건강권을 보호
- **주요내용**
  - 오직장 내 괴롭힘 개념 및 금지 명시(제76조의2)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 (제76조의3제1항)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제76조의3제2항)
  -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의무(제76조의3제3항 및 제4항)
  -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제76조의3제5항)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제76조의3제6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제93조제11호)
- **시행일** 2019년 7월 16일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

7월 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43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19.4.16.)되어 구인자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정보, 구직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기초 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보도자료》2019년 채용절차법 일부개정 보도자료('19.3.2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추진배경** 채용 강요 등의 행위와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여 채용의 공정성 강화
- **주요내용**
  - 채용에 관하여 구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구직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일** 2019년 7월 17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 개선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 044-202-7764)

일자리 안정자금이 예산 누수 없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일부 제도가 개선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 그동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 제출 없이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30인 이상 사업장은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원칙의 예외로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에 대해 고용 조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노동자의 소득기준 210만원에 대한 사후 검증이 강화됩니다.

▣ 노동자의 소득 기준으로 사용되는 월 평균 보수* 요건에 대한 정확한 검증은 다음연도 보수 총액 신고 결과를 토대로 사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2018년 190만 원 미만, 2019년 210만 원 이하 노동자 지원

▣ 2019년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월 평균 보수 기준이 210만 원까지 인상되었으므로 환수 기준이 120%에서 110%로 조정됩니다.

* 변경된 기준에 따라 내년에 신고한 보수 총액의 2019년도 월 평균 보수가 231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금 환수

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 지원이 중단됩니다.

▣ 2019년은 사업 인지도도 높아지고,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노동자의 입사와 퇴직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신청할 때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은 중단됩니다.

참고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ei.go.kr)》소통마당》알려드립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등 개선

• 추진배경 일자리 안정자금이 예산 누수 없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일부 제도개선

• 주요내용

구분	2019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지원 대상	• (원칙) 30인 미만 사업장 – 공동 주택의 경비·청소원, 사회 서비스기관은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 고령자 고용 사업장, 고용위기·산업위기 대응 지역은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 소득 5억 원 초과), 임금 체불 사업주, 국가 등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업주	
	• 신청 당시 퇴사자: 소급 지원	• 신청 당시 퇴사자: 지원하지 않음
지원 요건	• 월 보수액 210만 원 이하 *사후 검증에 따른 환수 기준 120% → 110% 조정	
	•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기존 노동자의 보수 수준 유지,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단, 합법 취업 외국인과 5인 미만 농림어업 법인이 아닌 농어가 등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 가능	
	• 지원대상자 고용유지 의무. 다만, 고용조정 사업장은 고용조정 불가피성 입증(증빙자료 제출)하면 계속 지원	
	*10인 미만은 간편 서식 가능	*10인 미만도 입증 자료 제출 *30인 사업장은 고용조정 시 지원 제외
지원 금액	•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1인당 13만 원(5인 미만 15만 원) *일용·단시간 노동자는 일수와 시간에 비례해 지원	
신청 절차	• 연 1회 신청	
	• 노동자 교체(신규 입사)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와 별도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추가로 신청	• 노동자 교체(신규 입사)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 상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희망 여부만 표시 • 2018년부터 안정자금 대상인 노동자는 추가 신청 절차 없이 계속 지원

• 시행일 2019년 7월(단, 신청 당시 퇴사자 소급 지원중단은 8.1일자 시행)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044-202-7213)

'19.7.1.부터 법정 시행일에 맞추어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500인 초과 노선버스 업종에 대하여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이 확대됩니다.

*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신규채용 인건비 및 기존 재직자의 임금감소액 보전분 지원

500인 초과 노선버스 업종의 경우 기존 재직자의 임금 감소액 보전분 지원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면서 기존 임금보전 재직자 1인당 최대 480만 원을 지원받던 사업장은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① 주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취업규칙·단체협약 개정 등 사규 개정)

② 제도 도입 후 법정 근로시간 준수

③ 제도 도입 후 전자적 방식 근태 관리

④ 근로자 수 증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고용장려금 지원제도(배너광고) 클릭

문의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일자리 함께하기 (주 근로시간 단축제 기준)

• 사업목적 일자리 함께하기*를 통해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신규채용 인건비 및 기존 재직자의 임금 감소액 보전분 지원

*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일자리 순환제, 주 근로시간 단축

• 지원요건

① 주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취업규칙·단체협약 개정 등)

② 제도 도입 후 법정 근로시간 준수(주 52시간)

③ 제도 도입 후 전자적 방식 근태관리 및 근로자 수 증가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인건비)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월 40~100만 원, 1~3년 지원

근로자 수	법정근로시간 적용기업		조기단축기업 (6개월이상 先 도입)	노선버스업종
	1명 당, 1개월, 지원금액, 지원기간			
500명 초과	60만 원, 1년		법정시행일까지 60만 원/ 이후 40만원, 2년	60만 원, 1년
300~ 500명	제조업	80만 원, 2년		
	기타업종	60만 원, 1년		
300명 미만	제조업	80만 원, 2년	법정시행일까지 100만원/ 이후 80만원, 최대3년	80만 원, 1년
	기타업종	80만 원, 1년		

• (임금감소분 보전)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의 임금감소분을 보전할 경우 월 최대 40만 원(사업주 보전임금의 80% 한도), 1~3년 지원

*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지원(버스업종의 경우 20명까지)

근로자 수	법정근로시간 적용기업		조기단축기업	노선버스업종
	최대지원기간			
500명 초과	-		2년	2년
300~ 500명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	2년		
	기타업종	1년		
300명 미만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	2년	3년	2년
	기타업종	1년		

• 시행일 2019년 7월 1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업일과 관계없이 가입 가능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66)

'19.7.1.부터 자영업자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는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개업 후 5년까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19.7.1.부터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참고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고용보험제도〉개인혜택〉실업급여 안내〉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업일과 관계없이 가입 가능

- **추진배경** 자영업자의 일자리안전망 확충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 **주요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가능기간 제한 폐지(개업 후 5년→폐지)
    - 가입대상: 고용보험 가입신청 당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 **시행일** 2019년 7월 1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신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2, 7489)

'19.7.1.부터 '장애인복지법(이하 복지법)'에서의 중증장애인 기준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고법)'에서의 중증장애인 기준이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복지법) 1~6급의 등급제가 폐지되고 "심한 장애(1~3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4~6급)"로 단순화되고,
- (장고법) 현행 "중증장애"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현행	변경 후	중증장애인의 기준 변동 없음	
1~3급	심한 장애	중증장애 인정기준	*청각, 언어, 간, 안면, 장루·요루, 지체(상지 제외) 장애는 현행 기준 2급 이상의 장애정도를 중증으로 인정
4~6급	심하지 아니한 장애		*그 외 유형은 현행 3급 이상의 장애정도를 중증으로 인정

▣ 이에 따라, 청각, 언어, 간, 안면, 장루·요루, 팔에 장애가 없는 지체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의 기준이 복지법과는 다르게 적용되므로

- 장애인고용장려금, 중증지원고용 등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고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별도로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중증장애인 확인서는 2019년 7월 1일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공지사항 및 팝업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신설

• **추진배경**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복지법와 장고법의 장애기준 적용 변경

• **주요내용**

• 복지법과 장고법의 장애기준 적용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현행	변경 후	중증장애인의 기준 변동 없음	
1~3급	심한 장애	중증장애 인정기준	*청각, 언어, 간, 안면, 장루·요루, 지체(상지 제외) 장애는 현행 기준 2급 이상의 장애 정도를 중증으로 인정 *그 외 유형은 현행 3급 이상의 장애정도를 중증으로 인정
4~6급	심하지 아니한 장애		

• 장고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발급
- 향후 읍·면·동사무소 및 "정부24"(온라인) 발급 예정

• **시행일** 2019년 7월 1일(관련 고시 제정 중)

장애인 취업지원 원스톱(One-Stop) 전달체계 구축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2, 7489)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자체(주민센터) 간 "장애인 취업지원 원스톱(One-Stop)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하반기부터 구직 장애인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취업지원 원스톱(One-Stop) 전달체계"는 부처(고용부-복지부-교육부)에서 별개로 제공되던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 '19년 7월부터 지자체(주민센터)와 협업을 시작하고, '20년에는 교육부와 연계하여 장애학생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 본 사업은 부처 및 기관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집중·특화하여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취업지원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방식으로 개편하는 사업입니다.

- 내년에 개편이 완료되면, 고용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는 전문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서, 지자체(주민센터)와 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는 각각 구직 희망 장애인·장애학생 확보에서 더욱 경쟁력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공지사항 및 팝업존

장애인 취업지원 원스톱(One-Stop) 전달체계 구축

- **추진배경** 구직 희망 장애인 및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적시에 필요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부처(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 **주요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 및 장애학생
  - (지원내용) 한국장애인공단 및 한국장애인개발원 취업지원 서비스
- **시행일** 2019년 7월 1일

일정소득 이하 대규모기업 노동자 훈련비 지원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44-202-7309)

노동자들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훈련비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지금까지는 45세 이상인 대규모 기업 노동자에게 훈련비를 지원하였으나,

▣ 앞으로는 45세 미만의 대규모 기업 노동자 중 일정 소득 이하(월 250만원 미만) 계층에게도 연령과 관계없이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일정소득 이하 대규모기업 노동자 훈련비 지원

- **추진배경**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소득 이하의 노동자가 본인이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훈련비 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45세 미만의 대규모 기업 노동자 중 일정소득 이하 계층 훈련비 지원
  - (지원내용) 1년 200만 원(5년간 300만 원) *자부담 20%
- **시행일** 2019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상 부속 기숙사 설치·운영 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34)

근로기준법 개정('19.7.16. 시행)으로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부속 기속사의 설치·운영 기준이 강화됩니다.

▣ 법 제100조에 따라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환경 조성, 면적,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제100조 위반 시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벌칙규정은 기존과 동일)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공지사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정 「근로기준법」 상 부속 기숙사 설치·운영 기준 주요내용

- **추진배경** 부속 기숙사는 근로자의 주거지로서 필요 최소한의 안전과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상 기숙사의 설치·운영 기준)**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과정으로 최종 개정 내용은 아래 내용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최종 시행령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 침실 하나의 거주인원은 15명 이하로 할 것
  - 화장실과 세면 및 목욕시설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을 것
  -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적절한 냉·난방 설비 또는 기구를 갖출 것
  - 「소방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안전조치를 위한 설비 또는 장치를 갖출 것
  - 기숙사의 설치는 소음 또는 진동이 심한 장소,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등 주거의 안정을 침해하는 장소를 피할 것
  - 남성과 여성이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 취업시간을 달리하는 2개 조 이상의 근로자들은 같은 침실에 거주하게 하지 않을 것
  -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침실(침구) 및 기숙사 내 시설·물건 등에 대하여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사용자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 각 방, 목욕시설 및 화장실 등에 적절한 잠금 장치를 설치할 것
- **시행일** 2019년 7월 16일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63)

체불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19.7.1.부터 현행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이는 체불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적정 수준으로 상한액을 인상하기 위함입니다.

▣ 개정 내용은 '19.7.1. 이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최초로 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최초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령〉체당금 상한액 고시(예정)

소액체당금 상한액

• **추진배경** 체불노동자 생계보장 강화

• **주요내용** 총 상한액을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급여 등」을 구분하여 상한액을 각각 700만 원으로 설정

〈 소액체당금 상한액 〉

(단위: 만 원)

항목	상한액
임금(휴업수당)	700
퇴직급여등	700

*총 상한액은 1,000만 원

• **시행일** 2019년 7월 1일

강원도 춘천에 강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개소합니다!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 (☎ 044-202-5738)

강원도 춘천에 제대군인지원센터의 개소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체계적인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 그동안 강원권에 제대군인지원센터 부재로 강원권 거주 민원인의 상담, 신청접수 등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 강원도는 전체 군인의 1/4(15만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지역으로 32천명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거주하나 그동안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방배동 소재)가 관리

▣ 전국 7개 광역권(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경기북부, 경기남부)에 더하여 접근성이 어려웠던 강원도에 강원 제대군인지원센터의 개소로 안정적인 취·창업지원을 통한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기대합니다.

- '19년 7월 개소 예정

강원 제대군인 지원센터 개소

- **추진배경** 강원권 제대군인지원센터 부재로 강원 거주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강원도 춘천에 강원 제대군인지원센터 개소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창·창업 상담, 전직지원금, 직업교육훈련 등 지원
- **시행일** 2019년 7월 1일(잠정)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제도 본격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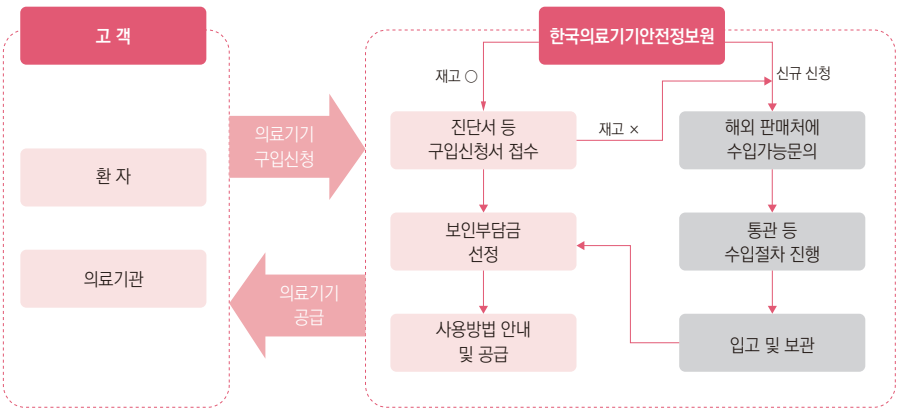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043-719-3755)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치료에 필요하나, 국내에 대체제가 없는 의료기기를 제때에,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 주도의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 지금까지는 희귀·난치질환자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경우, 세계적으로 제조업체가 매우 적고 대체품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치료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에, 공급 중단 등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긴급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국가 주도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예시
① 인공심장판막, 인공혈관, 혈관용 스텐트 등 식약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기(31개 품목군)
② 인공망막시스템, 인공각막 등 희소의료기기로 지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희귀질환자에 필수적인 국내 미허가 의료기기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이나 환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희귀·난치질환자에게 필요한 해외 의료기기가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되어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기회를 놓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의료기기법 제15조의2(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및 정보 제공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희귀·난치질환자 등에 대한 치료 기회 확대 및 원활한 질병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이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라 한다)를 수입 등의 방법으로 국내에 공급하거나 희귀·난치질환자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
2. 국민 보건상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거나 안정적 공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기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의료기기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제도 마련

- **추진배경** 희귀·난치질환자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공급중단시 치료지연 등 문제 해결 필요
- **주요내용**
  -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등을 위해 '희소·긴급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 공급제도 도입
    - 국내에 제조·수입되지 않는 의료기기를 국가가 직접 수입·공급
    - 희소·긴급도입 필요의료기기 공급업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담당

    * 환자·의료기관은 진단서 등 첨부하여 정보원에 신청
- **시행일** 2019년 6월 12일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 국가공인시험 첫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043-719-3757)

2019년 11월 16일(토), 국가공인자격인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시험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에서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 종전 : 민간등록자격
- 개정 : 국가공인민간자격

〈규제과학(RA, Regulatory Affairs) 전문가란〉

의료기기 제품개발, 국내·외 인허가, 생산 및 품질관리 등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필요한 '법적·규제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의료기기 관련 기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컨설팅 회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응시자격은 ▲정보원이 인정하는 교육과정 수료자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RA 직무분야 경력 1년 이상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RA 직무분야 경력 2년 이상 등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 응시원서는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시험은 서울·대전·대구 3개 지역에서 확대 실시합니다.

▣ 다만, 1급 자격시험은 기존대로 등록민간자격으로 시행됩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11월 16일 자격시험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홈페이지(http://www.nids.or.kr)〉알림마당〉공지사항〉2019년 의료기기 RA 전문가 2급 국가공인 자격시험 시행공고

의료기기 규제과학 (RA) 전문가 2급 국가공인시험 첫 시행

• **추진배경** 자격시험의 공신력 강화 및 국민의 권리 강화

• **주요내용**

- 의료기기 규제과학(RA) 2급 국가공인시험 실시
  - 종전 : 민간등록자격
  - 개정 : 국가공인민간자격
- 응시자격 확대
  - 종전 : 정보원이 인정하는 교육과정 수료자
  - 개정 : 정보원이 인정하는 교육과정 수료자 이외에도 요건 충족시 응시 가능
- 지방응시 가능
  - 종전 : 서울
  - 개정 : 서울, 대전, 대구

• **시행일** 2019년 11월 16일 자격시험부터

10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토·교통



Infographic

1 국토교통부

자세한 내용은 p.229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확대 개편

시행일 : 2019년 7월(예정)

Before

지금까지 1 · 2급 장애 판정 대상자로 한정하여 특별교통수단(약 3,20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1 ·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After

'19. 7월(예정) 휠체어 이용자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자가 확대되고 법정 운행대수가 상향 조정됩니다.



2 국토교통부

자세한 내용은 p.230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확대 시행

시행일 : 2019년 6월 3일

Before

지금까지 세종, 울산, 전주 지역만 시범사업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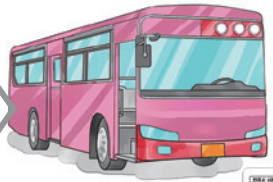


세종 울산 전주

* 선불교통카드만 사용 가능, 광역 환승은 불가

After

'19년 6월부터 전국 11개 도시로 확대 시행하고 교통비도 최대 30%까지 절감됩니다.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수원 청주 전주
포항 영주 양산



* 후불교통카드 도입 전국사용가능, 마일리지 적립액상향

3 국토교통부

자세한 내용은 p.231

주요공항 여객터미널·주차장 등 이용편의 향상

시행일 : 2019년 하반기

Before

지금까지 주요공항 여객터미널 · 주차장 등 수용능력이 한정적 이였으며 이용편의에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 (청주공항) 여객터미널 수용능력 : 189만명/년
  주차면수 : 4,138면
- (김해공항) 여객터미널 주차면수 :5,450면



After

'19년 하반기 주요공항 여객터미널 · 주차장 등 확장사업이 완료되어 불편함이 완화될 것입니다.

- (청주공항) 여객터미널
  수용능력 : 289만/년 (전년대비 100만명↑)
  주차면수 : 4,872면 (전년대비 734면↑)
- (김해공항) 여객터미널
  주차면수 : 6,650면 (전년대비 1,200면↑)



4 국토교통부

자세한 내용은 p.232

중국 항공노선 확대로 항공교통이용자 편의 개선

시행일 : 2019년 8월

Before

지금까지 한 – 중국 간 44개 노선(전체 80%)이 독점운항중으로 이용자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After

'19년 8월부터 다양한 항공사의 노선 확대로 중국으로의 여행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Infographic

5 국토교통부

자세한 내용은 p.233

출·퇴근 편의를 위한 경부선 전철 급행 확대 추진

시행일 : 2019년 하반기

Before

지금까지 경부선 급행 전철은 일부 구간에 대해 하루 34회, 일평균 50분 운행 간격으로 운행되었습니다.

운행횟수 : 34회
운행간격 : 일평균 50분
금정역 : 정차 불가
운행구간 : 용산(서울) ~ 천안



After

'19년 하반기 급행열차 확대 도입을 통해 출·퇴근 이용객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운행횟수 : 최소 54회(20회 ↑)
운행간격 : 최소 30분(20분 ↓)
금정역 : 정차 가능 * 대피선 신규 설치
운행구간 : 청량리 ~ 천안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확대 개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 044-201-3870)

장애등급제 개편('19.7)에 대비하고 휠체어 이용자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자가 확대되고 법정 운행대수가 상향 조정됩니다.

▣ 이용대상자는 기존 "1·2급 장애인"에서 "중증 장애인(보행상 장애로 한정)"으로 확대되어 기존보다 1.3배 늘어납니다.

▣ 법정 운행대수도 상향*되어, 현재 운행대수(약 3,200대)에서 1,400여대가 추가하게 되어 약 4,600대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

특별교통수단이 확대 개편(7월 예상)되면 휠체어 이용자들의 특별교통수단 부족과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별교통수단 확대 개편

- **추진배경** 장애등급제 개편 대비 및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권 확대
- **추진상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개정 중
  - (입법예고) '19.5.7~'19.6.17, (법제처 심사) '19. 6월 중순
- **주요내용**
  - 이용대상자 확대(1·2급 → 중증장애인)
  - 법정운행대수 상향 조정(중증 장애인 200명당 1대→150명당 1대)
- **시행일** 2019년 7월(예정)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요금과 (☎ 044-201-5082)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월간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6월 3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 수도권 및 전국 11개 주요 도시*의 거주민은 광역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체험단으로 신청·참여(전국 2만5천명)할 수 있습니다.

* 5개 광역(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및 6개 기초(수원, 청주, 전주, 포항, 영주, 양산)

▣ 올해는 후불교통카드를 새롭게 도입하였으며, 보행·자전거로 정류장까지 이동한 거리에 따라 지급되는 마일리지의 적립*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일명 빨간버스 또는 M버스(광역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마일리지 보상율을 더 높여 보다 많은 교통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 (기본) 1회당 적립 마일리지 250원/800m, 월 상한 11,000원(44회 이용 시)

** (총 지불요금이 2,000원 이상일 경우) 1회당 300원/800m, 월 상한 13,200원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보다 많은 지자체에서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30%+α로 할인되는 광역알뜰교통카드, 5.10일 공개 시연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확대 시행

- **추진배경** 국민 교통비 절감 및 보행·대중교통 동시 활성화
- **주요내용** ① 전국 11개 주요도시에서 시범사업 추진
  ② 후불교통카드 도입 및 전국 호환 등 편의성 개선
  ③ 광역버스 이용 시 교통비 절감 효과 상향
- **시행일** 2019년 6월 3일

주요공항 여객터미널·주차장 등 이용편의 향상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 044-201-4335)

주요 공항별 시설개선 사업이 '19년에 완료되어 터미널 혼잡, 주차면 부족 등의 불편이 개선됩니다.

▣ 청주공항은 주차빌딩 신축('19.1)과 국내선 여객터미널 확장('19.12)으로 혼잡은 줄고 이용 편의는 향상될 것입니다.

▣ 김해공항은 주차빌딩 추가 건설이 '19년 10월 완료되어 주차면 부족에 따른 불편이 개선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공항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요 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공항 여객터미널·주차장 개선사업

- **청주공항**
  - 사업기간 : '17.3 ~ '19.12
  - 사업내용 : 국내터미널 증축(189→289만명/년)
    주차빌딩 신축(4,138→4,872면)
- **김해공항**
  - 사업기간 : '18.7 ~ '19.10
  - 사업내용 : 주차빌딩 신축(5,450→6,650면)

중국 항공노선 확대로 항공교통이용자 편의 개선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 044-201-4211)

하반기부터 중국으로 가는 항공교통 이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지난 5월 운수권을 배분 받은 항공사들이 대거 취항을 준비 중(8월부터 단계적으로 취항예정)이기 때문입니다.

▣ 5월 운수권 배분결과, 한-중 간 국적 항공사의 여객노선은 57개에서 66개로, 운항횟수는 주당 449회에서 588회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 현재 대한항공·아시아나가 독점 운항 중인 44개 노선 중 항공수요가 높은 인천-선양, 인천-난징 등 14개 노선에서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신규취항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 그 결과 다양한 운항스케줄과 운임인하 효과 등을 통해 항공교통이용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편의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중국 가는 하늘 길, 더욱 편리하고 다양해진다

한-중 항공노선 확대

- **추진배경** 중국 운수권 배분을 통한 노선 신설 및 이용자 편의 개선
- **주요내용** ① (운수권 배분) 여객운수권 주 139회를 국적항공사에 배분(31개 노선)
  ② (기대효과)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존 항공협정 체계상 개설될 수 없었던 인천-장자제 등 9개 노선 신규 개설 등
  *인천-베이징(다싱신공항), 인천-장자제, 인천-난퉁, 인천-닝보, 청주-장자제, 무안-장자제, 대구-장자제, 무안-옌지, 대구-옌지
- **시행일** 2019년 8월부터 취항 예정(중국 운수권 배분, 2019.5.2)

출·퇴근 편의를 위한 경부선 전철 급행 확대 추진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철도운영과 (☎ 044-201-3966, 4631)

경부선 급행전철 추가·확대 운행을 위해 금천구청역과 군포역에 대피선*을 설치 중이며, '19년 하반기 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 (대피선) 일반전철이 승객을 승·하차 하는 동안 급행전철이 통과하여 지나갈 수 있는 선로

공사 완료 시 급행전철 운행횟수 증가, 환승시간 단축 등으로 경부선 이용객의 출·퇴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급행전철 운행횟수를 일 20회 확대(34회→54회)할 계획이며, 확대 시 운행 간격은 기존 50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됩니다.

▣ 또한 승·하차객이 많고, 경부선(1호선)과 과천·안산선(4호선)의 환승역인 금정역 정차가 가능해져 이용편의가 더욱 향상됩니다.

* 열차 운행 세부계획은 공사 완료 후 추후 확정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도로철도"경부선 전철 급행화 사업 첫 삽… '19년 하반기 준공"

경부선 급행전철 확대 추진 계획

- **추진배경** 급행열차 확대 도입을 통해 출·퇴근 이용객 편의 제고
- **주요내용**
  - 금천구청역·군포역 대피선 설치 중이며 '19년 하반기 준공 예정
  - 급행화 사업 완료 시 급행전철 운행횟수 증가, 환승역 정차 가능
- **시행일** 2019년 하반기 중(11월 경)

http://whatsnew.moef.go.kr

국토교통부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 절차 의무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044-201-3781)

공공건축 사업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담아 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설계 전에 입지 선정, 디자인 전략 등을 수립하는 '건축기획' 절차가 의무화 됩니다.

▣ 우선, 발주기관은 건축기획을 충실히 수립해 건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지자체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 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 등을 하게 됩니다.

▣ 이를 통해 건축기획의 부실에 따른 잦은 설계변경과 예산낭비 등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국회 본회의 통과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 절차 의무화

- **추진배경** 공공건축 사업절차 개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주요내용**
  -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 절차 의무화
  - 건축기획에 대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검토 신설
  - 지자체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 **시행일** 2019년 12월 19일

주택도시기금대출 절차 간소화 및 자산심사 기준 도입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41)

비대면 대출신청 채널 마련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절차가 간소화되어 대출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할 것입니다.

▣ 심사에 필요한 정보(주민등록등본, 소득·자산자료 등)는 정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해당 관계부처와 연계하여 수집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요건에 자산기준을 도입하여 지원이 절실한 실수요자에게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대출신청자 및 배우자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였으나, 2019년 중 심사기준을 자산까지 확대하여 서민·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자산심사 기준 도입 및 대출절차 간소화 추진 계획

- **추진배경** 서민·실수요자의 대출지원 강화 및 이용자 편의 제고
- **주요내용** ① 소득기준 : 부부합산 신고소득에서 부부합산 총소득으로 개선
  ② 자산기준 : 부부합산 보유자산 기준을 신설
  ③ 자산 확인 및 대출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금 시스템과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연계(HUG가 통합 수행)
- **시행일** 2019년 중(잠정)*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 진행 중이며,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예정 ('19년 중)

http://whatsnew.moef.go.kr

국토교통부

숫자 추가 및 디자인 적용된 신규 자동차 번호판 시행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044-201-3837)

'19년 9월부터 신규로 발급되는 비사업용(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세 자리수로 바뀝니다.

▣ '숫자 추가' 방식이 도입되면 승용차의 경우 2.1억 개의 번호가 추가로 확보되어 향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디자인이 도입된 재귀반사 필름부착식 번호판도 추가로 허용하였으며, 기존 차량도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1회에 한해 신규 번호판 변경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차세대 전자여권과 승용차 번호판 디자인 등 확정

신규 자동차 등록번호판 시행

- **추진배경** '19년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2,200만개)이 한계에 이르러 확대 필요 및 번호판 디자인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증대
- **주요내용**
  - 앞자리 숫자추가 방식으로 승용차 번호판 체계 개편
  - 디자인이 적용된 재귀반사 필름식 번호판 추가 도입
- **시행일** 2019년 9월 1일(잠정)

모바일 앱을 통한 전국공항 주차장 간편결제서비스 시행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 044-201-4190)

김포공항에서 '19년 3월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앱을 통한 공항주차장 간편결제서비스(자동 요금정산)가 '19년 7월부터 김해·제주·대구 등 전국 지방공항으로 확대됩니다.

▣ '카카오 T' 앱에 이용자가 등록한 카드로 자동요금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유·무인 정산기 경유없이 자동출차 할 수 있어 출차시간이 단축되고 주차장 혼잡도가 완화될 예정입니다.

- 다만,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무안·양양·포항공항과 시스템이 상이한 사천공항은 제외됩니다.

▣ 동 서비스는 신기술 적용 테스트배드로서 IT기술 발전에 따른 민간기업의 신사업 기회 및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됩니다.

참고 서비스 이용절차 : 카카오 T앱 설치→카드 및 차량정보 등록→주차장선택 및 길안내→목적지 이동→출차지 자동결제

공항주차장 간편결제서비스 주요내용

- **추진배경** 제주, 청주, 김해, 광주, 대구, 여수, 원주, 울산, 군산 등 전국 주요 지방공항에 주차장 요금 자동정산 시스템 도입
- **주요내용** ① 휴대폰에서 '카카오 T' 어플을 설치하고 카드 및 차량정보를 입력하면 공항 주차장 이용시 요금 자동정산으로 이용객 만족도가 제고될 전망
  ② 다만,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는 무안, 양양, 포항공항과 시스템이 상이한 사천은 서비스 미제공
- **시행일** 2019년 7월 예정

국립항공박물관 건립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 02-2064-8215)

우리나라 항공역사와 산업을 소개하고 체험과 교육·문화시설이 함께하는 국립항공박물관이 2019년 준공됩니다.

▣ 동 박물관은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역사와 위상을 체계적으로 홍보할 목적으로 2017년 9월 김포공항에서 착공되었습니다.

- 박물관은 4층 규모로 그 동안의 항공산업 발전 성과와 미래를 다양한 유물과 관람객 체험 등을 통해 전달할 계획입니다.

▣ 국립항공박물관은 2019년말 공사를 완료하고 약 3개월 간 시범운영을 한 후 2020년 3월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립항공박물관 인터넷 누리집: www.hanggong.or.kr

국립항공박물관 건립 주요 내용

- **추진배경**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의 유산을 발굴 · 보존 · 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항공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
- **시설 주요내용**
  ① (건물) 전시면적으로는 국립박물관 중 3위 규모
  - 위치 :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화물터미널 맞은 편
  - 규모 : 부지 15,000㎡, 연면적 18,593㎡(전시면적 7,128㎡), 지상4층
  - 주요 시설 : 대강당(200석), 주차장(172대), 도서관, 구내식당

  ② (주요 전시물) 자체개발 항공기(T-50, KC-100), 무인기(TR-100, EAV-2), 2인승 경량항공기(KLA-100) 등
- **시행일** 2020년 3월 예정

새마을·무궁화 등 일반열차 지연배상금 지급 확대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 044-201-4632)

2019년 하반기부터 ITX-새마을, 무궁화호, 누리로, 통근열차 등 일반열차의 지연배상금 지급 기준이 강화됩니다.

▣ 지금까지는 KTX 20분 이상, 일반열차 40분 이상 지연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KTX와 동일하게 일반열차도 20분 이상 지연부터 지급됩니다.

지연배상금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를 따르며, 한국철도공사의 여객운송약관 개정('19년 6월 말)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지연배상금 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지연시간	20분 이상 40분 미만	40분 이상 60분 미만	60분 이상
환급금액	운임의 12.5%	운임의 25%	운임의 50%

참고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 여객운송약관

새마을·무궁화 등 일반열차 지연배상금 지급 확대

- **추진배경** 일반열차·고속열차 지연 보상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 제기
- **주요내용** 일반열차 지연배상금을 고속열차와 같이 20분 이후부터 지급
- **시행일** 2019년 7월 초(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개정 이후)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신·구대비표-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신설	■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 다음연도 연 1회 지급	■ 지급 방식 변경 • 다음연도 연 1회 지급 →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방식 추가 (근로소득자에 한함)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19.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3)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 연장	■ '19.1.1~6.30.인하 적용	■ 인하기간 연장(6개월 연장) • '19.7.1~'19.12.31.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편 방안 발표	개별소비세법시행령 ('19.7.1.)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4)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	■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 국외사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과세 – 국외사업자가 게임·음성·동영상파일·전자문서·소프트웨어 등 저작물	■ 과세대상 확대 • 좌동 – 클라우드컴퓨팅,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중개용역 추가 ☞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2018.7.30.), 2018년도 세법개정안(21개) 본회의통과 보도자료 (2018.12.8.)	부가가치세법 ('19.7.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수출용원재료의 관세 등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	■ 수출용원재료의 관세 등 일괄납부시 담보 제공 • (원칙) 일괄납부업체 : 납부세액 상당의 담보제공 • (예외) 일괄납부업체 중 신용담보업체는 담보제공 생략	■ 일괄납부의 경우 무담보 원칙으로 전환 • (원칙) 일괄납부업체 : 무담보 • (예외) 다음의 경우에만 담보 제공 – 관세법·관세환급특례법 위반자 – 관세 등 조세 체납자 –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자 –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중인 자 등 – 수입실적, 자산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최근 1년 이내 어음법, 수표법에 따라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체납중인 자 등 ☞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관세환급특례법** ('19.7.1.)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2)
통고처분 납부방법 개선	■ 통고처분 납부방법 • 현금납부만 가능	■ 신용카드 등 납부방법 추가 •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납부 가능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관세법** ('19.7.1.)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2)
비금융기관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이용 허용	■ 비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	■ 비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관리 업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업무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해외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한다」 보도자료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 거래규정** ('19.5.28.)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044-215-4753)

법무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전자증권제도 전면시행	■ 예탁제도 • 실물발행이 전제	■ 증권을 전자등록하여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전자증권 전환 후에는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유통이 가능 ■ 상장 주식·사채 등은 시행 당시에 일괄전환 될 예정 ☞ (참고) 법무부·금융위원회홈페이지〉 보도자료)"올해 9월부터 주식·사채 등 증권 실물이 사라집니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19.9.16.)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256)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2652)

국방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퇴역연금 및 상이연금의 지급 유보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 또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퇴직수당 및 일시금에 한하여 1/2을 지급 유보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 도주 등으로 소재불명이 된 사유로 검사 및 군검사의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 2분의 1 지급 유보 ☞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군인연금법시행령' 및 '군인연금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군인연금법시행령** ('19. 하반기) **국방부** **군인연금과** (02-748-6671)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 57개 품목에 대하여 농작물재해보험 운영	■ 배추, 무 , 호박, 당근, 파 5개 품목을 추가하여 62개 품목 운영 • (상반기) 고랭지 배추·무, 단호박, 대파 판매 • (하반기) 월동 배추·무, 당근, 쪽파·실파 판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정책홍보〉 분야별정책〉 농업분야〉 농작물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 지침 ('19.2.20.)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28)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 상향	• 3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이하	해사안전법 ('19.7.1)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0)
산업 위기지역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50% 감면	〈신설〉	• 9개 산업위기지역 공유수면 점·사용료 50% 감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9.7.1)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66)

중소벤처기업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서류 간소화	■ 지역신보의 과세정보제공요청권 (법적근거) 미흡	■ 지역신보의 과세정보제공요청권 (법적근거) 마련 • 신용보증 및 신용조사를 위해 당사자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지역신용보증재단법 검색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세무서류 직접발급 • 과세정보요청권을 활용하여 지역신보가 고객의 세무서류 직접 발급('19.하반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19.7.24.)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2-481-4454)

관세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통관목록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제출	■ 목록통관시 수하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선택기재	■ 수하인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필수 기재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19.6.3.) **관세청 특수통관과** (042-481-7835)
품목분류 사전심사 'HS 6단위 소호 회신 제도' 신설	〈신설〉	■ 수출물품의 HS 6단위 소호 회신제도 신설 • 10단위 → 10단위 또는 6단위 선택가능 ■ 법정 회신기간 단축 • 30일 → 15일 (다만 보정기간 등은 법정기간에서 제외)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19.4.22)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714-7642)

특허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중소기업 등의 특허 활용촉진을 위한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	■ 미대상	■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이 위탁자(신탁을 설정하는 자)로서 기술신탁관리기관(수탁자, 신탁을 인수하는 자)에게 신탁등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50%) 도입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19. 하반기 예정)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042-481-5716)

금융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도입	■ 잔액기준 COFIX에 결제성자금이 포함되지 않음	■ COFIX(잔액기준)에 실제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일부 결제성자금을 포함한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도입 ☞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 ('19.7.~)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02-2100-2853)

금융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동 결제시스템 (오픈뱅킹) 구축	■ 여러 은행 거래시 각각의 은행 앱을 받아 금융서비스 이용	■ 오픈뱅킹 구축으로 은행들의 자금이체 기능이 개방 → 은행 또는 핀테크기업의 앱 하나에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하여 편리하게 금융서비스 이용 ☞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오픈뱅킹 서비스** ('19.12.)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02-2100-2535)
카드이동 서비스	■ 카드 고객은 자동납부 통합조회 서비스 부재로 본인의 자동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힘들며 ■ 주거래 카드 변경시 자동납부를 일일이 변경해야함	■ 금융결제원 통합플랫폼을 통한 카드 자동납부 통합조회서비스 제공 ■ 주거래 카드 변경시 필요한 자동납부 해지·변경 서비스를 제공 ☞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국민체감형 금융거래서비스 도입방안	**자동납부 통합조회서비스** ('19년 말) **자동납부 해지·변경서비스** ('20년 상반기)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83)
전자증권제도 전면시행	■ 예탁제도 • 실물발행이 전제	■ 증권을 전자등록하여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전자증권 전환 후에는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유통이 가능 ■ 상장 주식·사채 등은 시행 당시에 일괄전환될 예정 ☞ (참고) 법무부·금융위원회홈페이지〉보도자료)"올해 9월부터 주식·사채 등 증권 실물이 사라집니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19.9.16.)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256)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2652)

금융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금융감독원 불공정 거래사건 조사시 변호사 참여 허용	■ 변호인 참여 불가능	■ 변호인 참여 허용 ☞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개정안 금융위 의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19.8.3.)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2682) **자본시장조사단** (02-2100-2518)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제도 변경	■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등도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가능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 사유 신설 •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유사투자자문업 교육 미이수자 등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불가 ■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시 처벌 강화 (과태료→형사벌) ■ 유사투자자문업 교육 신설 및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교육 이수 의무화 ☞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19.4.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7.1.)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2668)
농수산식품 우수기술 자농신보 보증한도 확대	■ 농신보 일반보증 동일인당 보증한도 적용 • 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	■ 농신보 동일인당 보증한도 확대 • 개인·법인 30억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19.9.1.)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3)

금융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한 보험설계사의 정보 조회	〈신설〉	■ 보험가입시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 통지 및 신뢰성 관련 정보 시스템 조회 가능 ■ 모집경력시스템에 추가정보 집적 및 소비자·법인보험대리점의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편 ☞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보험설계사·GA 관련 정보 이제 투명하게 보여드립니다.	**보험업감독규정 및 협회자율규정** ('19.7.1.)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5)
제2금융권계좌이동서비스	■ 제2금융권은 자동이체 변경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 은행-제2금융권간 자동이체 변경도 불가	■ 제2금융권에 계좌이동서비스를 도입해 자동이체 변경서비스를 제공하고 ■ 은행-제2금융권 간에도 자동이체 변경이 가능하도록 금융결제원 통합플랫폼 시스템 개선 ☞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국민체감형 금융거래서비스 도입방안	**제2금융권 계좌이동서비스** ('19.하반기) **은행-제2금융권간 자동이체 변경** ('20.상반기)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1)

방송통신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수신료 체납 가산금 인하	• 수신료 체납 시 체납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	• 수신료 체납 시 체납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올 7월부터 수신료 체납 가산금 낮아진다	**방송법 시행령** ('19.7.10 시행)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18)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의무화	〈신설〉	■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화 ■ 의무대상은 이용자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다만, 연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 ☞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개정 보도자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19.6.13.)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윤리과** (02-2110-1529)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요건 충족한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출산급여 지원 • 50만 원씩 3개월	예산사업 ('19.7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9)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근무지 등의 자료 요청	■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 자료 요청	■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위해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근무지 등 조회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주소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근무지 정보 이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19.06.25.)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4) (02-2100-6347)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장애부모 범위 확대 및 서비스 신청 편의 제고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인 장애부모 • 1급, 2급 및 3급 일부(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만 신청 가능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인 장애부모 • 기존 1~3급(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 주소지 관할 지자체 외 지자체에도 신청 가능 ☞ (참고)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19.7.1. 개정 시행)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19.7.1.)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02-2100-6365)
청년 참여 플랫폼 출범·운영	-	■ 성평등을 중심으로 정책 이슈를 논의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추진하는 기획단 출범	- (2019년 하반기)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02-2100-6151)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가족상담전화	■ 한부모·양육비 상담 ■ 평일·주간 위주 ■ 전화·홈페이지 한정	■ 한부모·양육비·위기임신 상담 ■ 365일 24시간 운영(평일→주말까지) ■ 문자상담 기능 추가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02-2100-6326)**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 설치	-	■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공간 지원(전국 80개소 신규 설치·운영)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2100-6377,6378)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에 상담학과 학위 추가	■ '상담관련분야'의 정의에 상담학은 열거되어 있지 않아, 상담관련 분야 학위로 인정받기 위해 교과과정 등 다수의 증빙자료 제출	■ '상담관련분야' 의 정의에 상담학을 추가하여 상담학과 졸업증명만으로 응시자격 인정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6)**

국방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이 인정된 경우 '순직 결정일'로부터 급여 청구권의 시효 기산	■ 급여의 청구 시효 기산일 • 군인 '사망일'	■ 급여의 청구 시효 기산일 • 원칙 : 군인 '사망일' • 특례(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 : '순직 결정일' * 2019.4.23. 시행. 단, 2012.7.1.~2019.4.23. 간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2019.4.23.'을 기준으로 시효 기산 ☞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국방소식)보도자료/공지사항)군인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4월 23일 공포,시행/관련 급여 신청절차 안내	**군인연금법** ('19.4.23.) **국방부 군인연금과** (02-748-666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신청 기간 연장	■ 보상신청 기간: • 2016. 1. 19. ~ 4. 19.(종료)	■ 보상신청 기간 연장 • 2019. 5. 24. ~ 11. 25.(6개월 연장) ☞ (참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보상안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19.5.24.)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02-3476-8005)
위로금등의 지급신청 기간 연장	■ 법 제8조 2항 •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법 제8조 2항 •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은 2021년 5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지뢰 사고 피해 위로금 등 신청 기간 연장 된다.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19.6.1.) **국방부 지뢰피해자지원단** (02-748-7062)

병무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입영일자 조정범위 확대	■ 학기 단위로 입영 일자 조정	■ 담임교사 등의 안정적인 학습지도를 위해 당초 입영일자가 1학기 중인 경우 학기 또는 학년 종료후로 입영 일자 조정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19.5.20.)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16)
'군지원 사유' 연기제도 개선, 편법연기 방지	■ '군지원 사유' 입영일자 연기 연령 제한 없음	■ 28세 초과 각 군(전환복무 포함) 모집에 지원한 사람으로 연기 제한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19.7.1)**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16)**
동일법인 내 다수 병역지정업체(산업체) 선정 가능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0조(기간산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세부선정기준) ① 영 제72조제2항제1호에 따라 ~ 공업분야의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동일법인 내의 다른 공장 또는 사업장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지 않은 다음 각 호의~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0조(기간산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세부선정기준) ① 영 제72조제2항제1호에 따라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0조** ('19.5.31.) **병무청 산업지원과** (042-481-2773)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정근거 신설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8조(기능요원 배정) ① ~ ⑤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8조(기능요원 배정) ⑥「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이 해당하는 사람,「한부모가족지원법」에 본인 또는 가족이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인원배정 (신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8조** **('19.5.31.)** **병무청 산업지원과** (042-481-2773)

병무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4급이상 공직자 등의 신고·공개 병역사항 추가	■ 신고할 병역사항 • (복무 마친자) – 복무분야, 계급, 입영연월일, 전역(소집해제)연월일, 전역(소집해제)사유 • (복무 중인자) – 복무분야,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계급, 입영(편입)연월일	■ 신고할 병역사항 추가 • (복무 마친자) –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군인) • (복무 중인자) – 병과 및 군사특기(군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19.10.24.) **병무청 병역공개과** (042-481-2776)

방위사업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 지체상금 부과(군수조달분과위 심의) ■ 이의가 있을시 소송 등 제기	■ 지체상금 부과 이후 업체에서 이의가 있을 시 위원회에 민원신청 가능 ☞ (참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공지사항〉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내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청훈령 496호)** ('19.4.29.)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과** (02-2079-6312)
M&S 사업의 산출물 작성 부담을 줄이기 위한 테일러링 가이드 시행	■ M&S 사업 산출물 • SW 표준개발 산출물(39종), 국방 MND-AF 산출물(29종), 국방 CBD 산출물(35종4부록) * 사업별 테일러링 수행	■ M&S 사업 산출물 • SW 표준개발 산출물(19~31종), 국방 MND-AF 산출물(7~9종), 국방 CBD 산출물(0~34종4부록) * 테일러링 가이드 적용	**방위사업 기반과-1315** (2019.04.16. 시행)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기반과** (02-2079-6325)

방위사업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방산 수출 확대 및 촉진을 위한 방산물자 수출 시 기술료 인하	**제4조(기술료)** ③ 기술보유기관은 국내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기술실시를 허락할 때에는 기술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체가 독자 개발한 기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기술료)** ③ 기술보유기관은 국내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기술실시를 허락할 때에는 기술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체가 독자 개발한 기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업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2019. 2. 20.)
	1. 이전 받은 기술 또는 실시를 허락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방산물자를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 :	1. 이전 받은 기술 또는 실시를 허락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방산물자를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 :제품단위당 국내 순조달가격의 1% 단, 순수출가격이 순조달가격보다 낮은 경우 순 수출가격의 1%	
	⑤ 기술보유기관이 직접 기술협력국 또는 기술협력 외국업체 등과 실시권 계약을 체결하거나 업체로 하여금 체결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대한민국 기술보유기관에 납부할 것을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기술보유기관이 직접 기술협력국 또는 기술협력 외국업체 등과 실시권 계약을 체결하거나 업체로 하여금 체결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대한민국 기술보유기관에 납부할 것을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착수기본료 2. 국외 기술협력자가 도입한 기술을 이용하여 자국내 사용목적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 : 3. 국외 기술협력자가 도입한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방산물자를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 :	1. 착수기본료 2. 국외 기술협력자가 도입한 기술을 이용하여 자국내 사용목적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 : 단위당 순판매가격의 2% 3. 국외 기술협력자가 도입한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방산물자를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 : 순수출가격의 3%	**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 (02-2079-6394)

방위사업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결과 디브리핑 제도 도입	■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협상대상업체(우선순위) 확정 후 대상업체에게 우선순위만 개별 통보 ■ 입찰업체 요청시 해당 업체 세부항목 점수 추가 공개	■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 평가 후 3근무일 내 인터넷 공개 • 모든 입찰업체 ■ 입찰업체 요청시 해당 업체 제안서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 디브리핑 결과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 신설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디브리핑제도 도입 보도자료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19.7.1.) **방위사업청 사업운영평가팀** (02-2079-50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 개선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대상 • 소기업* 포함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통신판매업자 등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겸직 제한 • 대기업 등도 겸직 허용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자격요건 • 학력·경력과 관계없이 가능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대상 • 소상공인·소기업 제외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겸직 제한 • 대기업 등의 겸직 제한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자격요건 • 정보보호 관련 학력, 경력 등 필요 ☞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홈페이지〉보도자료〉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제도개선 시행(6.13일) 보도자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19.6.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02-2110-2979)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의무	■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고 그 공사에 대하여 감리를 수행함	■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고 그 공사에 대하여 감리를 수행하되, • 발주자 확인을 받은 감리원 배치현황을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정보통신공사 보도자료	**정보통신공사업법** ('19.10.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02-2110-1907)

외교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점자 여권 발급대상을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	■ 시각장애인용 점자여권 발급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1~3급) 시각장애인	■ 발급대상 확대 • 중증 시각장애인 → 모든 시각장애인	**여권법 시행령** ('19.7.1.) ※ 관련 법령개정 추진 중 **외교부** **여권과 법무팀** (02-2002-0133)

법무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 확대	■ 취업제한 대상 기업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주로 공범이나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제3자와 관련된 기업체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	■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 추가 ☞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범죄를 저지른 경제인의 취업제한이 확대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11.8.) **법무부** **형사기획과, 형사법제과** (02-2110-3541,3564)

행정안전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지방세와 과태료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받아 납부	■ 종이고지서 납부 • 종이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 직접 납부하거나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아 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	■ SNS 지방세입 고지·납부 • 카카오톡(카카오페이), 네이버 앱(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으로 모바일고지서를 받아 즉시납부 또는 자동납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28조** ('19.1.1.~)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 (044-205-3880)

산업통상자원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안전설비 인증제도 도입	-	■ 안전설비 인증대상 규정 • 수동밸브, 체크밸브, 유량조절밸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9.11.1.)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5)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 작업대 조종자격 신설	■ 조종자격 없이 누구나 조종 가능	■ (조종자격 신설) 아래 한 가지 자격을 충족한 경우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 가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 '20.2.1.부터 지정교육기관을 통해 신규 교육을 수료한 사람 • '19.12.31.까지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전문교육(2시간)을 이수한 사람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령〉「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22호	**유해·위험 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20.2.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044-202-7733)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처벌 등	■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 처벌 규정 없음	■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처벌 • 처벌 규정 신설 * (간음) 3년 이상 유기징역, (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9.7.16.~)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5)

국토교통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고 보안검색 및 생체정보로 신원확인	■ 노트북·액체류 검색시 가방을 열어야만 검색 가능 ■ 탑승구 앞에서 탑승권 확인 필요	■ 제주공항 CT X-ray 등 첨단장비 도입 ■ 김포공항 국내선 탑승구 앞 생체인식 시범운영('19.10) * 탑승구 진입 시 탑승권 확인을 승객 생체정보(정맥, 지문) 인식으로 대체 ☞(참고) 국토교통부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고 보안검색 및 생체정보로 신원확인	**항공보안법** ('19.7월)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044-201-4233)
항공종사자 업무 전 음주측정 의무화	■ 항공사 별 종사자의 15%측정을 목표로 무작위 불시 측정	■ 측정대상 • 일부(표본 15%) → 전체 종사자 ■ 측정시기 • 임무수행직전부터 직후까지 → 비행·업무 시작 전 ■ 측정방법 • 유인측정 → 시스템 측정 또는 유인측정 * 지방 지점 등 음주측정인원 상시 대기불가 지역, 측정인원이 많은 지역 등은 자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예정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19.9.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044-201-4255)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신설〉	• 선박 자동식별장치 등 장비 장착 • 출항 전 안내 의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19.7.1)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8)
미등록 선박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	• 선박을 신규로 취득하고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 임시선박국적증서를 받은 경우는 제외	**선박법 및 선박법 시행령** ('19.7.1)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45)

국가보훈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립묘지 안장 생전 심의제 시행	■ 결격사유가 있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사후에 유가족들의 국립묘지 안장신청 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 여부 결정 • 결격사유 : 범죄경력 또는 병적 이상 등 • 심의기간 40일 소요	■ 결격사유가 있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생전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 대상인지 미리 확인(추가) • 대상 연령 : 80세 이상 •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만 해당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9.7.16.)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 (044-202-5592)

국가보훈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립괴산호국원 개원	■ 호국원 : 5개소 • 국립영천호국원 • 국립임실호국원 • 국립이천호국원 • 국립제주호국원 • 국립산청호국원	■ 호국원 : 6개소 • 국립영천호국원 • 국립임실호국원 • 국립이천호국원 • 국립제주호국원 • 국립산청호국원 • 국립괴산호국원(추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하반기 예정)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 (044-202-5556)

병무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가혹행위 시 제재강화	■ 사회복무요원이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없이 현행법 조항 중 '그 밖에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한 행위'를 근거로 경고 및 연장복무 처분을 하고 있으며, 경고 누적에 따른 고발(형사처벌)은 없는 상태	■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 및 연장복무처분하고,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사회복무요원에게 경각심을 주어 범죄 발생 예방 효과 제고	**병역법** ('19.7.24.)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042-481-3004)

경찰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대상 확대	■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 집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 확대 • 재산상 손실	■ 손실보상 대상 확대 • 재산상 손실 →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 • 손실보상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사자료와 결과를 경찰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도록 함 ☞ (참고) 경찰청 홈페이지〉뉴스/알림〉뉴스룸〉PBN뉴스〉경찰 공무 수행 중 다친 시민, 국가 보상청구 가능해진다_경찰리포트(2018.12.28.)	**경찰관직무 집행법** ('19.6.25.)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3150-0348)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	■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 • 0.05% ■ 면허정지 수치라고 취소대상이 되는 음주 횟수 • 3회 이상 ■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정지 행정처분 기준 • 0.1%, 0.5%	■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 • 0.03% ■ 면허정지 수치라고 취소대상이 되는 음주 횟수 • 2회 이상 ■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정지 행정처분 기준 • 0.08%, 0.03%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도로교통법〉2019.6.25.시행 도로교통법(법률 제16037호)	**도로교통법** ('19.6.25.)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659)

소방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강화	■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 시 벌칙 금액 • 범칙금 및 과태료 : 승용 4만, 승합 5만	■ 적용대상 • 안전표시(적색)가 설치된 소방 관련 시설 ■ 주·정차 위반 시 벌칙 2배 상향 • 범칙금 및 과태료 : 승용 8만, 승합 9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9.8.1.)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044-225-7472)

특허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특허 손해배상제도 대폭 강화(3배 배상 제도)	■ 특허권 및 영업비밀 고의 침해시 법원에 인정하는 손해액만 사후 배상	■ 특허권 및 영업비밀 고의 침해시 3배 배상 제도 도입 등 손해배상제도 강화 •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부담으로 특허권자에게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 기대 • 그 밖에 특허권 및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해 '실시료 배상금액 판단기준 등 변경 ☞ (참고) 특허청홈페이지〉 보도자료〉2019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관련 보도자료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19.7.9.)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842)**

특허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	■ 특허심판에서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특허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 선임 •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소기업 등 ■ 국선대리인 선임된 당사자에게 대해 심판수수료 감면 • 심판사건이 끝난 후에 심판수수료(심판청구료, 정정청구료) 반환 ☞ (참고) 특허청홈페이지〉 보도자료〉새해 달라지는 제도·지원 시책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19.7.9.) **특허청 심판정책과** (042-481-8444)

기상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웹기반 사용자 맞춤형 지진정보서비스 실시	■ 지진발생 상황정보 제공 • 지진재난문자, TV자막, SNS, 기상청 홈페이지 등 지진발생 정보 제공	■ 사용자 맞춤형 지진발생 진행상황 및 지역별 상세정보 제공 • 신속한 지진발생 정보 제공 • 상시 지진상황 감시 기능 제공 • 지진발생 즉시 지진파 진행상황 및 예상 진도정보 제공 • 지점별 지진발생 이력정보 제공	- **기상청 지진정보기술팀** (02-2181-0082)
규모 2.0미만 미소지진 대국민 공개	■ 미소지진 정보 미제공 • 국내지진: 규모 2.0이상 정보 제공	■ 미소지진 정보 제공 • 규모 2.0 미만의 국내지진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참고) 기상청 날씨누리/지진·화산/국내지진 목록	- **기상청 지진화산감시과** (02-2181-0783)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담합·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징벌적 손해배상제 미도입	• 담합,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배상 책임 부과 ☞ (참고) 공정위 홈페이지〉공정위뉴스〉공정위소식〉보도〉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법** ('19. 9월) **공정위 경쟁정책과** (044-200-4304)

국민권익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부패신고자 보호 실효성 제고	〈신설〉	■ 불이익조치 유형 9개 신설 • 파면, 해임 등 불이익조치 유형 명확화 (법 제2조제7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9.10.17.)
	〈신설〉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신고 방해 및 신고취소 강요금지 및 위반자 처벌(법 제62조제2항, 제90조제2항)	
	〈신설〉	■ 행정소송의 제기 등 • 피신고자 행정소송 제소기한 30일로 제한, 행정심판 청구금지(법 제62조의4)	
	〈신설〉	■ 이행강제금 부과 신설 • 기한 내 조치결정 불이행 시 3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법 제62조의6)	
	〈신설〉	■ 화해의 권고 등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화해권고 신설(법 제63조의2)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2)
	■ 보호받는 신고자 범위 •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	■ 보호받는 신고자 범위 확대(법 제65조, 제67조) •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 → 국회·법원 증언자, 수사기관 고소·고발자로 확대	

원자력안전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 강화	〈신설〉	•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 대상 등록제도 실시 • 신체밀착·착용제품에 원료물질 사용 금지 • 방사선작용을 이용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수출입 금지 ☞(참고) 원자력안전위원회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공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19. 7월)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237)

문화체육관광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관광안내업 신설	■ 여행업의 종류 • 일반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국외여행업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 관광안내업 신설 • 관광안내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제공하는 여행업(1영업일을 넘어 관광안내를 제공하거나, 운송시설·숙박시설의 이용 알선 또는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19. 4분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044-203-2840)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 문화생활 관련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 도서·공연비(공제율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 문화생활 관련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도서·공연비 외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 (적용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공제대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 (공제율) 30% • (공제한도)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포함 1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도 시행 '19.7.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044-203-2649)

문화체육관광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스포츠강좌이용권·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체육활동 참여 확대	■ 최소 지원기간 6개월, 저소득층 유·청소년 4만명 규모 지원	■ 최소 지원기간 7개월, 저소득층 유·청소년 5만명 규모 지원 ■ 저소득 장애인 대상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시범사업 실시	**국민체육진흥법** ('19.1.1.)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044-203-3130)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044-203-3179)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농지 임대차 제도개선	■ 농지임대차 제도 • 60세이상, 5년이상 자경 후 은퇴농에 한해 임대 허용 • 농지 임대차 기간 : 3년	■ 농지임대차 제도개선 • 60세이상, 5년이상 자경시 임대 가능 (비은퇴농 임대 허용) • 다년생식물재배지 등의 경우 임대차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알림소식〉보도자료〉임대차 제도 개선 농지법 개정안 공포	**농지법** (2019년 하반기)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5)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및 주목적사업에 필요한 일시적인 현장사무소 등만 가능	■ 대상 확대 •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에 태양광 용도로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알림소식〉보도자료〉	**농지법** ('19.7.1.)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7)
양곡관리사 도입	〈신설〉	■ 양곡에 대한 전문가를 평가·인증하는 양곡관리사 자격증 제도 신설 • 양곡관리사 자격증 제도 도입, 교육 프로그램 운영, 권역별 정부양곡 관리체계 구축	('19.12월, 잠정)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044-201-1820)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	■ 식물의 재배자에 한하여 병해충 피해 식물, 규제병해충 또는 방제대상 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 및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식물의 재배자, 수입자, 운송업자 등 수입물품 취급자에 대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 및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의무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참고)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법령〉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 ('19.7.1.)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044-201-2079)
수입되는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 휴대·우편·탁송 및 이사물품으로 수입되는 재식용·번식용 식물의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검역증명서 첨부	■ 휴대·우편·탁송 및 이사물품으로 수입되는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 다만,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수량 이해의 식물 수입 시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첨부 대상에서 제외 ☞ (참고)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법령〉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 ('19.7.1.) **농식품부 검역정책과** (044-201-2079)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 1++등급의 근내지방도 • No. 8, 9 ■ 평가기준 • 근내지방도 예비등급 판정 후 육색·지방색 등을 추가 평가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1~3등급 하향 조정 ■ 육량등급 산출방법 • 성별, 품종에 관계없이 단일 육량예측산식 적용(1종) ■ 육질등급 표시 • 육질등급만 표시	■ 1++등급의 근내지방도 • No. 7, 8, 9 ■ 평가기준 •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을 개별 평가 후 최저등급 부여 ■ 육량등급 산출방법 • 성별, 품종별로 달리하여 육량산식 적용(6종) ■ 육질등급 표시 • 1++등급에 한해 근내지방도 (No. 7, 8, 9) 병행표시 ☞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축산법 시행규칙 ☞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축산물 등급판정세부기준	**축산법 시행규칙** ('19.12.1.)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19.12.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44-201-2322)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말고기 등급기준 시행	■ 말고기 등급기준 〈신설〉 〈신설〉	■ 말고기 등급기준(도입) • 육질등급 : 1, 2, 3등급 * (평가항목)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 육량등급 : A, B, C등급 * (평가항목)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도체중량 ☞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축산법 시행규칙 ☞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	**축산법 시행규칙** ('19.12.1.)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19.7.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44-201-2322)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의 기준 강화	■ 신규로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 허가를 받는 농장에 적용('18.9.1) •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 •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 – 농장 구조 상 출입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 각 출입로와 차량, 운반용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설비 구비 •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 기존에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장에 적용('19.9.1) •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 •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 – 농장 구조 상 출입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 각 출입로와 차량, 운반용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설비 구비 •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령** ('19.9.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44-201-2326)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상용시 표시 의무	■ 유전자변형 농수축산물 등의 표시 〈신설〉 ■ 사료시험검사기관 명칭변경 • 사료검정인정기관 ■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신설〉 〈신설〉	■ 유전자변형 농수축산물 등의 표시 •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사료에 대하여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료로 사용하였음을 표시토록 의무화 ■ 사료시험검사기관 명칭변경 • 사료시험검사기관 ■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기준 근거 마련 •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취소 근거 마련 ☞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료관리법	**사료관리법** ('19.7.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60)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살처분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안정비용 지원액 상향	■ 살처분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안정비용 기준 • 전국농가평균가계비(통계청 농가경제조사통계)	■ 살처분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안정비용 기준 변경 • 전국농가평균가계비 →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 * 월별 2,553천원 → 3,125천원(차 572천원)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현행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19.7.1.)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42)
살처분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	■ 살처분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규정 • 치료지원 내용, 신청절차 및 방법, 지정 의료기관 등 대한 안내(행정지시) • 작업후 6개월 이내 상담 신청, 최초 상담후 6개월 이내 추가적 치료 • 추가적인 치료시 비용 일부 자부담(50%)	■ 살처분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규정 개정 • 치료지원 내용, 신청절차 및 방법, 지정 의료기관 등에 대한 안내 의무화(15일 이내) • 심리치료 신청·지원 기한 폐지 • 치료 비용 전액 국가 부담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현행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 ('19.7.16.)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42)
살처분 보상금 계약사육농가 지급	■ 살처분 보상금 지급 규정 •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급	■ 살처분 보상금 지급 규정 •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에 지급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현행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19.7.1.)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42)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 축산농가 해충방제 • 농가 자체적 실시	■ 축산농가 해충방제 • 전문업체(가축방역위생관리업)에서 실시 ■ 일정규모 이상 농가와 살충제 위반농가는 전문업체를 통해 해충방제 의무화 • 살충제 사용 위반농가의 경우 '19.7.1 일부터 의무화가 적용, 일정ㅁ규모 이상 농가의 경우 산란계 10만수 이상 사육농가는 '21년부터, 5만 이상 10만 미만 사육농가는 '23년부터 의무화 적용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국민소통〉법령정보〉현행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19.7.1.)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044-201-2553)
닭·오리 농장 및 부화장 CCTV 설치 의무화	■ 별도 규정 없음	■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에 CCTV 설치 요건 추가 → 닭, 오리 사육농장 및 부화장의 출입구 및 농장 내 각 동별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함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국민소통〉법령정보〉현행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19.7.1.)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044-201-2555)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 개선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구분	■ 제품명에 농수산물 명칭사용 시 원재료명 모두 원산지 표시 ■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대상 • 20개 품목(양고기 포함)	■ 제품명에 농수산물 명칭 사용 시 원산지 표시 방법 개선 • 원재료명 모두표시 → 생략 허용 조건* 신설 * ① 원료가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② 식품표시법에서 원재료명 표시 생략을 허용한 경우 ■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대상 구분 • 20개 → 21개(양고기와 염소고기를 구분)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알림소식〉공고·공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7.1.)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044-201-2276)

농림축산식품부

<table>
<tr><th>구 분</th><th>종 전</th><th>달라지는 내용</th><th>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th></tr>
<tr><td rowspan="2">인증사업자의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의무교육 도입 등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td><td>■ 의무교육 도입
• 인증신청 시 제출서류
–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
– 경영 관련 자료
–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 생산, 제조·가공,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td><td>■ 의무교육 도입
• 인증신청 시 제출서류
–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
– 경영 관련 자료
–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 생산, 제조·가공,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
– (신설) 친환경농업에 관련 교육 이수 증명자료(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table><tr><th>과정명</th><th>친환경농업 기본교육</th></tr><tr><td>교육 주기</td><td>2년에 1회</td></tr><tr><td>교육 시간</td><td>가) 최초 인증 신청 시 3시간 이상
나) 인증 갱신 신청 시 2시간 이상</td></tr><tr><td>교육 기관</td><td>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td></tr></table></td><td>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19.7.1.)
*단, 친환경인증제도 의무교육 시행 ('20.1.1, 사전교육은 '19.7.1.부터)</td></tr>
<tr><td>■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개선
• 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기사, 산업기사)
• 인증심사 경력 5년 이상
■ 인증표시 항목 간소화
• 인증사업자 성명 또는 업체명
• 전화번호 및 주소


인증기관명:
인증번호:</td><td>■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개선
• 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기사, 산업기사)
• 수의사 자격(추가)
■ 인증표시 항목 간소화
• 인증사업자 성명 또는 업체명
• 전화번호 및 주소


인증번호:
*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표시는 '21.12.31.까지 사용가능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td><td>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6~7)</td></tr>
</table>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도매시장 경매사 의무 교육제도 도입	■ 근거규정 없음	■ 〈신설〉 의무교육제도 도입 • 도매시장 법인 또는 공판장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의 의무교육제도 도입 • 의무교육은 2년마다 이수 ■ 〈신설〉 의무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 의무교육 미이수한 경매사 과태료* 부과 * (1회 미이수시) 25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 ☞ (참고)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19.7.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044-201-2221)
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 독성이 높은 농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 독성이 높은 농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 용기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인 소포장 농약을 제외한 모든 농약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보도자료〉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보도자료(6.24주간 배포 예정)	**농약관리법** ('19.7.1.)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044-201-1895)
곤충 업 신고 제도 합리화	■ 곤충 업(생산업, 가공업, 유통업) 신고자는 시·군에 신고하여야 함 • 시군에서 접수후 수리기간(5일) 경과시 규정없음	■ 곤충 업 신고시 5일 이내에 수리 여부 및 처리기간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 • 통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처리일이 끝난 날 다음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	**곤충산업육성법** ('19. 7. 1)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72)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해수욕장 입수 제한 완화 및 시설사업 시행 자격 확대	• 폐장기간 입수 금지 • 공공기관과 공기업만 시설사업 시행 가능	• 폐장기간 입수 허용 • 민간사업자, 인근 마을공동체로 시행자격 확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7.1)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044-200-5253)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새 이름, '해양보호생물'	• 보호대상해양생물	• 해양보호생물	**해양생태계법** ('19. 7월)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044-200-5315)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확대	•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 중 50만 ㎥ 이상 골재채취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전체, 시·도 조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7.1)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044-200-5315)

산림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자격요건 완화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자격요건 • 자본금(1천만원 이상 등)	■ 자격요건 완화 • 자본금 자격요건 삭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7.16.)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042-481-1839)
방제계획서·완료서 작성자 완화 및 검인 제도 폐지	■ 방제계획서·완료서 작성주체 • 산림기술사, 엔지니어링사업자, 산림조합중앙회 ■ 생산확인 방법 • 검인찍기 또는 생산확인표 발급	■ 소나무류 50본 미만이거나 산지전용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방제계획서·완료서의 작성주체 완화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 생산확인 방법 일원화 • 생산확인표 발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19.7.16.)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042-481-4076)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	-	■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 모니터링 대상 – 면적이 660㎡초과 하는 산림복원지 • 모니터링 기간 – 사업 종료 후 10년 이상 ◦ 1단계 : 종료 1년, 2년차 ◦ 2단계 : 종료 5년, 10년차 • 실행주체 –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7.9.) **산림청 백두대간보전팀** (042-481-8813)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정수기 관리 기준 강화	■ 정수기를 "유입수 내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규정하여 관리	■ 정수기 부가 결합장치(얼음제조장치 등)도 함께 관리 ■ 정수기 심의절차 강화 ■ 정수기 품질검사 항목에 '위생·청결 매뉴얼 적합성 심사' 추가 ☞ (참고) 환경부홈페이지〉 법령/정책〉환경정책〉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19.6월)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044-201-7113)
먹는샘물 주표시면에 품목명(먹는샘물) 표시	• 먹는샘물 품목명을 라벨 주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음(권장)	■ 먹는샘물 품목명을 라벨 주표시면에 표시(의무) ☞ (참고) 환경부홈페이지〉 법령/정책〉환경정책〉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19. 10월)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044-201-7118)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 경유철도차량이 준수해야 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없음	• '19년 하반기부터 국내 신규 도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신설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9.하반기)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6)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관리대상 확대	•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 민간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관광지 및 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 민간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등에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추가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19. 10월)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044-201-7004)
위·수탁 폐수의 전자인계·인수 관리	• 폐수 위·수탁확인서(종이) 작성·관리	• 폐수 전자인계·인수시스템 구축·운영 • 폐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인계·인수시스템에 입력·관리 • 시스템 미입력, 거짓입력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19. 10월) **환경부** **수질관리과** (044-201-7061)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본격운영	■ 조성공사 진행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본격 운영('19. 7월~) - 실증화시설(정수, 하수, 폐수, 재이용, 관망) 운영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운영 (국내외 사업화지원) - 물융합연구센터 운영(실험분석실 운영 및 R&D 지원) - 워터캠퍼스 운영(혁신인재육성)	**물산업진흥법** '18.12.13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 추진기획단** (044-201-7644)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민원 발생 공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에 포함	• 대수선공사,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공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에서 누락	• 연면적 1,000㎡ 이상인 대수선공사, 공사면적 1,000㎡ 이상이면서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는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에 포함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공포일)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04)
외래종 안전관리 강화 (유입주의 생물 지정제도)	• 생태계교란생물, 위해우려종으로 관리 • 위해우려종 수입시 마다 위해성 심사 • 위해우려종 생태계유출 등에 따른 제재 부재	• 유입주의 생물 지정·고시 •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시 위해성평가 의무화(최초 수입시 1회) • 외래생물의 생태계 유출관리 강화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10월 시행)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47)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시행	〈신설〉	• 기업은 고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배출저감 계획을 수립·제출 ※ 대상 물질은 순차적으로 확대 추진 • 배출저감계획은 환경부 검토 후,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대국민 공개 •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배출저감 이행 현황을 점검	**화학물질관리법** ('19.11.29.)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47)

기상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민 체감형 태풍 정보 제공	■ 태풍 • 태풍진로예보: 24시간 간격 • 실제 강풍영역 미제공 • 태풍 위험영역 미제공 • 지역별 태풍 최근접 정보 미제공	■ 태풍 • 태풍진로예보: 일부구간(48시간 내 구간) 12시간 간격 • 실제 강풍영역 신규제공 • 태풍 위험영역 신규제공 • 지역별 태풍 최근접 정보 신규 제공	**기상법** ('19.5.31.) **기상청** **국가태풍센터** (070-7850-6355)
천리안위성 2A호 정규서비스 실시	■ 천리안위성 1호 기상센서 • 해상도: 가시(1㎞)/적외(4㎞) • 관측주기: 한반도 15분 • 서비스영상: 16종 산출물 흑백 영상	■ 천리안위성 2A호 기상센서 • 해상도: 가시(0.5, 1㎞)/적외(2㎞) • 관측주기: 한반도 2분 • 서비스영상: 52종 산출물 컬러영상 ■ 우주기상센서 탑재(신규) • 흑점폭발, 지자기폭풍 등 우주기상 실시간 감시 가능 ☞ (참고) 국가기상위성센터 홈페이지〉천리안위성 2A호 소개 배너	-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043-717-0209)
사용자 위치기반 위험기상 사전알림 서비스	■ "우리동네 레이더 날씨 알리미" 앱을 통해 현재 기상정보 제공 • 사용자가 호우, 눈, 낙뢰에 대한 위험기상 실황정보를 직접 검색	■ 사전알림 제공 내용 • 위험기상 실황 정보 → 실황 정보 + 예측 정보(최대 2시간 이내) • 사전알림 서비스 없음 → 위치기반 사전알림 서비스 제공 ■ 사용자 편의성 개선 • 사용자 직접 검색 → 사용자 위치 자동검색 및 위험기상 사전 알림 서비스	- **기상청** **레이더분석과** (02-2181-0863)

기상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기상청 날씨 홈페이지 통합 개선	• Opc용, 모바일용 날씨 홈페이지 별도 운영	• 날씨누리와 모바일웹 통합 • 사용자 중심의 날씨 콘텐츠 정비 및 기능 개선 ☞ (참고) 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 및 모바일웹	- **기상청** **정보통신기술과** (02-2181-0410)
해양기상 맞춤형 정보 모바일 웹 서비스 실시	■ 해양기상정보포털 모바일 웹 서비스 실시 ■ 해양기상정보포털 개선	■ 해양기상 맞춤형 정보 모바일 웹 서비스 실시 • 항로, 항만, 해난, 레저, 어업, 안보 주요 6대 분야별 상세정보 서비스 • 현재 위치 및 자주 찾는 지점 정보 우선 표출 ■ 서비스 지점 및 콘텐츠 추가 • 지점추가: 항만, 항로, 레저 • 콘텐츠 추가 - 초단기예보(항만, 레저) - 해상예보 시계열 정보	- **기상청** **해양기상과** (02-2181-0743)
'기상자료개방포털' 사용자 중심 서비스로 전환	■ 기상기후자료 개방 확대 주력 • 개방데이터 종류의 급속한 확장 • 텍스트, 표 위주의 1차원 자료 제공 • csv, pdf, 이미지 파일 형식으로 제공	■ 기상자료개방포털 사용자 편의성 향상 • 개방데이터의 경량화 및 활용성 개선 • 통계분석자료의 그래픽화를 통한 정보의 직관적 이해 제고 • 데이터 제공 포맷 확대(엑셀파일 추가)	-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02-2181-088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규제 개선	■ 적합인증 대상기자재(164종) ■ 그간 완제품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음 • '전동모터를 사용한 완구', '유선팩스 모듈을 사용한 사무기기' ■ 수입제품은 세관 통관 전 제품표면에 적합성평가 표시(KC)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부착 ■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유형별 분류에서 • 적합인증(별표1),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별표2), 자기시험 적합등록(별표3)	■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규제 완화 • 적합인증 164종 중 → 적합등록으로 41종을 하향 조정 * 처리기간 (5일 → 1일) * 수수료(기기당 110천원 절감) ■ 완구, 유선팩스는 상품의 특성상 구성품에 대해 적합성평가 받는 것을 허용하고 이를 사용한 완제품은 시험 생략 등 절차를 간소화 • 대상구성품은 '완구용 모터', '유선팩스 모듈' ■ 세관 통관시 제품표면에 부착할 적합성평가 표시 스티커를 제공할 경우, 통관이 가능하도록 선 통관 후 부착으로 개선 ■ 기술기준별로 통합 재분류 • 별표1,2,3, → 별표1로 체계적 재분류 ☞ (참고) 국립전파연구원홈페이지〉전자공청회〉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19.8.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061-338-4710)

산업통상자원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제단위계(SI) 기본단위가 완전체로 재탄생	• 별표 1. 기본단위의 정의	■ 별표 1. 기본단위의 정의	국가표준 기본법 시행령 ('19.5.20) 산업통상자원부 표준정책과 (043-870-5347)
	■ "킬로그램(kg)"은 질량의 단위로서 국제킬로그램 원기의 질량과 같다.	■ "킬로그램(kg)"은 질량의 단위로서, 플랑크 상수 h를 J s 단위로 나타낼 때 6.62607015 × 10−34이 된다. 여기서 J s는 kg m2 s−1과 같은 단위이다.	
	■ "암페어(A)"는 무한히 길고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원형 단면적을 가진 두 개의 평행한 직선 도체가 진공 중에서 1 미터의 간격으로 유지될 때, 두 도체 사이에 미터당 2 × 10−7 뉴턴의 힘을 생기게 하는 일정한 전류이다.	■ "암페어(A)"는 전류의 단위로서, 기본 전하 e를 C 단위로 나타낼 때 1.602176634 × 10−19이 된다. 여기서 C는 A s와 같은 단위이다.	
	■ "켈빈(K)"은 물의 삼중점(三重點)에 해당하는 열역학적 온도의 1/273.16이다. 다만, 온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섭씨온도로 표시할 수 있다. 가. 섭씨온도의 기호는 "t"로 표시하고, t=T−T0식으로 정의된다. 나. 섭씨온도 "t"는 기호 "T"로 표시하는 열역학적 온도와 물의 어는 점인 기준온도 T0=273.15 K와의 차이를 나타낸다. 다. 온도차이 또는 온도간격은 켈빈이나 섭씨도로 표현할 수 있으며, t/℃=T/K−273.15식으로 정의된다. 라. 섭씨온도의 단위는 섭씨도(기호 ℃)이며, 그 크기는 켈빈과 같다.	■ "켈빈(K)"은 온도의 단위로서, 볼츠만 상수 k를 J K−1 단위로 나타낼 때 1.380649 × 10−23이 된다. 여기서 J K−1은 kg m2 s−2 K−1과 같은 단위이다.	
	■ "몰(mol)"은 탄소 12의 0.012 킬로그램에 있는 원자의 개수와 같은 수의 구성요소를 포함한 어떤 계(系)의 물질량이다.	■ "몰(mol)"은 물질량의 단위로서, 6.02214076 × 1023개의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이 숫자는 아보가드로 상수 NA를 mol−1 단위로 나타낼 때 정해지는 수치로서 아보가드로 수라고 부른다. 어떤 계의 물질량(기호: n)은 명시된 특정 구성요소들의 수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특정 구성요소들이란 원자, 분자, 이온, 전자, 그 외의 입자 또는 그런 입자들의 특정한 집합체가 될 수 있다.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보도자료〉2019년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가·자자체 등이 발주한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기업 참여 제한	〈신설〉	■ 대기업 공사업자의 기준 신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 ■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액 및 대상공사 신설 • 10억원(공사예정금액 기준) • 국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공사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예산·법령〉입법예고〉전기공사업법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제 2019-305)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2019.7.9.(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044-203-5156)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상권영향평가 내실화	■ 평가범위 • 1개 업종(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 평가방법 • 주변 상권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작성	■ 평가범위 확대 • 대규모점포내 입점 예정인 주요 업종 (전문소매업(가전·도서·의류 등), 외식업, 기타 서비스업 등 포함) ■ 평가방법 세분화 • 정성적(설문조사·전문가 의견수렴 등)·정량적(카드데이터 조사·유사상권 사례분석 등) 평가방법 병행 • 점포수·매출액·고용 등에 대한 영향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분석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보도자료〉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보도자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2019.9.30.(잠정))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044-203-4381)

산업통상자원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관련 자료공유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내역 공유 • 관계부처는 산업부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내역을 제출해야 함 • 산업부는 필요시 제출받은 내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관할 지자체에 제공 가능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국고보조율 인상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9.7.9.)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044-203-4422)
엔지니어링기술의 분류체계 유연화	■ 15개 기술부문 48개 전문분야로 한정	■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새로 개발된 기술 등을 추가 - 현행 법령상의 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부문 또는 전문분야를 추가하여 고시할 수 있음. - 해당 고시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기술의 내용과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시행령 개정여부 결정.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시행령** ('19.10.1.)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044-203-4381)

국토교통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드론실증도시 기반 드론 활용 일상화 구현	■ 도심 외곽지역에서 드론 활용기술 실증	■ '드론 실증도시(Drone Air City, 2개)'를 선정하여 도심지역에서 드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 불법주정차 차량계도, 야간순찰, 대기실·해양 등 환경 모니터링 등 ☞ (참고) 국토교통부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경기 화성·제주, 드론 실증도시로…7월부터 본격 운용시작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19.上)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044-201-4315)
드론 분류체계 개선 및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	■ 드론 기체의 무게 기준으로 안전관리	■ 드론의 최대이륙중량, 속도, 장착 장비 등에 따라 드론 분류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하여 안전관리 제도* 적용 * 기체신고·비행승인·안전성 인증·조종자격 ☞ (참고) 국토교통부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저위험 드론 보다 쉽게, 고위험 드론 보다 안전하게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19.上)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044-201-4315)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보은, 고성, 영월) 시범운영 개시	■ 드론 비행시험 인프라 부재	■ 주요 지역별 상업용 드론의 기술개발·안전 검증을 위한 시험비행과 테스트가 가능	**항공사업법 제69조의2** ('19.하)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044-201-4226)

중소벤처기업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사무권한 확대	■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권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요청권자, 단지조성사업을 위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권자 • 시·도지사	■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권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요청권자, 단지조성사업을 위한 협동화실천계획 승인권자 • 시도지사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19.7.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9)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기반과** (042-481-1651)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신설〉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신청 가능 ■ 보복행위에 대한 벌점 부과 및 징벌적 손해보상제도(3배 이내) 도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9.7.16.)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042-481-3966)

조달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혁신조달플랫폼 구축	■ 기존 종합쇼핑몰은 상용품·규격화된 제품위주로 거래되어 혁신조달업체의 진입장벽이 높고 혁신제품의 등록·거래에 어려움 존재 ■ 정부기관이 필요로하는 혁신수요와 업체가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 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창구부재 → 정부기관과 업체 모두 수요탐색, 제품탐색에 상당한 기간 소요 ■ 종합쇼핑몰, 벤처나라, 나라장터 등 개별적인 시스템을 각각 검색하여 정보획득	■ 조달청이 단가계약하는 기존 쇼핑몰형태가 아닌 열린장터(Open Market)형태의 혁신제품전용몰을 구축 • 혁신조달업체는 개발한 제품을 자유롭게 등록·판매할 수 있어 판로개척에 큰 도움 • 정부기관은 문제해결에 필요한 향상된 제품·솔루션을 쉽게 비교검색하여 구매가능 ■ 혁신조달플랫폼을 통해 정부부처의 한 단계 높은 수요제시 → 제시된 수요를 기반으로 기업은 제품·솔루션을 개발 → 특허거래전문가 등 전문가pool을 통한 수요공급 매칭으로 정보비대칭 해소하여 수요와 공급간 신속한 매칭 지원 ■ 인공지능(AI) 기반의 통합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종합쇼핑몰, 벤처나라, 나라장터에 존재하는 제품정보, 업체정보, 입찰공고 내용 등을 통합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구매편의를 크게 제고	– **조달청** **혁신조달과** (042-724-7347)

특허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특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우선심사 대상 변경	■ 개정전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우선심사 대상	■ 우선심사 대상인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야를 7개 분야에서 16개 분야로 확대 * 4차 산업혁명 16대 기술 분야: 기존 (① 인공지능, ②사물인터넷, ③삼차원 프린팅, ④자율주행차, ⑤빅데이터, ⑥ 클라우드컴퓨팅, ⑦지능형로봇) + 추가 (⑧스마트시티, ⑨가상·증강현실, ⑩ 혁신신약, ⑪신재생에너지, ⑫맞춤형 헬스케어, ⑬드론, ⑭차세대 통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 특허청에서 PCT 국제조사가 수행되고 국내단계에 진입한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신설 ☞ (참고) 특허청 홈페이지〉주요제도〉특허/실용신안제도〉우선심사제도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령** ('19.6.0.)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042-481-8243)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임금 등을 체불하는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 직불 제한	■ 하도급 업체가 임금 등 지급을 지체할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	■ 하도급 업체가 임금 등 지급을 지체할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중지하여야 함 ☞ (참고) 공정위 홈페이지〉공정위뉴스〉공정위소식〉보도〉하도급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9. 11월)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92)

금융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마포 청년혁신타운부분개소	〈신설〉	• '19년말 국내 최대규모 청년 창업기업 보육공간인 마포 청년혁신타운 부분개소 ☞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 관계기관 합동,「마포 청년혁신타운」 세부 조성계획 마련	– ('19년 4분기)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2)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지원	〈신설〉	■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지원 • 농식품계열 대학에 3학년 이상 재학생(전문대는 1학년 2학기) 500명을 선발하여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	('19학년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044-201-1578)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 가능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을 귀농어정책 대상으로 한정	■ 수혜대상 확대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어업인도 귀농어업인에 준하여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9.7.1.)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044-201-1540)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 비급여 (기본입원료만 지원)	■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	**요양급여 세부사항 고시 등** ('19년 7월)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044-202-2667)
전립선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는 필수 급여, 그 외는 비급여	■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해당 질환자 및 의심자등까지 건강 보험 적용	**요양급여 세부사항 고시 등** ('19년 9월)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044-202-2667)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는 필수 급여, 그 외는 비급여	■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해당 질환자 및 의심자까지 건강 보험 적용	**요양급여 세부사항 고시 등** ('19년 10월)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044-202-2667)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는 필수 급여, 그 외는 비급여	■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해당 질환자 및 의심자등까지 건강 보험 적용	**요양급여 세부사항 고시 등** ('19년 12월)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044-202-2667)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 적용 연령 •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 (종별구분없이 본인부담 30%) ■ 적용 횟수 • 신선배아(체외수정) 4회 • 동결배아(체외수정) 3회 • 인공수정 3회 ■ 공난포 채취시 본인부담 • 본인부담률 80%	■ 적용 연령 •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 (종별구분없이 본인부담 30%) • 여성 연령 만45세 이상 (본인부담률 50%) ■ 적용 횟수 확대 • 신선배아(체외수정) 7회 • 동결배아(체외수정) 5회 • 인공수정 5회 ※ 단, 확대되는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 2회는 본인부담률 50% ■ 공난포 채취시 본인부담 인하 • 본인부담률 30% ※ 단, 만45세 이상, 추가횟수 적용시 본인부담률 50% ☞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 보도자료〉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19.7.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3)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추진	■ 장애인 등록 시 1~6등급 구분 ■ 장애등급에 따른 복지서비스 지원	■ 장애인 등록을 '중증' 및 '경증'으로 단순화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꼭 필요한 장애인 지원 * ('19)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20) 이동분야, ('22) 소득·고용분야	**장애인 복지법** ('19.7.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288,3289)
장애인 등록제 개편에 따른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대상 확대	■ 장애인보장구 • (대상) 지체·뇌병변 1,2급 • (변경전 기준) – (욕창예방매트리스)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 (이동식전동리프트) MBI 점수 중 의자/침대 이동 항목의 점수가 0점일 것	■ 장애인보장구 • (대상)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 • (추가기준) – (욕창예방매트리스) MBI 점수 53점 이하 또는 두 다리에 대한 맨손근력검사 0~2등급 – (이동식전동리프트) MBI 점수 32점 이하 또는 두 다리에 대한 맨손근력검사 0~1등급(MBI 중 의자/침대 이동항목 점수 3점이하)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19.7.1) **보험급여과** (044-202-2731)
	■ 산소치료 • (대상 및 기준) 호흡기장애 3급의 경우 90일동안 내과적 치료 및 별도검사(동맥혈가스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 기준 적합여부 확인	■ 산소치료 • (대상 및 기준) 심한 호흡기 장애인의 경우 별도검사(동맥혈가스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 기준 적합여부 확인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에 따른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19.7.1) **보험급여과** (044-202-2731)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긴급구조기관의 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협조 의무 부과	■ 자살위험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 의사 또는 계획을 표현하거나, 자살위해물건 구매 또는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긴급히 구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긴급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근거 부족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요청에 따를 의무 부재	■ 긴급구조기관이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할 근거 마련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협조 의무 신설 •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이 자살위험자 중 긴급구조 대상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료제공요청을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협조할 의무 부과 • 보유한 정보에 한해 제공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한 규정 ■ 정보제공 요청 거부 시 처벌규정 신설 • 1년 이항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에 대한 제공이므로, 오·남용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 • 다른 방법으로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만 제공 요청 •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주체에 통보할 의무 부과 • 해당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보도자료〉자살유발정보, 온라인에서 사라진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19. 7. 16.)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044-202-3881)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아동수당 지급	■ 만 6세미만 모든 아동	■ 만 7세미만 모든 아동	**아동수당법 제4조(아동수당지급 대상 및 지급액)** ('19.9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828)
임신부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 임신부 추가 ☞ (참고) 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 보도자료〉 예방접종!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 보도자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10.22.)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6819)
현행 5대 국가암검진에 폐암검진 추가	■ 암검진사업 대상 암의 종류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검진주기 및 연령기준 • 신설	■ 암검진사업 대상 암의 종류 • 폐암 추가 ■ 검진주기 및 연령기준 • 2년 /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 보도자료〉 폐암검진 도입을 위해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	**암관리법 시행령** ('19.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13)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 확대	• 대상 : 임신 및 출산(유산포함) 확인이 된 건강보험가입자 * 자궁내 임신낭이 관찰된 경우	• 대상 : 임신 및 출산(유산포함) 확인이 된 건강보험가입자 * 자궁내 임신낭이 관찰된 경우 및 자궁외 임신이 확인된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19. 7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 2731)
몰래카메라 설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 몰래카메라 설치업소 행정처분 기준 • 숙박업소 2차위반시 : 영업장 폐쇄 • 이·미용업소 3차위반시 : 영업장 폐쇄 • 세탁업소 4차위반시 : 영업장 폐쇄	**공중위생관리법** ('19.6.12.)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044-202-2881)
목욕장의 수질기준 강화 신설	〈신설〉	■ 욕조수 관리에 관한 사항 게시 ■ 저수조 청소 ■ 욕조수를 순환·여과시키는 경우 - 소독기를 여과기 직전에 설치 - 유리잔류염소농도 유지 - 온도, 유리잔류염소농도 측정 - 매년 레지오넬라균 검사 ☞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 보도자료〉 목욕탕·찜질방 레지오넬라 안심! 보도자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19.7.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044-202-2881~4)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 금지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선언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 구축·운영 의무 부과	■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 금지 ■ 유통 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 신설 • 2년 이항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기관과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 구성하여 자살유발정보의 차단을 위해 협력 ☞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 보도자료〉 자살유발정보, 온라인에서 사라진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19. 7. 16.)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044-202-3882)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도입	-	■ 만12세에서 17세의 재학 중 발달장애 청소년 4,000명에 대해 월 44시간의 방과후 돌봄 바우처 제공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 개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11.20.)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52)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 LH전세임대, 자립지원시설 등 주거지원 실시 • 이자, 월세 부담 • 주거 위주의 단편적 지원	■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지원(보증금, 월세 무료, 관리비만 부담) ■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 구비 ■ 사례관리사를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 (참고)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 주요사업〉 자립지원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19.6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46)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성인 예방접종력 관리 강화를 위한 군의료정보시스템 연계	■ 시스템 미연계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과 군의료정보 시스템 연계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19. 10. 24.)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6839)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	■ 67개국 지정	■ 66개국으로 변경* ☞(참고) 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해외질병)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검역법** ('10. 12월)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043-719-9207)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주 책무 강화 등 사후관리 강화	■ 1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조정 불가피성 간편 서식 제출 ■ 지원 보수수준의 120% 초과 시 지원금 환수 ■ 퇴사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소급지원 허용	■ 10인 미만 사업장도 다른 사업장과 동일한 입증자료 제출 및 3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조정 시 지원 중단(사업주 고용유지 의무 강화) ■ 지원 보수수준의 110% 초과 시 지원금 환수(소득기준 사후검증 강화) ■ 퇴사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소급지원 중단 ☞(참고)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ei.go.kr))소통마당)알려드립니다 ('19.6.12. 게시)	**일자리안정자금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 ('19.7월, 단 신청당시 퇴사자 소급지원 중단은 8.1.자 시행)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추진단** (044-202-7786)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시	〈신설〉	■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의 개념 및 금지 조항 신설(제76조의2) •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규정(제76조의3)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제93조)하도록 하는 한편, 발생사실에 대한 신고·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 시 형사처벌(제109조제1항)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자료실)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19.2.21. 및 5.14. 게시)	**근로기준법** ('19.7.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조항 신설	〈신설〉	■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 구직자 본인의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채용절차법 일부개정안 보도자료('19.3.2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9.7.17.)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36)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확대	■ (지원기간) 500인 초과 노선버스 업종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 기존 재직자의 임금 감소액 보전지원금 지원기간 1년	■ (지원기간) 500인 초과 노선버스업종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 기존재직자의 임금감소액 보전지원금 지원기간 2년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배너광고) 클릭 ☞ (문의)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고용노동부 고시** ('19.7.1.)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044-202-721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업일과 관계없이 가입 가능	■ 개업 후 5년 이내 가입 가능	■ 개업일과 관계없이 가입가능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고〉고용산재보험 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19.7.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6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신설	〈신설〉	■ '19.7.1.부터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중증장애인 기준이 달라짐 *(복지법)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단순화(장고법) 현행 중증장애 기준 유지 ■ 장고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확인을 위해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신설) • 발급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참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팝업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1항 *관련 고시 제정 중** ('19.7.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2, 7489)

고용노동부

<table>
<tr><th>구 분</th><th>종 전</th><th>달라지는 내용</th><th>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th></tr>
<tr><td rowspan="2">장애인 취업지원
원스톱(One-Stop)
전달체계 구축</td><td rowspan="2">〈신설〉</td><td rowspan="2">■ 부처(기관) 간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적시에 필요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요자 중심 서비스” 실현
•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 및 장애학생 대상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확대

<table><tr><th>지금까지</th><th>앞으로</th></tr><tr><td>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직접 접점을 형성해야 공단 취업지원 서비스 수혜 가능</td><td>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직접 접점이 없더라도 공단 취업지원 서비스 수혜 가능</td></tr></table>
☞ (참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팝업존</td><td>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9.7.1.)</td></tr>
<tr><td>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3)</td></tr>
<tr><td rowspan="2">일정소득 이하 대규모
기업 노동자 훈련비
지원</td><td rowspan="2">■ 45세 이상 대규모 기업 노동자</td><td rowspan="2">■ 일정소득 이하(월 250만원 미만) 대규모 기업 노동자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td><td>고용보험법 시행령
(‘19.7.1.)</td></tr>
<tr><td>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44-202-7309)</td></tr>
</table>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근로기준법 상 부속 기숙사 설치·운영 기준 강화	• 남성과 여성이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 남성과 여성이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19.7.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4)
	•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등을 피할 것	• 기숙사의 설치는 소음 또는 진동이 심한 장소,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등 주거의 안정을 침해하는 장소를 피할 것	
	• 취업시간을 달리하는 2개조 이상의 근로자들은 같은 침실에 거주하게 하지 않을 것	• 취업시간을 달리하는 2개 조 이상의 근로자들은 같은 침실에 거주하게 하지 않을 것	
	• 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1실의 거주인원은 15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침실 하나의 거주인원은 15명 이하로 할 것	
	〈신설〉	• 화장실과 세면 및 목욕시설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을 것	
	〈신설〉	•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신설〉	• 적절한 냉·난방 설비 또는 기구를 갖출 것	
	〈신설〉	• 「소방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안전 조치를 위한 설비 또는 장치를 갖출 것	
	〈신설〉	•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침실(침구) 및 기숙사 내 시설·물건 등에 대하여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신설〉	• 사용자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 각 방, 목욕시설 및 화장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공지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소액체당금 상한액	■ 체불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소액 체당금 상한액 400만 원	■ 총 상한액을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급여 등」을 구분하여 상한액을 각각 700만 원으로 설정 (단위: 만원) 항 목 / 상한액 임금(휴업수당) / 700 퇴직급여등 / 700 * 총 상한액은 1,000만원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령〉체당금 상한액 고시(예정)	**체당금 상한액 고시** ('19.7.1.)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

국가보훈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강원 제대군인지원센터 개소	■ 전국 7개 광역권(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경기북부, 경기남부)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 강원 제대군인지원센터 추가 개소로 전국 8개 광역권(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강원, 경기북부, 경기남부)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 (044-202-5738)

식품의약품안전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제도	■ 국내 미허가 또는 대체제가 없는 의료기기를 사용이 필요한 개별 환자 등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자가사용용 의료기기'로 수입 (수입주체→ 개인)	■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수입절차 간소화 제도와 병행하여 인체에 삽입하는 등 의료인의 시술이 필요한 희소·긴급 도입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국가 주도로 신속 공급할 수 있는 제도 시행 (수입주체→ 국가)	**의료기기법 제15조의 2** ('19.6.1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043-719-3755)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 국가공인시험 실시	■ 민간자격으로 시행	■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시행 • 민간등록자격 → 국가공인민간자격 ■ 응시자격 확대 • 정보원이 인정하는 교육과정 수료자 → 정보원이 인정하는 교육과정 수료자 이외에도 요건 충족시 응시 가능 ■ 지방응시 가능 • 서울 → 서울, 대전, 대구 ☞ (참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 2019년 의료기기 RA 전문가 2급 국가공인 자격시험 시행공고	**자격기본법** ('19.11.16)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과** (043-719- 3757)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자격검정TF팀** (02-860- 4361)

국토교통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확대 개편	■ (이용대상자) 1·2급 장애인 ■ (법정운행대수)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 (이용대상자) 중증장애인 ⇒ 이용자 15만명 증가 ■ (법정운행대수)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 ⇒ 특별교통수단 1,400대 증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19.7월)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70)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확대 시행	■ 시범사업 지역 내(세종, 울산, 전주) 한정 ■ 선불교통카드만 사용 가능, 광역환승 불가	■ 전국 11개 주요 도시에서 시범사업추진 ■ 후불교통카드 도입, 전국 호환 등 편의성 개선 ■ 광역버스 이용 시 교통비 절감 효과 상향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30%+α로 할인되는 광역알뜰교통카드, 5.10일 공개 시연	관련법규없음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요금과** (044-201-5082)
제주·김해·청주공항 시설개선 등 이용편의 향상	■ (제주공항) 여객터미널 수용능력 : 2,589만명/년 ■ (청주공항) 여객터미널 수용능력 : 189만명/년주차면수 : 4,138면 ■ (김해공항) 주차면수 :5,450면	■ 여객터미널 수용능력 : 3,175만명/년(전년대비 586만명↑) ■ 여객터미널 수용능력 : 289만/년(전년대비 100만명↑) ■ 주차면수 : 4,872면(전년대비 734면↑) ■ 주차면수 : 6,650면(전년대비 1,200면↑)	**공항시설법** (~'19.12월)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044-215-4335)

국토교통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중국 항공노선 확대로 항공교통이용자 편의 개선	■ 기존 14개노선 독점운항으로 항공교통이용자의 선택의 폭 제한	■ LCC를 중심으로 신규취항이 늘어나 항공교통이용자의 편익과 선택의 폭 확대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중국 가는 하늘 길, 더욱 편리하고 다양해진다	**국제항공운수권 배분규칙** ('19.8.)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044-201-4211)
경부선 급행전철 확대	■ 운행횟수 : 34회 ■ 운행간격 : 일평균 50분 ■ 금정역 : 정차 불가 ■ 운행구간 : 용산(서울)~천안	■ 운행횟수 : 54회(20회 ↑) ■ 운행간격 : 일평균 30분(20분 ↓) ■ 금정역 : 정차 가능 ■ 운행구간 : 청량리~천안 * 열차 운행 세부계획은 공사 완료 후 추후 확정	**관련법규 없음** ('19.11월말)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철도운영과** (044-201-3966, 4631)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 절차 의무화	■ 설계 전 건축기획 절차 부재	■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 절차 의무화 ■ 건축기획에 대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검토 신설 ■ 지자체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 (참고) 국토교통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19.12.19.)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국토교통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주택도시기금대출 절차 간 간소화 및 자산심사 기준 도입	■ 대출신청자가 심사서류를 은행에 직접 제출 ■ 자산심사기준 없음	■ 정부시스템을 통해 해당기관과 연계 – 심사서류를 신청자가 직접 제출하는 대신 전산정보로 대체하여 심사 ■ 부부합산 보유자산(순자산)(부동산, 일반, 자동차, 예·적금, 부채 등)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주택도시기금법 및 시행령** ('19. 12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1)
숫자 추가 및 디자인 적용된 신규 자동차 번호판 시행	–	■ 승용차 번호체계 개편 • 12가1234 → 123가1234 ■ 디자인이 적용된 필름부착식 번호판 추가 도입 ☞ (참고) 국토교통부홈페이지〉 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차세대 전자여권과 승용차 번호판 디자인 등 확정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19.9.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36)
모바일 앱으로 공항주차장 간편결제 서비스 시행	■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공항주차장 간편결제 서비스를 김포공항에서만 이용 가능	■ 김해·제주·대구 등 주요 지방공항으로 해당 서비스 확대	– ('19.7~)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044-201-4190)

국토교통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립항공박물관 건립	■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 항공역사와 산업 발전현황을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박물관 없음	■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 항공역사와 산업 발전현황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체험과 교육·문화시설이 함께하는 국립항공박물관 건립(* 정식개장: 2020년)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자본금 요건 완화를 위한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국립항공박물관법 (제정안, 국회 심의중)** ('19.12)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02-2064-8215)
새마을·무궁화 등 일반열차 지연배상금 지급 확대	■ 일반열차 지연배상금지급 기준 • 지연 40분 이상	■ 일반열차 지연배상금지급 기준 강화 • (종전) 지연 40분 이상,(변경) 지연 20분 이상 ☞ (참고)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 여객운송약관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19. 6월말)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044-201-3973)